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1815-01

ISBN: 979-11-91116-81-6 13500



주요국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모음집

2021. 11.



특허청

목 차

1.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1
2. 미국 연방 경제스파이 처벌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31
3.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71
4.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147
5. EU 영업비밀보호법 167

독 일

원 본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본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

Kapitel 1

Allgemeine Bestimmungen

§ 1 Zweck des Gesetzes

Dieses Gesetz dient dem Schutz der Mitbewerber, der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 sowie der sonstigen Marktteilnehmer vor unlauteren geschäftlichen Handlungen. Es schützt zugleich das Interesse der Allgemeinheit an einem unverfälschten Wettbewerb.

§ 2 Definitionen

- (1) Im Sinne dieses Gesetzes bedeutet
1. „geschäftliche Handlung“ jedes Verhalten einer Person zugunsten des eigenen oder eines fremden Unternehmens vor, bei oder nach einem Geschäftsabschluss, das mit der Förderung des Absatzes oder des Bezugs vo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oder mit dem Abschluss oder der Durchführung eines Vertragsüber Waren oder Dienstleistungen objektiv zusammenhängt; als Waren gelten auch Grundstücke, als Dienstleistungen auch Rechte und Verpflichtungen;
 2. „Marktteilnehmer“ neben Mitbewerbern und Verbrauchern alle Personen, die als Anbieter oder Nachfrager vo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tätig sind;
 3. „Mitbewerber“ jeder Unternehmer, der mit einem oder mehreren Unternehmern als Anbieter oder Nachfrager vo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in einem konkreten Wettbewerbsverhältnis steht;
 4. „Nachricht“ jede Information, die zwischen einer endlichen Zahl von Beteiligten über einen öffentlich zugänglichen elektronischen Kommunikationsdienst ausgetauscht oder weitergeleitet wird; dies schließt nicht Informationen ein, die als Teil eines Rundfunkdienstes über ein elektronisches Kommunikationsnetz an die Öffentlichkeit weitergeleitet werden, soweit die Informationen nicht mit dem identifizierbaren Teilnehmer oder Nutzer, der sie erhält, in Verbindung gebracht werden können;
 5. „Verhaltenskodex“ Vereinbarungen oder Vorschriften über das Verhalten von

독일부정경쟁방지법(UWG)

2020년 11월 26일 개정

제1장 일반 규칙

제1조 (법률의 목적)

동법은 경쟁자, 소비자 및 기타 시장참여자를 부정한 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동시에 동법은 공정한 경쟁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정의)

- (1) 동법에서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거래행위”란 자연인이 자신 또는 타인의 영업을 위하여, 거래완료 전과 후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계약 체결이나 이행, 판매 촉진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상품은 부동산, 서비스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
 2. “시장참여자”란 경쟁자와 소비자를 포함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자 또는 공급자로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3. “경쟁자”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로서 구체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모든 영업을 의미한다.
 4. “통지”란 공중이 접근 가능한 전자적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참여자들 사이에서 교환 또는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다만, 정보가 참여자 또는 이용자(수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전자적 통신서비스를 통해 공개, 전달되는 방송서비스의 일부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5. “행동규범”이란 법률적 또는 행정적 의무와 관

<p>Unternehmern, zu welchem diese sich in Bezug auf Wirtschaftszweige oder einzelne geschäftliche Handlungen verpflichtet haben, ohne dass sich solche Verpflichtungen aus Gesetzes- oder Verwaltungsvorschriften ergeben;</p> <p>6. „Unternehmer“ jede natürliche oder juristische Person, die geschäftliche Handlungen im Rahmen ihrer gewerblichen, handwerklichen oder beruflichen Tätigkeit vornimmt, und jede Person, die im Namen oder Auftrag einer solchen Person handelt;</p> <p>7. „unternehmerische Sorgfalt“ der Standard an Fachkenntnissen und Sorgfalt, von dem billigerweise angenommen werden kann, dass ein Unternehmer ihn in seinem Tätigkeitsbereich gegenüber Verbrauchern nach Treu und Glaub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anständigen Marktgepflogenheiten einhält;</p> <p>8. „wesentliche Beeinflussung des wirtschaftlichen Verhaltens des Verbrauchers“ die Vornahme einer geschäftlichen Handlung, um die Fähigkeit des Verbrauchers, eine informierte Entscheidung zu treffen, spürbar zu beeinträchtigen und damit den Verbraucher zu einer geschäftlichen Entscheidung zu veranlassen, die er andernfalls nicht getroffen hätte;</p> <p>9. „geschäftliche Entscheidung“ jede Entscheidung eines Verbrauchers oder sonstigen Marktteilnehmers darüber, ob, wie und unter welchen Bedingungen er ein Geschäft abschließen, eine Zahlung leisten, eine Ware oder Dienstleistung behalten oder abgeben oder ein vertragliches Recht im Zusammenhang mit einer Ware oder Dienstleistung ausüben will, unabhängig davon, ob der Verbraucher oder sonstige Marktteilnehmer sich entschließt, tätig zu werden.</p> <p>(2) Für den Verbraucherbegriff gilt § 13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entsprechend.</p> <p>§ 3 Verbot unlauterer geschäftlicher Handlungen</p> <p>(1) Unlautere geschäftliche Handlungen sind unzulässig.</p>	<p>계없이 경제 분야 또는 개별 거래행위와 관련된 영업자들 행위에 관한 합의 또는 규칙을 의미한다.</p> <p>6. “영업자”란 산업적, 노동적, 직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그리고 이러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대리인 또는 그들의 성명을 사용하는 자를 의미한다.</p> <p>7. “영업적 주의의무”란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범위에서 건전한 시장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지식과 주의의무의 기준을 의미한다.</p> <p>8. “소비자의 경제적 행동에 대한 현저한 영향”이란 제공된 정보를 판단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침해하는 거래행위의 실행으로서 이러한 거래행위가 아니었다면 소비자가 다른 거래적 판단을 했었을 경우를 의미한다.</p> <p>9. “거래적 판단”이란 소비자 또는 기타 시장참여자가 실제로 행동하기로 판단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비자 또는 기타 시장참여자가 어떠한 조건에서 거래를 체결할지, 지불할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할지 또는 양도할지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모든 판단을 의미한다.</p> <p>(2) 동법에서 소비자개념은 민법 제13조에 따른다.</p> <p>제3조 (금지되는 부정한 거래행위)</p> <p>(1) 부정한 거래행위는 금지된다.</p>
--	--

<p>(2) Geschäftliche Handlungen, die sich an Verbraucher richten oder diese erreichen, sind unlauter, wenn sie nicht der unternehmerischen Sorgfalt entsprechen und dazu geeignet sind, das wirtschaftliche Verhalten des Verbrauchers wesentlich zu beeinflussen.</p> <p>(3) Die im Anhang dieses Gesetzes aufgeführten geschäftlichen Handlungen gegenüber Verbrauchern sind stets unzulässig.</p> <p>(4) Bei der Beurteilung von geschäftlichen Handlungen gegenüber Verbrauchern ist auf den durchschnittlichen Verbraucher oder, wenn sich die geschäftliche Handlung an eine bestimmte Gruppe von Verbrauchern wendet, auf ein durchschnittliches Mitglied dieser Gruppe abzustellen. Geschäftliche Handlungen, die für den Unternehmer vorhersehbar das wirtschaftliche Verhalten nur einer eindeutig identifizierbaren Gruppe von Verbrauchern wesentlich beeinflussen, die auf Grund von geistigen oder körperlichen Beeinträchtigungen, Alter oder Leichtgläubigkeit im Hinblick auf diese geschäftlichen Handlungen oder die diesen zugrunde liegende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besonders schutzbedürftig sind, sind aus der Sicht eines durchschnittlichen Mitglieds dieser Gruppe zu beurteilen.</p> <p>§ 3a Rechtsbruch</p> <p>Unlauter handelt, wer einer gesetzlichen Vorschrift zuwiderhandelt, die auch dazu bestimmt ist, im Interesse der Marktteilnehmer das Marktverhalten zu regeln, und der Verstoß geeignet ist, die Interessen von Verbrauchern, sonstigen Marktteilnehmern oder Mitbewerbern spürbar zu beeinträchtigen.</p> <p>§ 4 Mitbewerberschutz</p> <p>Unlauter handelt, w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ie Kennzeichen, Waren, Dienstleistungen, Tätigkeiten oder persönlichen oder geschäftlichen Verhältnisse eines Mitbewerbers herabsetzt oder verunglimpft; 2. über die Waren, Dienstleistungen oder 	<p>(2) 소비자를 향하거나 소비자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거래행위가 영업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행위에 현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금지된다.</p> <p>(3) 동법 부칙에 도입된 부정경쟁 행위는 당연히 금지된다.</p> <p>(4) 소비자에 대한 거래행위를 판단하는 경우, 평균적 소비자, 또는 거래행위가 특정한 소비자 계층에 사용된 경우 그 계층의 평균적 소비자에 근거해야 한다. 영업자의 예측가능성에 대해서 거래행위 관점에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 나이 또는 경솔함 또는 이러한 것에 근거한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들에 해당되는 소비자 계층의 경제적 행위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거래행위는 해당 계층의 평균적 구성원의 관점에 근거해서 판단되어야 한다.</p> <p>제3a조 (법규위반을 통한 부정경쟁행위)</p> <p>누구든지 시장참여자의 이익에서 시장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하고 그 법규위반이 소비자, 기타 시장참여자 또는 경쟁자의 이익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침해하는 경우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다.</p> <p>제4조 (경쟁자보호)</p> <p>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경쟁자의 표지, 상품, 서비스, 활동, 인적 또는 거래적 관계를 폄하 또는 비방하는 행위 2. 경쟁자의 영업 또는 상품, 서비스 또는 경영자
---	--

<p>das Unternehmen eines Mitbewerbers oder über den Unternehmer oder ein Mitglied der Unternehmensleitung Tatsachen behauptet oder verbreitet, die geeignet sind, den Betrieb des Unternehmens oder den Kredit des Unternehmers zu schädigen, sofern die Tatsachen nicht erweislich wahr sind; handelt es sich um vertrauliche Mitteilungen und hat der Mitteilende oder der Empfänger der Mitteilung an ihr ein berechtigtes Interesse, so ist die Handlung nur dann unlauter, wenn die Tatsachen der Wahrheit zuwider behauptet oder verbreitet wurden;</p> <p>3. Waren oder Dienstleistungen anbietet, die eine Nachahmung der Waren oder Dienstleistungen eines Mitbewerbers sind, wenn er</p> <p>a) eine vermeidbare Täuschung der Abnehmer über die betriebliche Herkunft herbeiführt,</p> <p>b) die Wertschätzung der nachgeahmten Ware oder Dienstleistung unangemessen ausnutzt oder beeinträchtigt oder</p> <p>c) die für die Nachahmung erforderlichen Kenntnisse oder Unterlagen unredlich erlangt hat;</p> <p>4. Mitbewerber gezielt behindert.</p> <p>§ 4a Aggressive geschäftliche Handlungen</p> <p>(1) Unlauter handelt, wer eine aggressive geschäftliche Handlung vornimmt, die geeignet ist, den Verbraucher oder sonstigen Marktteilnehmer zu einer geschäftlichen Entscheidung zu veranlassen, die dieser andernfalls nicht getroffen hätte. Eine geschäftliche Handlung ist aggressiv, wenn sie im konkreten Fall unter Berücksichtigung aller Umstände geeignet ist, die Entscheidungsfreiheit des Verbrauchers oder sonstigen Marktteilnehmers erheblich zu beeinträchtigen durch</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Belästigung, 2. Nötigung einschließlich der Anwendung körperlicher Gewalt oder 3. unzulässige Beeinflussung. <p>Eine unzulässige Beeinflussung liegt vor, wenn der Unternehmer eine Machtposition gegenüber dem Verbraucher oder sonstigen Marktteilnehmer zur Ausübung von Druck, auch ohne</p>	<p>na im Mitarbeiter zu einem Mitarbeiter über den Mitarbeiter Tatsachen behauptet oder verbreitet, die geeignet sind, den Betrieb des Unternehmens oder den Kredit des Unternehmers zu schädigen, sofern die Tatsachen nicht erweislich wahr sind; handelt es sich um vertrauliche Mitteilungen und hat der Mitteilende oder der Empfänger der Mitteilung an ihr ein berechtigtes Interesse, so ist die Handlung nur dann unlauter, wenn die Tatsachen der Wahrheit zuwider behauptet oder verbreitet wurden;</p> <p>3. 경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모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p> <p>a) 수요자에게 영업적 출처에 관한 회피 가능한 혼동을 야기한 경우</p> <p>b) 모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평가를 악용 또는 훼손한 경우</p> <p>c) 모방에 대한 필요한 지식 또는 서류를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p> <p>4. 경쟁자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p> <p>제4a조 (공격적 거래행위)</p> <p>(1) 소비자 및 기타 시장참가자에게 공격적 거래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공격적 거래행위를 실행한 자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래행위가 구체적 사례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소비자 또는 시장참여자의 결정의 자유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공격적인 거래행위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괴롭힘 2. 신체적 유형력을 포함한 강요 3. 부당한 영향력 <p>부당한 영향력이란 신체적 유형력 또는 협박의 행사 없이, 압력을 행사하고자 소비자 또는 기타 시장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 능력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우월적 지위(Machtposition)를</p>
---	--

<p>Anwendung oder Androhung von körperlicher Gewalt, in einer Weise ausnutzt, die die Fähigkeit des Verbrauchers oder sonstigen Marktteilnehmers zu einer informierten Entscheidung wesentlich einschränkt.</p> <p>(2) Bei der Feststellung, ob eine geschäftliche Handlung aggressiv im Sinne des Absatzes 1 Satz 2 ist, ist abzustellen auf</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Zeitpunkt, Ort, Art oder Dauer der Handlung; 2. die Verwendung drohender oder beleidigender Formulierungen oder Verhaltensweisen; 3. die bewusste Ausnutzung von konkreten Unglückssituationen oder Umständen von solcher Schwere, dass sie das Urteilsvermögen des Verbrauchers oder sonstigen Marktteilnehmers beeinträchtigen, um dessen Entscheidung zu beeinflussen; 4. belastende oder unverhältnismäßige Hindernisse nichtvertraglicher Art, mit denen der Unternehmer den Verbraucher oder sonstigen Marktteilnehmer an der Ausübung seiner vertraglichen Rechte zu hindern versucht, wozu auch das Recht gehört, den Vertrag zu kündigen oder zu einer anderen Ware oder Dienstleistung oder einem anderen Unternehmer zu wechseln; 5. Drohungen mit rechtlich unzulässigen Handlungen. <p>Zu den Umständen, die nach Nummer 3 zu berücksichtigen sind, zählen insbesondere geistige und körperliche Beeinträchtigungen, das Alter, die geschäftliche Unerfahrenheit, die Leichtgläubigkeit, die Angst und die Zwangslage von Verbrauchern.</p> <p>§ 5 Irreführende geschäftliche Handlungen</p> <p>(1) Unlauter handelt, wer eine irreführende geschäftliche Handlung vornimmt, die geeignet ist, den Verbraucher oder sonstigen Marktteilnehmer zu einer geschäftlichen Entscheidung zu veranlassen, die er andernfalls nicht getroffen hätte. Eine geschäftliche Handlung ist irreführend, wenn sie unwahre Angaben enthält oder sonstige zur Täuschung geeignete Angaben über folgende Umstände enthält:</p>	<p>이용하는 것이다.</p> <p>(2) 제1항 제2문에서 거래행위가 공격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동의 시기, 장소, 기간 2. 협박 또는 모욕적 행위방법과 행위표현의 이용 3.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소비자 또는 기타 시장참여자의 판단력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불행한 상황 또는 그러한 어려운 사정의 고의적 악용 4.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다른 영업자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소비자 또는 기타 시장참여자들의 계약적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로서 비계약적 유형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 또는 과도한 방해행위 5.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한 협박 <p>제3호의 판단기준을 고려할 때, 특히나 소비자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피해, 나이, 거래적 무경험, 경솔함, 두려움, 그리고 강요상태가 고려되어야만 한다.</p> <p>제5조 (오인을 야기하는 거래행위)</p> <p>(1) 소비자 또는 기타 시장참여자가 오인을 야기하는 거래행위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거래적 판단을 오인을 야기하는 거래행위로 발생시킨 경우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오인을 야기하는 거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해 허위의 표시 또는 혼동을 발생시키는 표시를 포함하는 경우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이다.</p>
---	---

<p>1. die wesentlichen Merkmale der Ware oder Dienstleistung wie Verfügbarkeit, Art, Ausführung, Vorteile, Risiken, Zusammensetzung, Zubehör, Verfahren oder Zeitpunkt der Herstellung, Lieferung oder Erbringung, Zwecktauglichkeit, Verwendungsmöglichkeit, Menge, Beschaffenheit, Kundendienst und Beschwerdeverfahren, geographische oder betriebliche Herkunft, von der Verwendung zu erwartende Ergebnisse oder die Ergebnisse oder wesentlichen Bestandteile von Tests der Waren oder Dienstleistungen;</p> <p>2. den Anlass des Verkaufs wie das Vorhandensein eines besonderen Preisvorteils, den Preis oder die Art und Weise, in der er berechnet wird, oder die Bedingungen, unter denen die Ware geliefert oder die Dienstleistung erbracht wird;</p> <p>3. die Person, Eigenschaften oder Rechte des Unternehmers wie Identität, Vermögen einschließlich der Rechte des geistigen Eigentums, den Umfang von Verpflichtungen, Befähigung, Status, Zulassung, Mitgliedschaften oder Beziehungen, Auszeichnungen oder Ehrungen, Beweggründe für die geschäftliche Handlung oder die Art des Vertriebs;</p> <p>4. Aussagen oder Symbole, die im Zusammenhang mit direktem oder indirektem Sponsoring stehen oder sich auf eine Zulassung des Unternehmers oder der Waren oder Dienstleistungen beziehen;</p> <p>5. die Notwendigkeit einer Leistung, eines Ersatzteils, eines Austauschs oder einer Reparatur;</p> <p>6. die Einhaltung eines Verhaltenskodexes, auf den sich der Unternehmer verbindlich verpflichtet hat, wenn er auf diese Bindung hinweist, oder</p> <p>7. Rechte des Verbrauchers, insbesondere solche auf Grund von Garantieversprechen oder Gewährleistungsrechte bei Leistungsstörungen.</p> <p>(2) Eine geschäftliche Handlung ist auch irreführend, wenn sie im Zusammenhang mit der Vermarktung vo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einschließlich vergleichender Werbung eine Verwechslungsgefahr mit einer anderen Ware oder Dienstleistung oder mit der Marke oder einem anderen Kennzeichen eines Mitbewerbers hervorruft.</p>	<p>1. 처분가능성, 종류, 이행, 이익, 위험, 구성, 부속품, 생산의 방법 또는 시기, 생산, 공급 또는 제공, 목적적합성, 사용목적, 수량, 절차 또는 시기, 목적유용, 수량, 특성, 소비자서비스, 지역적 또는 영업적 출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테스트의 중요한 부분 또는 결과, 사용한 결과, 기대되는 결과와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특징</p> <p>2. 판매기회로서 현존하는 특별한 가격적 이익, 고려 대상이 되는 가격 또는 방법 또는 상품 제공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조건들</p> <p>3. 거래 행위 또는 영업방법에 대한 사람,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재산, 식별력과 같은 영업자의 속성 또는 권리, 의무의 범위, 능력, 지위, 권한, 구성원 또는 관련성, 가격표 또는 명성, 동기</p> <p>4. 표현 또는 상징으로서 영업자 또는 상품, 서비스의 허락에 관련된 것이거나 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후원 관계에 있다는 것</p> <p>5. 급부, 부품, 부품교환 또는 수리의 필수성</p> <p>6. 영업자가 행동규범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에 대한 그 행동규범을 준수하는 것</p> <p>7. 소비자의 권리, 특히 급부장애에 대한 담보책임 또는 보증에 대한 권리</p> <p>(2) 비교 광고를 포함하여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품화와 관련하여 경쟁자의 상표, 다른 표지, 상품, 서비스와 혼동위험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는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이다.</p>
---	--

<p>(3) Angaben im Sinne von Absatz 1 Satz 2 sind auch Angaben im Rahmen vergleichender Werbung sowie bildliche Darstellungen und sonstige Veranstaltungen, die darauf zielen und geeignet sind, solche Angaben zu ersetzen.</p> <p>(4) Es wird vermutet, dass es irreführend ist, mit der Herabsetzung eines Preises zu werben, sofern der Preis nur für eine unangemessen kurze Zeit gefordert worden ist. Ist streitig, ob und in welchem Zeitraum der Preis gefordert worden ist, so trifft die Beweislast denjenigen, der mit der Preisherabsetzung geworben hat.</p> <p>§ 5a Irreführung durch Unterlassen</p> <p>(1) Bei der Beurteilung, ob das Verschweigen einer Tatsache irreführend ist, sind insbesondere deren Bedeutung für die geschäftliche Entscheidung nach der Verkehrsauffassung sowie die Eignung des Verschweigens zur Beeinflussung der Entscheidung zu berücksichtigen.</p> <p>(2) Unlauter handelt, wer im konkreten Fall unter Berücksichtigung aller Umstände dem Verbraucher eine wesentliche Information vorenthäl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ie der Verbraucher je nach den Umständen benötigt, um eine informierte geschäftliche Entscheidung zu treffen, und 2. deren Vorenthalten geeignet ist, den Verbraucher zu einer geschäftlichen Entscheidung zu veranlassen, die er andernfalls nicht getroffen hätte. Als Vorenthalten gilt auch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as Verheimlichen wesentlicher Informationen, 2. die Bereitstellung wesentlicher Informationen in unklarer, unverständlicher oder zweideutiger Weise, 3. die nicht rechtzeitige Bereitstellung wesentlicher Informationen. <p>(3) Werde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unter Hinweis auf deren Merkmale und Preis in einer dem verwendeten Kommunikationsmittel angemessenen Weise so angeboten, dass ein durchschnittlicher Verbraucher das</p>	<p>(3) 제1항 제2문에서 의미하는 표시란 비교 광고에 속하는 표시 또는 표시를 대체할 목적에 적합한 묘사와 기타의 행사 또한 해당된다.</p> <p>(4) 가격할인 광고의 경우 할인된 가격이 불합리하게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된 경우에는 오인을 야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가격할인의 필요성과 기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가격할인을 한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p> <p>제5a조 (부작위에 의한 오인야기행위)</p> <p>(1) 사실에 대한 침묵이 오인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특히 그 침묵이 거래관념에 따라 거래적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는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데 적절한 것인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p> <p>(2) 구체적인 사례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본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리적인 거래적 판단을 하기 위해 소비자가 그 상황에 근거하는 경우 2. 그러한 침묵이 소비자가 침묵행위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거래적 판단을 야기시킨 경우 다음의 경우 침묵행위로 인정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질적인 정보를 숨기는 행위 2. 본질적인 정보를 불명확하고 이해할 수 없거나 또는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3. 본질적인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지 않은 것 <p>(3) 상품 또는 서비스가 통신수단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그 특징과 가격을 표시하여 제공되어서 일반 소비자가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는 해당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제2항에서 의미하는 본질적인 정보로 인정된다.</p>
--	---

<p>Geschäft abschließen kann, gelten folgende Informationen als wesentlich im Sinne des Absatzes 2, sofern sie sich nicht unmittelbar aus den Umständen ergebe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lle wesentlichen Merkmale der Ware oder Dienstleistung in dem dieser und dem verwendeten Kommunikationsmittel angemessenen Umfang; 2. die Identität und Anschrift des Unternehmers, gegebenenfalls die Identität und Anschrift des Unternehmers, für den er handelt; 3. der Gesamtpreis oder in Fällen, in denen ein solcher Preis auf Grund der Beschaffenheit der Ware oder Dienstleistung nicht im Voraus berechnet werden kann, die Art der Preisberechnung sowie gegebenenfalls alle zusätzlichen Fracht-, Liefer- und Zustellkosten oder in Fällen, in denen diese Kosten nicht im Voraus berechnet werden können, die Tatsache, dass solche zusätzlichen Kosten anfallen können; 4. Zahlungs-, Liefer- und Leistungsbedingungen sowie Verfahren zum Umgang mit Beschwerden, soweit sie von Erfordernissen der unternehmerischen Sorgfalt abweichen, und 5. das Bestehen eines Rechts zum Rücktritt oder Widerruf. <p>(4) Als wesentlich im Sinne des Absatzes 2 gelten auch Informationen, die dem Verbraucher auf Grund unionsrechtlicher Verordnungen oder nach Rechtsvorschriften zur Umsetzung unionsrechtlicher Richtlinien für kommerzielle Kommunikation einschließlich Werbung und Marketing nicht vorenthalten werden dürfen.</p> <p>(5) Bei der Beurteilung, ob Informationen vorenthalten wurden, sind zu berücksichtige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räumliche oder zeitliche Beschränkungen durch das für die geschäftliche Handlung gewählte Kommunikationsmittel sowie 2. alle Maßnahmen des Unternehmers, um dem Verbraucher die Informationen auf andere Weise als durch das Kommunikationsmittel nach Nummer 1 zur Verfügung zu stellen. <p>(6) Unlauter handelt auch, wer den kommerziellen Zweck einer geschäftlichen Handlung nicht kenntlich macht, sofern sich dieser nicht unmittelbar aus de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된 통신수단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모든 본질적 특징 2. 영업자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주소, 경우에 따라서 그 영업자를 위해 거래하는 영업자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주소 3. 최종가격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상 최종가격이 사전에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가격산정 방법, 경우에 따라 모든 추가적인 운송, 공급, 배달가격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 가격이 사전에 산정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영업적 주의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한 지급, 공급, 제공조건 또는 불만사항 처리 절차 5. 해제권, 철회권의 존재 <p>(4) 광고 마케팅을 포함하여 상업적 통신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을 도입한 국내법에 따르거나 또는 유럽연합 규정에 따른다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지 않는 정보도 제2항의 본질적 정보에 해당된다.</p> <p>(5)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행위를 위해 선택된 통신수단을 통한 공간적 시간적 제한 또는 2. 제1호에 따라 통신수단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영업자의 모든 조치 <p>(6) 거래행위의 상업적 목적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숨김으로 인해 소비자에</p>
---	---

<p>Umständen ergibt, und das Nichtkenntlichmachen geeignet ist, den Verbraucher zu einer geschäftlichen Entscheidung zu veranlassen, die er andernfalls nicht getroffen hätte.</p> <p>§ 6 Vergleichende Werbung</p> <p>(1) Vergleichende Werbung ist jede Werbung, die unmittelbar oder mittelbar einen Mitbewerber oder die von einem Mitbewerber angebotene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erkennbar macht.</p> <p>(2) Unlauter handelt, wer vergleichend wirbt, wenn der Vergleich</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ich nicht auf Waren oder Dienstleistungen für den gleichen Bedarf oder dieselbe Zweckbestimmung bezieht, 2. nicht objektiv auf eine oder mehrere wesentliche, relevante, nachprüfbare und typische Eigenschaften oder den Preis dieser Waren oder Dienstleistungen bezogen ist, 3. im geschäftlichen Verkehr zu einer Gefahr von Verwechslungen zwischen dem Werbenden und einem Mitbewerber oder zwischen den von diesen angebotenen Waren oder Dienstleistungen oder den von ihnen verwendeten Kennzeichen führt, 4. den Ruf des von einem Mitbewerber verwendeten Kennzeichens in unlauterer Weise ausnutzt oder beeinträchtigt, 5. die Waren, Dienstleistungen, Tätigkeiten oder persönlichen oder geschäftlichen Verhältnisse eines Mitbewerbers herabsetzt oder verunglimpft oder 6. eine Ware oder Dienstleistung als Imitation oder Nachahmung einer unter einem geschützten Kennzeichen vertriebenen Ware oder Dienstleistung darstellt. <p>§ 7 Unzumutbare Belästigungen</p> <p>(1) Eine geschäftliche Handlung, durch die ein Marktteilnehmer in unzumutbarer Weise belästigt wird, ist unzulässig. Dies gilt insbesondere für Werbung, obwohl erkennbar ist, dass der angesprochene Marktteilnehmer diese Werbung nicht wünscht.</p>	<p>게 다른 거래적 판단을 하게한 경우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p> <p>제6조 (비교 광고)</p> <p>(1) 비교 광고란 경쟁자 또는 경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광고이다.</p> <p>(2)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비교하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한 필요성 또는 사용목적을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련성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경우 2.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수의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증명 가능한 전형적인 특성 또는 가격의 객관적 비교가 아닌 경우 3. 거래과정에서 광고자와 경쟁자 사이 또는 제공된 상품 또는 서비스 사이, 광고자에 의해 이용된 표지 사이에 혼동 위험의 원인이 되는 광고 4.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자가 이용하는 표지의 명성을 이용하거나 훼손하는 광고 5. 경쟁자의 상품, 서비스 활동 또는 사적 또는 영업적 관계를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광고 또는 6. 상품 또는 서비스가 보호되는 표지를 부착하고 판매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복제품 또는 유사품이라고 설명하는 광고 <p>제7조 (수인한도를 넘어 부담을 주는 행위)</p> <p>(1) 시장참여자에 의해 수인한도를 넘는 방법으로 부담을 주는 거래행위는 금지된다. 이것은 특히 상대 시장참여자가 이 광고를 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행하는 광고에도 적용된다.</p>
---	---

<p>(2) Eine unzumutbare Belästigung ist stets anzunehmen</p> <p>1. bei Werbung unter Verwendung eines in den Nummern 2 und 3 nicht aufgeführten, für den Fernabsatz geeigneten Mittels der kommerziellen Kommunikation, durch die ein Verbraucher hartnäckig angesprochen wird, obwohl er dies erkennbar nicht wünscht;</p> <p>2. bei Werbung mit einem Telefonanruf gegenüber einem Verbraucher ohne dessen vorherige ausdrückliche Einwilligung oder gegenüber einem sonstigen Marktteilnehmer ohne dessen zumindest mutmaßliche Einwilligung,</p> <p>3. bei Werbung unter Verwendung einer automatischen Anrufmaschine, eines Faxgerätes oder elektronischer Post, ohne dass eine vorherige ausdrückliche Einwilligung des Adressaten vorliegt, oder</p> <p>4. bei Werbung mit einer Nachricht,</p> <p>a) bei der die Identität des Absenders, in dessen Auftrag die Nachricht übermittelt wird, verschleiert oder verheimlicht wird oder</p> <p>b) bei der gegen § 6 Absatz 1 des Telemediengesetzes verstoßen wird oder in der der Empfänger aufgefordert wird, eine Website aufzurufen, die gegen diese Vorschrift verstößt, oder</p> <p>c) bei der keine gültige Adresse vorhanden ist, an die der Empfänger eine Aufforderung zur Einstellung solcher Nachrichten richten kann, ohne dass hierfür andere als die Übermittlungskosten nach den Basistarifen entstehen.</p> <p>(3) Abweichend von Absatz 2 Nummer 3 ist eine unzumutbare Belästigung bei einer Werbung unter Verwendung elektronischer Post nicht anzunehmen, wenn</p> <p>1. ein Unternehmer im Zusammenhang mit dem Verkauf einer Ware oder Dienstleistung von dem Kunden dessen elektronische Postadresse erhalten hat,</p> <p>2. der Unternehmer die Adresse zur Direktwerbung für eigene ähnliche Waren oder Dienstleistungen verwendet,</p> <p>3. der Kunde der Verwendung nicht widersprochen hat und</p> <p>4. der Kunde bei Erhebung der Adresse und bei jeder Verwendung klar und deutlich darauf hingewiesen wird, dass er der Verwendung jederzeit</p>	<p>(2) 수인한도를 넘어 부담을 주는 행위는 다음의 경우 항상 인정된다.</p> <p>1.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통신판매에 적합한 상업적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달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그 소비자에게 집요하게 광고하는 경우</p> <p>2. 사전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소비자에게 전화로 광고하거나 기타 시장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추정적 승낙 없이 광고하는 경우</p> <p>3.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승낙 없이 전자메일, 팩스, 자동통신장치를 이용해서 광고하는 경우 또는</p> <p>4. 소식지를 통한 광고의 경우,</p> <p>a) 전송한 사람을 구별하는 데 있어 소식지를 전송하는 사람의 의도가 비밀로 되어 있거나 은폐되어 있거나</p> <p>b) 통신미디어법(Telemediengesetzes) 제6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동법을 위반해서 수신인에게 웹사이트를 불러오게 하거나, 또는</p> <p>c) 수신자가 기본계약에 따른 비용 이외의 비용 없이 소식지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유효한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p> <p>(3) 제2항 제3호의 예외로서 전자메일을 사용한 광고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은 부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p> <p>1.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와 관련하여 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그 전자메일 주소를 수집한 경우</p> <p>2. 영업자가 위 주소를 자신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직접광고에 사용하는 경우</p> <p>3. 고객이 그 이용에 이의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p> <p>4. 전자메일 주소의 수집 및 이용 시마다, 고객에게 기본 계약에 근거하는 비용 이외의 통신비의 부담 없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확</p>
---	--

widersprechen kann, ohne dass hierfür andere als die Übermittlungskosten nach den Basistarifen entstehen.

Kapitel 2 Rechtsfolgen

§ 8 Beseitigung und Unterlassung

(1) Wer eine nach § 3 oder § 7 unzulässige geschäftliche Handlung vornimmt, kann auf Beseitigung und bei Wiederholungsgefahr auf Unterlassung in Anspruch genommen werden. Der Anspruch auf Unterlassung besteht bereits dann, wenn eine derartige Zuwiderhandlung gegen § 3 oder § 7 droht.

(2) Werden die Zuwiderhandlungen in einem Unternehmen von einem Mitarbeiter oder Beauftragten begangen, so sind der Unterlassungsanspruch und der Beseitigungsanspruch auch gegen den Inhaber des Unternehmens begründet.

(3) Die Ansprüche aus Absatz 1 stehen zu:

1. jedem Mitbewerber;
2. rechtsfähigen Verbänden zur Förderung gewerblicher oder selbständiger beruflicher Interessen, soweit ihnen eine erhebliche Zahl von Unternehmern angehört, die Waren oder Dienstleistungen gleicher oder verwandter Art auf demselben Markt vertreiben, wenn sie insbesondere nach ihrer personellen, sachlichen und finanziellen Ausstattung imstande sind, ihre satzungsmäßigen Aufgaben der Verfolgung gewerblicher oder selbständiger beruflicher Interessen tatsächlich wahrzunehmen und soweit die Zuwiderhandlung die Interessen ihrer Mitglieder berührt;
3. qualifizierten Einrichtungen, die nachweisen, dass sie in der Liste der qualifizierten Einrichtungen nach § 4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oder in dem Verzeichnis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nach Artikel 4 Absatz 3 der Richtlinie 2009/22/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3. April 2009 über Unterlassungskla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interessen (ABl. L 110 vom 1.5.2009, S. 30) eingetragen

und eindeutig identifiziert sind.

제2장 법률효과

제8조 (제거청구권과 금지청구권)

(1)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금지된 거래행위를 한 자는 제거청구와 반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 금지청구를 받을 수 있다. 제3조 또는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에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영업의 종업원 또는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 금지청구권과 제거청구권은 영업의 소유자에게도 청구될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한 청구권은 각호의 자에게 발생한다.

1. 모든 경쟁자
2. 산업적 또는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격 있는 단체로서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하거나 관련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자들의 대다수가 속해 있을 것, 그리고 만약 단체가 특히 단체의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단체 정관에 따라 산업적 또는 자영업자들의 이익 추구를 사실적으로 보장하고 위반행위가 구성원의 이익에 관계되어 있어야 한다.

3. 부작위소송법(Unterlassungsklagengesetzes) 제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기관 목록에 해당되는 자격 있는 기관 또는 소비자이익 보호를 위한 부작위소송 지침(Richtlinie 2009/22/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3. April 2009 über Unterlassungskla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interessen)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명부에 등록된 기관

<p>sind;</p> <p>4. den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oder den Handwerkskammern.</p> <p>(4) Stellen nach Absatz 3 Nummer 2 und 3 können die Ansprüche nicht geltend machen, solange ihre Eintragung ruht.</p> <p>(5) § 13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ist entsprechend anzuwenden; in § 13 Absatz 1 und 3 Satz 2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treten an die Stelle der dort aufgeführten Ansprüche nach dem Unterlassungsklagengesetz die Ansprüche nach dieser Vorschrift. Im Übrigen findet das Unterlassungsklagengesetz keine Anwendung, es sei denn, es liegt ein Fall des § 4e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vor.</p> <p>§ 8a Anspruchsberechtigte bei einem Verstoß gegen die Verordnung (EU) 2019/1150</p> <p>Anspruchsberechtigt nach § 8 Absatz 1 sind bei einem Verstoß gegen die Verordnung (EU) 2019/1150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0. Juni 2019 zur Förderung von Fairness und Transparenz für gewerbliche Nutzer von Online-Vermittlungsdiensten (ABl. L 186 vom 11.7.2019, S. 57) abweichend von § 8 Absatz 3 die Verbände, Organisationen und öffentlichen Stellen, die die Voraussetzungen des Artikels 14 Absatz 3 und 4 der Verordnung (EU) 2019/1150 erfüllen.</p> <p>§ 8b Liste der qualifizierten Wirtschaftsverbände</p> <p>(1) Das Bundesamt für Justiz führt eine Liste der qualifizierten Wirtschaftsverbände und veröffentlicht sie in der jeweils aktuellen Fassung auf seiner Internetseite.</p> <p>(2) Ein rechtsfähiger Verband, zu dessen satzungsmäßigen Aufgaben es gehört, gewerbliche oder selbstständige berufliche Interessen zu verfolgen und zu fördern sowie zu Fragen des lautereren Wettbewerbs zu beraten und zu</p>	<p>4.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회의소(Industrie- und Handelskammern oder Handwerkskammern)</p> <p>(4)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체는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p> <p>(5) 부작위소송법 제13조가 준용된다. 부작위소송법 제13조 제1항과 제3항 제2호에서 부작위소송법에 따른 청구권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청구권으로 인정된다. 통상의 경우 부작위소송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다만, 부작위소송법 제4e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p> <p>제8a조 「유럽연합규정(EU) 2019/1150」 위반 시 청구권자</p> <p>「온라인 중개서비스 사용자의 공정성과 투명성 촉진에 관한 2019년 6월 2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9/1150」 위반 시, 제8조 제3항의 규정과 달리 「유럽연합규정(EU) 2019/1150」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협회, 조직 및 공공 기관이다.</p> <p>제8b조 (적격한 경제연합회 목록)</p> <p>(1) 연방 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는 자격을 갖춘 경제 단체들의 목록을 관리하고 웹사이트에 최신 버전을 게시하도록 한다.</p> <p>(2) 정관에 따라 영업적 또는 자영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공정경쟁 사안에 대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목록에 등록된다.</p>
--	---

<p>informieren, wird auf seinen Antrag in die Liste eingetragen, wen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r mindestens 75 Unternehmer als Mitglieder hat, 2. er zum Zeitpunkt der Antragstellung seit mindestens einem Jahr seine satzungsmäßigen Aufgaben wahrgenommen hat, 3. auf Grund seiner bisherigen Tätigkeit sowie seiner personellen, sachlichen und finanziellen Ausstattung gesichert erscheint, dass er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seine satzungsmäßigen Aufgaben auch künftig dauerhaft wirksam und sachgerecht erfüllen wird und b) seine Ansprüche nicht vorwiegend geltend machen wird, um für sich Einnahmen aus Abmahnungen oder Vertragsstrafen zu erzielen, 4. seinen Mitgliedern keine Zuwendungen aus dem Verbandsvermögen gewährt werden und Personen, die für den Verband tätig sind, nicht durch unangemessen hohe Vergütungen oder andere Zuwendungen begünstigt werden. <p>(3) § 4 Absatz 3 und 4 sowie die §§ 4a bis 4d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sind entsprechend anzuwenden.</p> <p>§ 8c Verbot der missbräuchlichen Geltendmachung von Ansprüchen; Haftung</p> <p>(1) Die Geltendmachung der Ansprüche aus § 8 Absatz 1 ist unzulässig, wenn si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gesamten Umstände missbräuchlich ist.</p> <p>(2) Eine missbräuchliche Geltendmachung ist im Zweifel anzunehmen, wen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ie Geltendmachung der Ansprüche vorwiegend dazu dient, gegen den Zuwiderhandelnden einen Anspruch auf Ersatz von Aufwendungen oder von Kosten der Rechtsverfolgung oder die Zahlung einer Vertragsstrafe entstehen zu lassen, 2. ein Mitbewerber eine erhebliche Anzahl von Verstößen gegen die gleiche Rechtsvorschrift durch Abmahnungen geltend macht, wenn die Anzahl der geltend gemachten Verstöße außer Verhältnis zum Umfang der eigenen Geschäftstätigkeit steht oder wenn anzunehmen ist, dass der Mitbewerber da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소한 75개 이상의 기업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신청 시, 정관에 따른 의무를 최소 1년 이상 수행한 경우 3. 기존의 활동과 인적, 물질적, 재정적 자원을 근거로 볼 때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향후에도 꾸준히 정관에 따른 의무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수행할 것 b) 경고 또는 위약금에 따른 수입을 주로 목표로 하는 청구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 4. 단체의 자산으로 단체 구성원에게 수당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보수 또는 기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p>(3) 이에 「부작위소송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4a조 내지 제4d조가 준용된다.</p> <p>제8c조 (청구의 남용 금지)</p> <p>(1)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p> <p>(2) 남용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장의 남용이 있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로 위반행위자에게 비용 또는 소송비용의 상환 또는 위약금 지불을 청구하기 위해 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2. 주장하는 위반 횟수가 자기 영업활동 범위에 비례하지 않거나 재판 외 또는 재판상 조치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경쟁자 스스로 부담하지 않음에도 경고를 통해 경쟁자가 동일 법률조항에 대한 상당한 수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	---

<p>wirtschaftliche Risiko seines außergerichtlichen oder gerichtlichen Vorgehens nicht selbst trägt,</p> <p>3. ein Mitbewerber den Gegenstandswert für eine Abmahnung unangemessen hoch ansetzt,</p> <p>4. offensichtlich überhöhte Vertragsstrafen vereinbart oder gefordert werden,</p> <p>5. eine vorgeschlagene Unterlassungsverpflichtung offensichtlich über die abgemahnte Rechtsverletzung hinausgeht,</p> <p>6. mehrere Zuwiderhandlungen, die zusammen hätten abgemahnt werden können, einzeln abgemahnt werden oder</p> <p>7. wegen einer Zuwiderhandlung, für die mehrere Zuwiderhandelnde verantwortlich sind, die Ansprüche gegen die Zuwiderhandelnden ohne sachlichen Grund nicht zusammen geltend gemacht werden.</p> <p>(3) Im Fall der missbräuchlichen Geltendmachung von Ansprüchen kann der Anspruchsgegner vom Anspruchsteller Ersatz der für seine Rechtsverteidigung erforderlichen Aufwendungen fordern. Weitergehende Ersatzansprüche bleiben unberührt.</p> <p>§ 9 Schadensersatz</p> <p>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eine nach § 3 oder § 7 unzulässige geschäftliche Handlung vornimmt, ist den Mitbewerbern zum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Schadens verpflichtet. Gegen verantwortliche Personen von periodischen Druckschriften kann der Anspruch auf Schadensersatz nur bei einer vorsätzlichen Zuwiderhandlung geltend gemacht werden.</p> <p>§ 10 Gewinnabschöpfung</p> <p>(1) Wer vorsätzlich eine nach § 3 oder § 7 unzulässige geschäftliche Handlung vornimmt und hierdurch zu Lasten einer Vielzahl von Abnehmern einen Gewinn erzielt, kann von den gemäß § 8 Absatz 3 Nummer 2 bis 4 zur Geltendmachung eines Unterlassungsanspruchs Berechtigten auf Herausgabe dieses Gewinns an den Bundeshaushalt in Anspruch genommen werden.</p>	<p>3. 경쟁자가 경고에 대한 목적가액을 부적절하게 높게 설정한 경우</p> <p>4. 명백히 과도한 위약금을 합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p> <p>5. 경고대상인 법률의 위반을 명백히 초월하여 중지의무를 제안하는 경우</p> <p>6. 함께 경고할 수 있었던 여러 위반행위들을 각 개별로 경고하는 경우</p> <p>7. 다수의 위반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위반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p> <p>(3) 청구권 남용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권리방어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추가 보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제9조 (손해배상)</p> <p>고의 또는 과실로 제3조 또는 7조의 금지된 거래 행위를 한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경쟁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기간행물의 책임자는 고의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당할 수 있다.</p> <p>제10조 (이익환수청구권)</p> <p>(1) 고의로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금지된 거래 행위를 행하고 그것에 의해 다수의 구매자의 부담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제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금지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서 그가 얻은 이익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p>
---	---

<p>(2) Auf den Gewinn sind die Leistungen anzurechnen, die der Schuldner auf Grund der Zuwiderhandlung an Dritte oder an den Staat erbracht hat. Soweit der Schuldner solche Leistungen erst nach Erfüllung des Anspruchs nach Absatz 1 erbracht hat, erstattet die zuständige Stelle des Bundes dem Schuldner den abgeführten Gewinn in Höhe der nachgewiesenen Zahlungen zurück.</p> <p>(3) Beanspruchen mehrere Gläubiger den Gewinn, so gelten die §§ 428 bis 430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entsprechend.</p> <p>(4) Die Gläubiger haben der zuständigen Stelle des Bundes über die Geltendmachung von Ansprüchen nach Absatz 1 Auskunft zu erteilen. Sie können von der zuständigen Stelle des Bundes Erstattung der für die Geltendmachung des Anspruchs erforderlichen Aufwendungen verlangen, soweit sie vom Schuldner keinen Ausgleich erlangen können. Der Erstattungsanspruch ist auf die Höhe des an den Bundeshaushalt abgeführten Gewinns beschränkt.</p> <p>(5) Zuständige Stelle im Sinn der Absätze 2 und 4 ist das Bundesamt für Justiz.</p>	<p>(2) 채무자가 위반행위에 근거해 제3자 또는 국가에게 이행한 급부는 이익에 산입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그러한 급부를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실행 이후 처음 이행했을 경우에 한하여 연방 관할 기관은 채무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증명된 금액만큼 채무자에게 반환한다.</p> <p>(3) 복수의 채권자에 의해 이익의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428조에서 제430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p> <p>(4) 채권자는 연방 관할기관에 위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주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익환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연방 관할기관에 그 청구권의 주장을 위해 사용한 필수적 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반환청구권은 국고에 납부할 수 있었던 이익액을 한도로 한다.</p> <p>(5) 제2항 및 제4항의 관할기관이란 연방법무부이다.</p>
<p>§ 11 Verjährung</p> <p>(1) Die Ansprüche aus den §§ 8, 9 und 13 Absatz 3 verjähren in sechs Monaten.</p> <p>(2) Die Verjährungsfrist beginnt, wenn 1. der Anspruch entstanden ist und 2. der Gläubiger von den den Anspruch begründenden Umständen und der Person des Schuldners Kenntnis erlangt oder ohne grobe Fahrlässigkeit erlangen müsste.</p> <p>(3) Schadensersatzansprüche verjähren ohne Rücksicht auf die Kenntnis oder grob fahrlässige Unkenntnis in zehn Jahren von ihrer Entstehung, spätestens in 30 Jahren von der den Schaden auslösenden Handlung an.</p> <p>(4) Andere Ansprüche verjähren ohne Rücksicht auf die Kenntnis oder grob fahrlässige Unkenntnis in drei Jahren</p>	<p>제11조 (소멸시효)</p> <p>(1) 제8조, 제9조, 및 제13조 제3항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6개월이다.</p> <p>(2)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 1. 청구권이 성립되고 2. 채권자가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정 및 채무자의 신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안 경우</p> <p>(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인식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인식에 관계없이 그 성립 시로부터 10년이고, 손해를 발생 시기 행위시점부터 30년이다.</p> <p>(4) 다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인식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인식에 관계없이 발생 시점부터 3년이다.</p>

von der Entstehung an.

Kapitel 3 Verfahrensvorschriften

§ 12 Einstweiliger Rechtsschutz; Veröffentlichungsbefugnis; Streitwertminderung

(1) Zur Sicherung der in diesem Gesetz bezeichneten Ansprüche auf Unterlassung können einstweilige Verfügungen auch ohne die Darlegung und Glaubhaftmachung der in den §§ 935 und 940 der Zivilprozessordnung bezeichneten Voraussetzungen erlassen werden.

(2) Ist auf Grund dieses Gesetzes Klage auf Unterlassung erhoben worden, so kann das Gericht der obsiegenden Partei die Befugnis zusprechen, das Urteil auf Kosten der unterliegenden Partei öffentlich bekannt zu machen, wenn sie ein berechtigtes Interesse dardat. Art und Umfang der Bekanntmachung werden im Urteil bestimmt. Die Befugnis erlischt, wenn von ihr nicht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Eintritt der Rechtskraft Gebrauch gemacht worden ist. Der Ausspruch nach Satz 1 ist nicht vorläufig vollstreckbar.

(3) Macht eine Partei in Rechtsstreitigkeiten, in denen durch Klage ein Anspruch aus einem der in diesem Gesetz geregelten Rechtsverhältnisse geltend gemacht wird, glaubhaft, dass die Belastung mit den Prozesskosten nach dem vollen Streitwert ihre wirtschaftliche Lage erheblich gefährden würde, so kann das Gericht auf ihren Antrag anordnen, dass die Verpflichtung dieser Partei zur Zahlung von Gerichtskosten sich nach einem ihrer Wirtschaftslage angepassten Teil des Streitwerts bemisst. Die Anordnung hat zur Folge, dass

1. die begünstigte Partei die Gebühren ihres Rechtsanwalts ebenfalls nur nach diesem Teil des Streitwerts zu entrichten hat,
2. die begünstigte Partei, soweit ihr Kosten des Rechtsstreits auferlegt werden oder soweit sie diese übernimmt, die von dem Gegner entrichteten Gerichtsgebühren und die Gebühren seines

제3장 절차 규정

제12조 (청구집행, 공표권, 소송 대상물 가치의 감액)

(1) 본법에 명시된 금지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 935조 및 제940조에 규정되고 있는 명시된 것처럼 소명이 없는 경우에서도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본법에 근거하여 금지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승소자가 증명했을 경우에는 법정은 승소한 측에 패소자의 비용부담으로 판결을 공표할 권리를 줄 수 있다. 공표의 방식 및 범위는 판결에서 결정된다. 법적 권한이 생긴 후 3개월 이내에 행사되지 않았을 때는 이 권리는 소멸한다. 본 항 제1문에 근거할 권리는 임시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3) 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소송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사자의 재정 상태를 위태롭게 할 때 이를 법원에 증명하면, 법원은 요청에 의해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원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측정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1. 수혜자는 자신의 변호사 수입료에 대해, 감액된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금액만을 납부하면 충분하고
2. 수혜자에게 상대방의 법원비용이 부과되거나 또는 상대방의 변호사 수입료가 부과된 경우 이 사람은, 감액된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만 변상할 의무를 가지며

<p>Rechtsanwalts nur nach dem Teil des Streitwerts zu erstatten hat und</p> <p>3. der Rechtsanwalt der begünstigten Partei, soweit die außergerichtlichen Kosten dem Gegner auferlegt oder von ihm übernommen werden, seine Gebühren von dem Gegner nach dem für diesen geltenden Streitwert beitreiben kann.</p> <p>(4) Der Antrag nach Absatz 3 kann vor der Geschäftsstelle des Gerichts zur Niederschrift erklärt werden. Er ist vor der Verhandlung zur Hauptsache anzubringen. Danach ist er nur zulässig, wenn der angenommene oder festgesetzte Streitwert später durch das Gericht heraufgesetzt wird. Vor der Entscheidung über den Antrag ist der Gegner zu hören.</p> <p>§ 13 Abmahnung; Unterlassungsverpflichtung; Haftung</p> <p>(1) Die zur Geltendmachung eines Unterlassungsanspruchs Berechtigten sollen den Schuldner vor der Einleitung eines gerichtlichen Verfahrens abmahnen und ihm Gelegenheit geben, den Streit durch Abgabe einer mit einer angemessenen Vertragsstrafe bewehrten Unterlassungsverpflichtung beizulegen.</p> <p>(2) In der Abmahnung muss klar und verständlich angegeben werde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ame oder Firma des Abmahnenden sowie im Fall einer Vertretung zusätzlich Name oder Firma des Vertreters, 2. die Voraussetzungen der Anspruchsberechtigung nach § 8 Absatz 3, 3. ob und in welcher Höhe ein Aufwendungsersatzanspruch geltend gemacht wird und wie sich dieser berechnet, 4. die Rechtsverletzung unter Angabe der tatsächlichen Umstände, 5. in den Fällen des Absatzes 4, dass der Anspruch auf Aufwendungsersatz ausgeschlossen ist. <p>(3) Soweit die Abmahnung berechtigt ist und den Anforderungen des Absatzes 2 entspricht, kann der Abmahnende vom Abgemahnten Ersatz der erforderlichen Aufwendungen verlangen.</p>	<p>3. 재판 외의 비용이 상대방에게 부과되거나 부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의 감액을 받은 당사자의 변호사는 자기의 수수료를 상대방으로부 터 이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p> <p>(4)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법원에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당해 사건의 본안심리 개시 전에 행하여야 한다. 심리 개시 후에는, 추정 또는 확정 된 소송물 가액이 후에 법원에 의하여 증액 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 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13조 (경고; 중지 의무; 책임)</p> <p>(1) 중지청구권자는 재판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에 게 경고하여야 하며, 적절한 위약금으로 담보되는 중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기회 를 제공하여야 한다.</p> <p>(2) 경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고자의 이름 또는 상호. 대리인이 경고하는 경 우에는 그 대리인의 이름 또는 상호 2. 제8조 제3항에 따른 청구권의 조건 3. 비용상환 청구권의 행사여부, 비용상환 청구금 액, 산정방식 4. 권리침해와 그 실제상황 5. 제4항의 경우, 비용상환 청구의 예외 <p>(3) 경고가 정당하고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 경고자는 피경고자에게 필요한 비용에 대한 상 환을 청구할 수 있다.</p>
---	--

<p>(4) Der Anspruch auf Ersatz der erforderlichen Aufwendungen nach Absatz 3 ist für Anspruchsberechtigte nach § 8 Absatz 3 Nummer 1 ausgeschlossen be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m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 oder in Telemedien begangenen Verstößen gegen gesetzliche Informations- und Kennzeichnungspflichten oder 2. sonstigen Verstößen gegen die Verordnung (EU) 2016/679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7. April 2016 zum Schutz natürlicher Personen bei der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zum freien Datenverkehr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95/46/EG (Datenschutz-Grundverordnung) (ABl. L 119 vom 4.5.2016, S. 1; L 314 vom 22.11.2016, S. 72; L 127 vom 23.5.2018, S. 2) und das Bundesdatenschutzgesetz durch Unternehmen sowie gewerblich tätige Vereine, sofern sie in der Regel weniger als 250 Mitarbeiter beschäftigen. <p>(5) Soweit die Abmahnung unberechtigt ist oder nicht den Anforderungen des Absatzes 2 entspricht oder soweit entgegen Absatz 4 ein Anspruch auf Aufwendungsersatz geltend gemacht wird, hat der Abgemahnte gegen den Abmahnenden einen Anspruch auf Ersatz der für seine Rechtsverteidigung erforderlichen Aufwendungen. Der Anspruch nach Satz 1 ist beschränkt auf die Höhe des Aufwendungsersatzanspruchs, die der Abmahnende geltend macht. Bei einer unberechtigten Abmahnung ist der Anspruch nach Satz 1 ausgeschlossen, wenn die fehlende Berechtigung der Abmahnung für den Abmahnenden zum Zeitpunkt der Abmahnung nicht erkennbar war. Weitergehende Ersatzansprüche bleiben unberührt.</p> <p>§ 13a Vertragsstrafe</p> <p>(1) Bei der Festlegung einer angemessenen Vertragsstrafe nach § 13 Absatz 1 sind folgende Umstände zu berücksichtige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rt, Ausmaß und Folgen der Zuwiderhandlung, 2. Schuldhaftigkeit der Zuwiderhandlung und 	<p>(4)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의한 필요비용의 보상청구는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구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상거래 또는 텔레미디어에서 행한 법적 정보 및 표시의무 위반 2. 통상 250인 미만을 고용하는 회사 및 상업적으로 활동하는 협회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시 개인정보, 자유로운 정보유통, 유럽연합지침 95/46/EG (정보보호 기본규정)의 폐지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6/679 (관보 L119, 2016년 5월 4일, 1면; 관보 L314, 2016년 11월 22일, 72면; 관보 L 127, 2018년 5월 23일, 2면)」 및 「연방정보보호법」 위반 <p>(5) 경고가 부당하거나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4항에 반한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경고자는 경고자에게 권리방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른 청구는 경고자가 주장하는 비용상환 청구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부당한 경고를 할 당시 경고자가 그 경고의 부당성을 알지 못하였다면 제1문에 따른 청구는 할 수 없다. 추가 보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제13a조 (위약금)</p> <p>(1)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위약금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의 유형, 범위 및 결과 2.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및 과실의 경중(과실이
--	--

<p>bei schuldhafter Zuwiderhandlung die Schwere des Verschuldens.</p> <p>3. Größe, Marktstärke und Wettbewerbsfähigkeit des Abgemahnten sowie</p> <p>4. wirtschaftliches Interesse des Abgemahnten an erfolgten und zukünftigen Verstößen.</p> <p>(2) Die Vereinbarung einer Vertragsstrafe nach Absatz 1 ist für Anspruchsberechtigte nach § 8 Absatz 3 Nummer 1 bei einer erstmaligen Abmahnung bei Verstößen nach § 13 Absatz 4 ausgeschlossen, wenn der Abgemahnte in der Regel weniger als 100 Mitarbeiter beschäftigt.</p> <p>(3) Vertragsstrafen dürfen eine Höhe von 1 000 Euro nicht überschreiten, wenn die Zuwiderhandlung angesichts ihrer Art, ihres Ausmaßes und ihrer Folgen die Interessen von Verbrauchern, Mitbewerbern und sonstigen Marktteilnehmern in nur unerheblichem Maße beeinträchtigt und wenn der Abgemahnte in der Regel weniger als 100 Mitarbeiter beschäftigt.</p> <p>(4) Verspricht der Abgemahnte auf Verlangen des Abmahnenden eine unangemessen hohe Vertragsstrafe, schuldet er lediglich eine Vertragsstrafe in angemessener Höhe.</p> <p>(5) Ist lediglich eine Vertragsstrafe vereinbart, deren Höhe noch nicht beziffert wurde, kann der Abgemahnte bei Uneinigkeit über die Höhe auch ohne Zustimmung des Abmahnenden eine Einigungsstelle nach § 15 anrufen. Das Gleiche gilt, wenn der Abgemahnte nach Absatz 4 nur eine Vertragsstrafe in angemessener Höhe schuldet. Ist ein Verfahren vor der Einigungsstelle anhängig, so ist eine erst nach Anrufung der Einigungsstelle erhobene Klage nicht zulässig.</p> <p>§ 14 Sachliche und örtliche Zuständigkeit: Verordnungsermächtigung</p> <p>(1) Für alle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mit denen ein Anspruch auf Grund dieses Gesetzes geltend gemacht wird, sind die Landgerichte ausschließlich zuständig.</p>	<p>있는 위반행위의 경우)</p> <p>3. 피경고자의 규모, 시장 강점 및 경쟁력</p> <p>4. 과거 및 장래의 위반에 대한 피경고자의 경제적 이익</p> <p>(2) 통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피경고자의 경우, 제13조 제4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최초 경고 시,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구권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합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p> <p>(3) 위반행위가 그 유형, 범위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소비자, 경쟁자, 기타 시장참여자의 이익에 경미한 피해만을 주었거나 피경고자가 통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위약금이 1,000 유로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p> <p>(4) 피경고자가 경고자의 요청에 따라 부적절하게 높은 위약금을 약속한 경우, 피경고자는 적절한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p> <p>(5) 위약금 지불에 대한 합의만 있고 그 금액에 대한 합의가 아직 없는 경우,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는 피경고자는 경고자의 동의 없이 그 금액에 대해 제15조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피경고자가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재위원회 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 중재위원회 신청 후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p> <p>제14조 (사건 및 지역 관할권; 명령위임)</p> <p>(1) 이 법에 의거하여 청구가 제기된 모든 민사분쟁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갖는다.</p>
--	--

<p>(2) Für alle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mit denen ein Anspruch auf Grund dieses Gesetzes geltend gemacht wird, ist das Gericht zuständig, in dessen Bezirk der Beklagte seinen allgemeinen Gerichtsstand hat. Für alle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mit denen ein Anspruch auf Grund dieses Gesetzes geltend gemacht wird, ist außerdem das Gericht zuständig, in dessen Bezirk die Zuwiderhandlung begangen wurde. Satz 2 gilt nicht fü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Rechtsstreitigkeiten wegen Zuwiderhandlungen im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 oder in Telemedien oder 2. Rechtsstreitigkeiten, die von den nach § 8 Absatz 3 Nummer 2 bis 4 zur Geltendmachung eines Unterlassungsanspruchs Berechtigten geltend gemacht werden, es sei denn, der Beklagte hat im Inland keinen allgemeinen Gerichtsstand. <p>(3) Die Landesregierungen werden ermächtigt, durch Rechtsverordnung für die Bezirke mehrerer Landgerichte eines von ihnen als Gericht für Wettbewerbsstreitsachen zu bestimmen, wenn dies der Rechtspflege in Wettbewerbsstreitsachen dienlich ist. Die Landesregierungen können die Ermächtigung durch Rechtsverordnung auf die Landesjustizverwaltungen übertragen. Die Länder können außerdem durch Vereinbarung die den Gerichten eines Landes obliegenden Klagen nach Absatz 1 insgesamt oder teilweise dem zuständigen Gericht eines anderen Landes übertragen.</p> <p>§ 15 Einigungsstellen</p> <p>(1) Die Landesregierungen errichten bei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Einigungsstellen zur Beilegung von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in denen ein Anspruch auf Grund dieses Gesetzes geltend gemacht wird (Einigungsstellen).</p> <p>(2) Die Einigungsstellen sind mit einer vorsitzenden Person, die die Befähigung zum Richteramt nach dem Deutschen Richtergesetz hat, und beisitzenden Personen zu besetzen. Als</p>	<p>(2) 피고인의 일반 재판관할지에 있는 법원은 이 법에 근거하여 청구권을 주장하는 모든 민사분쟁을 관할한다.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의 법원은 그 외에 이 법에 근거하여 청구권을 주장하는 모든 민사분쟁을 관할한다.</p> <p>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문이 적용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상거래 또는 텔레미디어에 관한 위반행위로 인한 법적 분쟁 2. 제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중지청구권자가 제기한 법적 분쟁 <p>다만, 국내에 피고인의 일반 재판관할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3) 경쟁분쟁사건에 대한 사법 행정에 유용한 경우, 주(州)정부는 법령에 의하여 여러 지방법원 중 하나를 경쟁분쟁사건을 위한 법원으로 지정할 권한이 있다. 주정부는 법령으로 주법무행정청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각 주는 합의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주법원에 제기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의 관할법원으로 이전할 수 있다.</p> <p>제15조 (조정위원회)</p> <p>(1) 주 정부는 본법을 기본으로 제기되는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내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이하,「조정위원회」라고 한다).</p> <p>(2) 조정위원회는 독일 판사법에 따른 판사의 자격이 있는 의장과 복수의 배석자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위해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의뢰 한 경우, 같</p>
---	---

beisitzende Personen werden im Falle einer Anrufung durch eine nach § 8 Absatz 3 Nummer 3 zur Geltendmachung eines Unterlassungsanspruchs berechnete qualifizierte Einrichtung Unternehmer und Verbraucher in gleicher Anzahl tätig, sonst mindestens zwei sachverständige Unternehmer. Die vorsitzende Person soll auf dem Gebiet des Wettbewerbsrechts erfahren sein. Die beisitzenden Personen werden von der vorsitzenden Person für den jeweiligen Streitfall aus einer alljährlich für das Kalenderjahr aufzustellenden Liste berufen. Die Berufung soll im Einvernehmen mit den Parteien erfolgen. Für die Ausschließung und Ablehnung von Mitgliedern der Einigungsstelle sind die §§ 41 bis 43 und § 44 Absatz 2 bis 4 der Zivilprozessordnung entsprechend anzuwenden. Über das Ablehnungsgesuch entscheidet das für den Sitz der Einigungsstelle zuständige Landgericht (Kammer für Handelssachen oder, falls es an einer solchen fehlt, Zivilkammer).

(3) Die Einigungsstellen können bei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in denen ein Anspruch auf Grund dieses Gesetzes geltend gemacht wird, angerufen werden, wenn der Gegner zustimmt. Soweit die geschäftlichen Handlungen Verbraucher betreffen, können die Einigungsstellen von jeder Partei zu einer Aussprache mit dem Gegner über den Streitfall angerufen werden; einer Zustimmung des Gegners bedarf es nicht.

(4) Für die Zuständigkeit der Einigungsstellen ist § 14 entsprechend anzuwenden.

(5) Die der Einigungsstelle vorsitzende Person kann das persönliche Erscheinen der Parteien anordnen. Gegen eine unentschuldig ausbleibende Partei kann die Einigungsstelle ein Ordnungsgeld festsetzen. Gegen die Anordnung des persönlichen Erscheinens und gegen die Festsetzung des Ordnungsgeldes findet die sofortige Beschwerde nach den Vorschriften der Zivilprozessordnung an das für den Sitz der Einigungsstelle zuständige Landgericht (Kammer für Handelssachen

은 수의 기업가 및 소비자가 배척자가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적어도 두 명의 전문 기업가가 배척자가 된다. 의장은 경쟁법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배척자들은 매년 해당 연도에 분쟁사건마다 의장이 임명한다. 임명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져야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 배제 및 거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서 제43조, 제44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거부 신청은 조정위원회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에 의해 결정된다(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가 없는 경우 민사부).

(3) 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동의하면 동법에 따라 청구가 이루어지는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그 비즈니스 거래가 소비자 와 관련 되는 것인 경우,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에 의해 분쟁의 상대방과 논의하기 위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4) 조정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제14조가 준용된다.

(5) 조정위원회의 의장은 당사자들의 출두를 명할 수 있다. 무단결석한 당사자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출두명령 및 벌금부과에 대해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조정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즉시 항고 할 수 있다(상공회의소 또는 없는 경우에 민사부).

<p>oder, falls es an einer solchen fehlt, Zivilkammer) statt.</p> <p>(6) Die Einigungsstelle hat einen gütlichen Ausgleich anzustreben. Sie kann den Parteien einen schriftlichen, mit Gründen versehenen Einigungsvorschlag machen. Der Einigungsvorschlag und seine Begründung dürfen nur mit Zustimmung der Parteien veröffentlicht werden.</p> <p>(7) Kommt ein Vergleich zustande, so muss er in einem besonderen Schriftstück niedergelegt und unter Angabe des Tages seines Zustandekommens von den Mitgliedern der Einigungsstelle, welche in der Verhandlung mitgewirkt haben, sowie von den Parteien unterschrieben werden. Aus einem vor der Einigungsstelle geschlossenen Vergleich findet die Zwangsvollstreckung statt; § 797a der Zivilprozessordnung ist entsprechend anzuwenden.</p> <p>(8) Die Einigungsstelle kann, wenn sie den geltend gemachten Anspruch von vornherein für unbegründet oder sich selbst für unzuständig erachtet, die Einleitung von Einigungsverhandlungen ablehnen.</p> <p>(9) Durch die Anrufung der Einigungsstelle wird die Verjährung in gleicher Weise wie durch Klageerhebung gehemmt. Kommt ein Vergleich nicht zustande, so ist der Zeitpunkt, zu dem das Verfahren beendet ist, von der Einigungsstelle festzustellen. Die vorsitzende Person hat dies den Parteien mitzuteilen.</p> <p>(10) Ist ein Rechtsstreit der in Absatz 3 Satz 2 bezeichneten Art ohne vorherige Anrufung der Einigungsstelle anhängig gemacht worden, so kann das Gericht auf Antrag den Parteien unter Anberaumung eines neuen Termins aufgeben, vor diesem Termin die Einigungsstelle zur Herbeiführung eines gütlichen Ausgleichs anzurufen. In dem Verfahren über den Antrag auf Erlass einer einstweiligen Verfügung ist diese Anordnung nur zulässig, wenn der Gegner zustimmt. Absatz 8 ist nicht anzuwenden. Ist ein Verfahren vor der Einigungsstelle anhängig, so ist eine</p>	<p>(6) 조정위원회는 화해적인 조정을 추구해야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와의 서면으로 합리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 화해의 제안 및 그 근거는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공표할 수 있다.</p> <p>(7) 합의에 도달하면, 협상에 참여한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분쟁당사자에 의해 합의 된 날짜를 표시하고 별도의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고, 서명이 되어야 한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된 화해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 797a조를 준용한다.</p> <p>(8) 조정위원회는 주장되고 있는 청구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관할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교섭의 착수를 거부할 수 있다.</p> <p>(9) 조정위원회에 대한 의원에 의해 시효기간은 제소의 경우와 같게 중단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절차가 종료 되는 시간은 조정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의장은 이를 당사자들에게 알려야한다.</p> <p>(10) 제3항 제2문에 나오는 종류의 분쟁에 대해 조정위원회의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이전에 화해적인 조정에 도달하도록 요청하여, 당사자들 간의 새로운 날짜를 선정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의 절차 중인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 명령이 인정된다. 이 경우 제8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이 조정위원회에 보류 중인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기 전에 피고가 주장한 주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p>
---	---

<p>erst nach Anrufung der Einigungsstelle erhobene Klage des Antragsgegners auf Feststellung, dass der geltend gemachte Anspruch nicht bestehe, nicht zulässig.</p> <p>(11) Die Landesregierungen werden ermächtigt, durch Rechtsverordnung die zur Durchführung der vorstehenden Bestimmungen und zur Regelung des Verfahrens vor den Einigungsstellen erforderlichen Vorschriften zu erlassen, insbesondere über die Aufsicht über die Einigungsstellen, über ihre Besetzung unter angemessener Beteiligung der nicht den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angehörenden Unternehmern (§ 2 Absatz 2 bis 6 des Gesetzes zur vorläufigen Regelung des Rechts d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701-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und über die Vollstreckung von Ordnungsgeldern sowie Bestimmungen über die Erhebung von Auslagen durch die Einigungsstelle zu treffen. Bei der Besetzung der Einigungsstellen sind die Vorschläge der für ein Bundesland errichteten, mit öffentlichen Mitteln geförderten Verbraucherzentralen zur Bestimmung der in Absatz 2 Satz 2 genannten Verbraucher zu berücksichtigen.</p> <p>(12) Abweichend von Absatz 2 Satz 1 kann in den Länder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und Thüringen die Einigungsstelle auch mit einem Rechtskundigen als Vorsitzendem besetzt werden, der die Befähigung zum Berufsrichter nach dem Re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worben hat.</p> <p>§ 15a Überleitungsvorschrift zum Gesetz zur Stärkung des fairen Wettbewerbs</p> <p>(1) § 8 Absatz 3 Nummer 2 ist nicht anzuwenden auf Verfahren, die am 1. September 2021 bereits rechtshängig sind.</p> <p>(2) Die §§ 13 und 13a Absatz 2 und 3 sind nicht anzuwenden auf Abmahnungen, die vor dem 2. Dezember 2020 bereits zugegangen sind.</p>	<p>(11) 주 정부는 상기 조항의 이행과 조정위원회의 이전의 절차의 해결에 필요한 조항을 채택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의해 특히, 비 상공인의 적절한 참여(연방 공보 제 III 부, 701-1 항에 게시된 조정된 버전의 상공 회의소의 잠정 규정에 관한 법률 2, 2, 6)와 함께 제재 집행 및 경비 징수 등에 필요한 규정 공포 등 조정위원회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원 설정에 관해 제 2항 제2문에서 언급된 소비자를 결정하기 위해 주 전체를 대상으로 설치되어 공적 자금을 의해 지원되고 있는 소비자 센터의 제안을 고려해야 한다.</p> <p>(12) 제2항 제1문과는 달리,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메크렌부르크 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Anhalt)과 튀링겐(Thüringen) 주에서는 조정위원회는 구 동독법에 따라서 취득한 직업판사의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좌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p> <p>제15a조 (공정경쟁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p> <p>(1) 제8조 제3항 제2호는 2021년 9월 1일에 이미 계류 중인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2) 제13조 및 제13a조 제2항 및 제3항은 2020년 12월 2일 이전에 접수된 통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	--

Kapitel 4 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 16 Strafbare Werbung

(1) Wer in der Absicht, den Anschein eines besonders günstigen Angebots hervorzurufen, in öffentlichen Bekanntmachungen oder in Mitteilungen, die für einen größeren Kreis von Personen bestimmt sind, durch unwahre Angaben irreführend wirb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Wer es im geschäftlichen Verkehr unternimmt, Verbraucher zur Abnahme von Waren, Dienstleistungen oder Rechten durch das Versprechen zu veranlassen, sie würden entweder vom Veranstalter selbst oder von einem Dritten besondere Vorteile erlangen, wenn sie andere zum Abschluss gleichartiger Geschäfte veranlassen, die ihrerseits nach der Art dieser Werbung derartige Vorteile für eine entsprechende Werbung weiterer Abnehmer erlangen soll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17 bis 19 (weggefallen)

§ 20 Bußgeldvorschriften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1. entgegen § 7 Absatz 1 in Verbindung mit § 7 Absatz 2 Nummer 2 oder 3 mit einem Telefonanruf oder unter Verwendung einer automatischen Anrufmaschine gegenüber einem Verbraucher ohne dessen vorherige ausdrückliche Einwilligung wirbt,
2. entgegen § 8b Absatz 3 in Verbindung mit § 4b Absatz 1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auch in Verbindung mit einer Rechtsverordnung nach § 4d Nummer 2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einen dort genannten Bericht nicht, nicht richtig, nicht vollständig oder nicht rechtzeitig erstattet oder
3. einer Rechtsverordnung nach § 8b Absatz 3 in Verbindung mit § 4d Nummer 1 des Unterlassungsklagengesetzes oder einer vollziehbaren Anordnung auf Grund einer solchen

제4장 형사 처벌 규정과 과태료

제16조 (형사처벌되는 광고)

(1) 특별히 유익한 판매라는 외관을 발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지 또는 넓은 범위의 사람을 특정하여 통지하면서 허위표시를 통해 오인혼동을 야기하는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 소비자에 대해 새로운 구입자에게 동일한 광고를 시키는 것으로 이 광고의 방식에 따라서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동일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타인을 유도하면 기획자 자신 또는 제삼자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약정으로 영업상 거래에서 상품, 서비스 또는 권리를 구입시키려고 한 사람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과태료 규정)

(1) 고의 또는 과실로 제7조 제1항 중 다음의 행위에 연관된 경우 질서위반행위로 간주한다.

1. 제7조 제2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와 함께 제7조 제1항에 반하여 소비자의 사전 명시적 동의 없이 전화 통화 또는 자동 호출기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2. 금지 명령법의 제4b조 제1항과 관련해 제8b조 제3항에 반하여, 금지 명령법의 제4d조 제2항에 따른 법령과 관련해 그 안에 언급된 보고서가 아닌, 적절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거나, 적시에 상환되지 않거나, 또는.

3. 금지조치법 제4d조 제1항과 관련하여 특정 범죄에 대한 벌금과 관련하여 이 조항을 참조하는 한, 제8b조 제3항에 따른 조례와 조례에 근거한 집행 가능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p>Rechtsverordnung zuwiderhandelt, soweit die Rechtsverordnung für einen bestimmten Tatbestand auf diese Bußgeldvorschrift verweist.</p> <p>(2) Die Ordnungswidrigkeit kan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ummer 1 mit einer Geldbuße bis zu dreihunderttausend Euro, in den übrigen Fällen mit einer Geldbuße bis zu hunderttausend Euro geahndet werden.</p> <p>(3) Verwaltungsbehörde im Sinne des § 36 Absatz 1 Nummer 1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ist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ummer 1 die Bundesnetzagentur für Elektrizität, Gas, Telekommunikation, Post und Eisenbahnen, in den übrigen Fällen das Bundesamt für Justiz.</p> <p>Anhang (zu § 3 Absatz 3) (Fundstelle: BGBl. I 2010, 262 - 263) Unzulässige geschäftliche Handlungen im Sinne des § 3 Absatz 3 sind</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ie unwahre Angabe eines Unternehmers, zu den Unterzeichnern eines Verhaltenskodexes zu gehören; 2. die Verwendung von Gütezeichen, Qualitätskennzeichen oder Ähnlichem ohne die erforderliche Genehmigung; 3. die unwahre Angabe, ein Verhaltenskodex sei von einer öffentlichen oder anderen Stelle gebilligt; 4. die unwahre Angabe, ein Unternehmer, eine von ihm vorgenommene geschäftliche Handlung oder eine Ware oder Dienstleistung sei von einer öffentlichen oder privaten Stelle bestätigt, gebilligt oder genehmigt worden, oder die unwahre Angabe, den Bedingungen für die Bestätigung, Billigung oder Genehmigung werde entsprochen; 5. Waren- oder Dienstleistungsangebote im Sinne des § 5a Absatz 3 zu einem bestimmten Preis, wenn der Unternehmer nicht darüber aufklärt, dass er hinreichende Gründe für die Annahme hat, er werde nicht in der Lage sein, diese oder gleichartige Waren oder Dienstleistungen für einen angemessenen Zeitraum in angemessener Menge zum genannten Preis bereitzustellen oder 	<p>(2) 질서 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제1항 제1호의 경우 최대 30만 유로, 이외의 경우는 최대 10만 유로까지 부과할 수 있다.</p> <p>(3)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제36조 제1항 제1호상 행정관청은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 für Elektrizität, Gas, Telekommunikation, Post und Eisenbahnen)을 의미하고 그밖의 다른 모든 경우에는 연방법원이 행정관청 역할을 한다.</p> <p>부속서 (제3조 제3항에 대한) 제3조 제3항에서 금지되는 거래행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동규약(Verhaltenskodex)에 서명한 자에 속하는 사업자라고 하는 부당한 표시 2. 필요로 하는 승인(Geheimigung) 없이 품질표시, 품질 특성 등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3. 행동규약이 공공기관 기타 기관에 의해 승인받았다고 하는 부당한 표시 4. 사업자, 사업자에 의해 행하여진 영업행위,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공기관 또는 사적 기관에 의해 증명, 인가, 승인받았다고 하는 허위표시, 또는 증명, 인가 또는 승인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켰다고 하는 부당한 표시 5.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동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량을 표시한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제5a조 제3항에서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저장품의 준비기간이 2일 미만인 경우 기업인에게 타당성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	---

<p>bereitstellen zu lassen (Lockangebote). Ist die Bevorratung kürzer als zwei Tage, obliegt es dem Unternehmer, die Angemessenheit nachzuweisen;</p> <p>6. Waren- oder Dienstleistungsangebote im Sinne des § 5a Absatz 3 zu einem bestimmten Preis, wenn der Unternehmer sodann in der Absicht, stattdessen eine andere Ware oder Dienstleistung abzusetzen, eine fehlerhafte Ausführung der Ware oder Dienstleistung vorführt oder sich weigert zu zeigen, was er beworben hat, oder sich weigert, Bestellungen dafür anzunehmen oder die beworbene Leistung innerhalb einer vertretbaren Zeit zu erbringen;</p> <p>7. die unwahre Angabe, bestimmte Waren oder Dienstleistungen seien allgemein oder zu bestimmten Bedingungen nur für einen sehr begrenzten Zeitraum verfügbar, um den Verbraucher zu einer sofortigen geschäftlichen Entscheidung zu veranlassen, ohne dass dieser Zeit und Gelegenheit hat, sich auf Grund von Informationen zu entscheiden;</p> <p>8. Kundendienstleistungen in einer anderen Sprache als derjenigen, in der die Verhandlungen vor dem Abschluss des Geschäfts geführt worden sind, wenn die ursprünglich verwendete Sprache nicht Amtssprache des Mitgliedstaats ist, in dem der Unternehmer niedergelassen ist; dies gilt nicht, soweit Verbraucher vor dem Abschluss des Geschäfts darüber aufgeklärt werden, dass diese Leistungen in einer anderen als der ursprünglich verwendeten Sprache erbracht werden;</p> <p>9. die unwahre Angabe oder das Erwecken des unzutreffenden Eindrucks, eine Ware oder Dienstleistung sei verkehrsfähig;</p> <p>10. die unwahre Angabe oder das Erwecken des unzutreffenden Eindrucks, gesetzlich bestehende Rechte stellten eine Besonderheit des Angebots dar;</p> <p>11. der vom Unternehmer finanzierte Einsatz redaktioneller Inhalte zu Zwecken der Verkaufsförderung, ohne dass sich dieser Zusammenhang aus dem Inhalt oder aus der Art der optischen oder akustischen Darstellung eindeutig ergibt (als Information</p>	<p>6. 사업자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의도로 실제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품질에 결함이 있다고 표시하거나 또는 자신의 광고를 증명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주문의 수용을 거부하거나, 광고된 급부를 적절한 기간 내에 수행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에 제5a조 제3항33)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특정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p> <p>7. 주어진 정보에 따라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즉시 거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조건 하에 아주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부당한 표시</p> <p>8. 계약체결 전 행위를 한 경우의 언어로서 이러한 최초의 언어가 사업자의 영업 소재지가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식 언어가 아닌 경우에, 최초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제공되는 고객 서비스. 다만 이러한 급부가 최초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행하여짐을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하였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9. 상품 또는 서비스가 유통할 수 있다고 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p> <p>10.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가 특별하게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표시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부절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p> <p>11. 상호관계가 내용적으로나, 또는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표현 방법으로 명확하지 않고(정보로 위장된 허위광고),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사업자가 편집 내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한 경우에 보증금</p>
---	---

<p>getarnte Werbung);</p> <p>12. unwahre Angaben über Art und Ausmaß einer Gefahr für die persönliche Sicherheit des Verbrauchers oder seiner Familie für den Fall, dass er die angebotene Ware nicht erwirbt oder die angebotene Dienstleistung nicht in Anspruch nimmt;</p> <p>13. Werbung für eine Ware oder Dienstleistung, die der Ware oder Dienstleistung eines bestimmten Herstellers ähnlich ist, wenn dies in der Absicht geschieht, über die betriebliche Herkunft der beworbenen Ware oder Dienstleistung zu täuschen;</p> <p>14. die Einführung, der Betrieb oder die Förderung eines Systems zur Verkaufsförderung, bei dem vom Verbraucher ein finanzieller Beitrag für die Möglichkeit verlangt wird, allein oder hauptsächlich durch die Einführung weiterer Teilnehmer in das System eine Vergütung zu erlangen (Schneeball- oder Pyramidensystem);</p> <p>15. die unwahre Angabe, der Unternehmer werde demnächst sein Geschäft aufgeben oder seine Geschäftsräume verlegen;</p> <p>16. die Angabe, durch eine bestimmte Ware oder Dienstleistung ließen sich die Gewinnchancen bei einem Glücksspiel erhöhen;</p> <p>17. die unwahre Angabe oder das Erwecken des unzutreffenden Eindrucks, der Verbraucher habe bereits einen Preis gewonnen oder werde ihn gewinnen oder werde durch eine bestimmte Handlung einen Preis gewinnen oder einen sonstigen Vorteil erlangen, wenn es einen solchen Preis oder Vorteil tatsächlich nicht gibt, oder wenn jedenfalls die Möglichkeit, einen Preis oder sonstigen Vorteil zu erlangen, von der Zahlung eines Geldbetrags oder der Übernahme von Kosten abhängig gemacht wird;</p> <p>18. die unwahre Angabe, eine Ware oder Dienstleistung könne Krankheiten, Funktionsstörungen oder Missbildungen heilen;</p> <p>19. eine unwahre Angabe über die Marktbedingungen oder Bezugsquellen, um den Verbraucher dazu zu bewegen, eine Ware oder Dienstleistung zu weniger günstigen Bedingungen als den allgemeinen</p>	<p>12. 소비자가 제공된 상품을 수령하지 않거나 제공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 또는 그의 가족의 개인적 안전성에 대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관한 부당한 표시</p> <p>13. 광고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영업상 출처를 기망할 목적으로 경쟁업자가 이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p> <p>14. 전적으로 또는 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시스템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보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재정적 기부금을 요구하는 시스템의 경우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이 시스템에의 가입, 영업 또는 이를 장려하는 행위(다단계 판매방식)</p> <p>15. 사업자가 곧 자신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그의 영업소를 이전한다고 하는 부당한 표시</p> <p>16.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의해 도박에서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표시</p> <p>17. 상금 또는 이익이 실제로 없거나, 또는 어떠한 경우이던지 상금 또는 이익을 획득할 가능성이 현금 지불 또는 비용 부담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가 이미 상금을 획득하였거나 획득할 예정인 경우, 또는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금을 획득하거나 상술한 이익을 획득할 예정이라는 부당한 표시 또는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p> <p>18. 상품 또는 서비스가 질환, 기능장애 또는 기형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부당한 표시</p> <p>19. 일반적인 시장조건 보다 약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요구하도록 소비자를 움직이기 위하여 시장조건 또는 구입 기회에 관해 표시하는 부당한 표시</p>
--	--

<p>Marktbedingungen abzunehmen oder in Anspruch zu nehmen;</p> <p>20. das Angebot eines Wettbewerbs oder Preisausschreibens, wenn weder die in Aussicht gestellten Preise noch ein angemessenes Äquivalent vergeben werden;</p> <p>21. das Angebot einer Ware oder Dienstleistung als „gratis“, „umsonst“, „kostenfrei“ oder dergleichen, wenn hierfür gleichwohl Kosten zu tragen sind; dies gilt nicht für Kosten, die im Zusammenhang mit dem Eingehen auf das Waren- oder Dienstleistungsangebot oder für die Abholung oder Lieferung der Ware oder die Inanspruchnahme der Dienstleistung unvermeidbar sind;</p> <p>22. die Übermittlung von Werbematerial unter Beifügung einer Zahlungsaufforderung, wenn damit der unzutreffende Eindruck vermittelt wird, die beworbene Ware oder Dienstleistung sei bereits bestellt;</p> <p>23. die unwahre Angabe oder das Erwecken des unzutreffenden Eindrucks, der Unternehmer sei Verbraucher oder nicht für Zwecke seines Geschäfts, Handels, Gewerbes oder Berufs tätig;</p> <p>24. die unwahre Angabe oder das Erwecken des unzutreffenden Eindrucks, es sei im Zusammenhang mit Waren oder Dienstleistungen in einem anderen Mitgliedstaat der Europäischen Union als dem des Warenverkaufs oder der Dienstleistung ein Kundendienst verfügbar;</p> <p>25. das Erwecken des Eindrucks, der Verbraucher könne bestimmte Räumlichkeiten nicht ohne vorherigen Vertragsabschluss verlassen;</p> <p>26. bei persönlichem Aufsuchen in der Wohnung die Nichtbeachtung einer Aufforderung des Besuchten, diese zu verlassen oder nicht zu ihr zurückzukehren, es sein denn, der Besuch ist zur rechtmäßigen Durchsetzung einer vertraglichen Verpflichtung gerechtfertigt;</p> <p>27. Maßnahmen, durch die der Verbraucher von der Durchsetzung seiner vertraglichen Rechte aus einem Versicherungsverhältnis dadurch abgehalten werden soll, dass von ihm bei der Geltendmachung seines Anspruchs die Vorlage von Unterlagen verlangt wird, die zum Nachweis dieses</p>	<p>20. 예정된 보상 또는 이와 유사한 적절한 보상도 없이 행하여지는 경연대회 또는 현상광고</p> <p>21.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무료, 무상 또는 공짜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다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송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거나, 상품 인수 또는 배달,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2. 광고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이미 주문 받았다는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 지불청구서에 첨부된 해당 광고품의 송달</p> <p>23. 사업자가 자신이 소비자이며, 자신의 영업, 상업, 공업 또는 직업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표시 또는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p> <p>24. 상품 또는 서비스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과 같은 고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부당한 표시 또는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p> <p>25. 사전 계약체결 없이는 소비자가 특정한 공간을 떠날 수 없도록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p> <p>26. 주거를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방문 받은 자로부터 퇴거 요구 또는 다시 오지 말라는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다만, 해당 방문이 계약상 의무의 합리적인 이행을 위해 정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7. 소비자가 자신의 청구권 행사를 할 때 청구권 입증에 불필요한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와 같은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체계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에 의한 권리의 수행을 단념하도록 하는 조치</p>
--	---

<p>Anspruchs nicht erforderlich sind, oder dass Schreiben zur Geltendmachung eines solchen Anspruchs systematisch nicht beantwortet werden;</p> <p>28. die in eine Werbung einbezogene unmittelbare Aufforderung an Kinder, selbst die beworbene Ware zu erwerben oder die beworbene Dienstleistung in Anspruch zu nehmen oder ihre Eltern oder andere Erwachsene dazu zu veranlassen;</p> <p>29. die Aufforderung zur Bezahlung nicht bestellter, aber gelieferter Waren oder erbrachter Dienstleistungen oder eine Aufforderung zur Rücksendung oder Aufbewahrung nicht bestellter Sachen und</p> <p>30. die ausdrückliche Angabe, dass der Arbeitsplatz oder Lebensunterhalt des Unternehmers gefährdet sei, wenn der Verbraucher die Ware oder Dienstleistung nicht abnehme.</p>	<p>28. 광고에서 광고되었던 상품을 스스로 획득하거나, 광고되었던 서비스를 청구하거나, 또는 이에 대하여 부모 등 성인에게 유발된 것을 자녀들에게 직접 요구하는 경우</p> <p>29. 주문하지 않았는데 배송된 상품 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 요구, 또는 주문하지 않은 물품의 반품 또는 보관에 대한 요구</p> <p>30.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의 직장 또는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 명시적 표시</p>
--	--

미 국

원 본 출처: 국회도서관, US CODE
번역본 출처: 국회도서관, 자체번역

경제스파이 처벌법(EEA)

국가	미국
원법률명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제정	1996.10.11. PL 104-294
개정	2016.05.11. PL 114-153

이 번역문은 외국 법률의 해석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p>§1831. Economic espionage</p> <p>(a) In General.-Whoever, intending or knowing that the offense will benefit any foreign government, foreign instrumentality, or foreign agent, knowingly-</p> <p>(1) steals, or without authorization appropriates, takes, carries away, or conceals, or by fraud, artifice, or deception obtains a trade secret;</p> <p>(2) without authorization copies, duplicates, sketches, draws, photographs, downloads, uploads, alters, destroys, photocopies, replicates, transmits, delivers, sends, mails, communicates, or conveys a trade secret;</p> <p>(3) receives, buys, or possesses a trade secret, knowing the same to have been stolen or appropriated, obtained, or converted without authorization;</p> <p>(4) attempts to commit any offense described in any of paragraphs (1) through (3); or</p> <p>(5) conspires with one or more other persons to commit any offense described in any of paragraphs (1) through (3), and one or more of such persons do any act to effect the object of the conspiracy, shall,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be fined not more than \$5,000,000 or imprisoned not more than 15 years, or both.</p> <p>(b) Organizations.-Any organization that commits any offense described in subsection (a)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the greater of \$10,000,000 or 3 times the value of the stolen trade secret to the organization, including expenses for research and design and other costs of reproducing the trade secret that the organization has thereby avoided.</p>	<p>제1831조 경제스파이</p> <p>(a) 총칙 - 외국의 정부, 기관 또는 대리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다음을 행하는 자는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둘을 병과한다 -</p> <p>(1) 통상기밀을 절취하거나, 허가 없이 횡령, 취득, 운반 또는 은닉하거나, 부정수단, 속임수 또는 사기의 방법으로 취득함;</p> <p>(2) 통상기밀을 허가 없이 복제, 모사, 스케치, 사생, 사진촬영, 다운로드, 업로드, 변경, 파기, 복사, 복제, 전송, 전달, 송신, 우송, 통신 또는 호송함;</p> <p>(3) 어떤 통상기밀이 절취되거나 허가 없이 횡령, 취득 또는 부정사용된 것임을 알면서 해당 기밀을 입수, 구매 또는 소유함;</p> <p>(4) (1)내지 (3)호에 언급된 행위를 시도함; 또는</p> <p>(5) 1인 이상과 더불어 (1)내지 (3)호에 언급된 행위를 공모하고, 해당 공모자들이 공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함.</p> <p>(b) 단체 - (a)항에 언급된 범죄를 행하는 단체는 1천만달러 또는 연구 및 설계 비용과 영업비밀을 복제하여 해당 단체가 회피한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영업비밀의 절도로써 그 단체가 얻은 가치의 3배 중 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832. Theft of trade secrets</p> <p>(a) Whoever, with intent to convert a trade</p>	<p>제1832조 통상기밀 절취</p> <p>(a) 국내외 상업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p>

<p>secret, that is related to a product or service used in or intended for use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to the economic benefit of anyone other than the owner thereof, and intending or knowing that the offense will, injure any owner of that trade secret, knowingly-</p> <p>(1) steals, or without authorization appropriates, takes, carries away, or conceals, or by fraud, artifice, or deception obtains such information;</p> <p>(2) without authorization copies, duplicates, sketches, draws, photographs, downloads, uploads, alters, destroys, photocopies, replicates, transmits, delivers, sends, mails, communicates, or conveys such information;</p> <p>(3) receives, buys, or possesses such information, knowing the same to have been stolen or appropriated, obtained, or converted without authorization;</p> <p>(4) attempts to commit any offense d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or</p> <p>(5) conspires with one or more other persons to commit any offense d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and one or more of such persons do any act to effect the object of the conspiracy, shall,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10 years, or both.</p> <p>(b) Any organization that commits any offense described in subsection (a)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the greater of \$5,000,000 or 3 times the value of the stolen trade secret to the organization, including expenses for research and design and other costs of reproducing the trade secret that the organization has thereby avoided.</p>	<p>의도된 상품 서비스와 관계되거나 그것에 포함된 통상기밀을 그것의 소유주 이외의 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정사용할 목적에서,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해당 기밀의 소유주에게 손해를 끼칠 것임을 인지하고 또한 그러한 의도에서 다음을 행하는 자는 이 편에서 정하는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둘을 병과한다 -</p> <p>(1) 해당 정보를 절취하거나, 허가 없이 횡령, 취득, 운반 또는 은닉하거나, 부정수단, 속임수 또는 사기의 방법으로 취득함;</p> <p>(2) 해당 정보를 허가 없이 복제, 모사, 스케치, 사생, 사진촬영, 다운로드, 업로드, 변경, 파괴, 복사, 복제, 전송, 전달, 송신, 우송, 통신 또는 호송함;</p> <p>(3) 해당 정보가 절취되거나 허가 없이 횡령, 취득 또는 부정 사용된 것임을 알면서 해당 기밀을 입수, 구매 또는 소유함;</p> <p>(4) (1)내지 (3)호에 언급된 행위를 시도함; 또는</p> <p>(5) 1인 이상과 더불어 (1)내지 (3)호에 언급된 행위를 공모하고, 해당 공모자들이 공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함.</p> <p>(b) (a)항에 언급된 범죄를 행하는 단체는 5백만달러 또는 연구 및 설계 비용과 영업비밀을 복제하여 해당 단체가 회피한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영업비밀의 절도로써 그 단체가 얻은 가치의 3배 중 큰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833. Exceptions to prohibitions</p>	<p>제1833조 금지의 예외</p>

<p>(a) In General.-This chapter does not prohibit or create a private right of action for-</p> <p>(1) any otherwise lawful activity conducted by a governmental entity of the United States, a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or</p> <p>(2) the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b).</p> <p>(b) Immunity From Liability for Confidential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o the Government or in a Court Filing.-</p> <p>(1) Immunity.-An individual shall not be held criminally or civilly liable under any Federal or State trade secret law for the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at-</p> <p>(A) is made-</p> <p>(i) in confidence to a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official,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r to an attorney; and</p> <p>(ii) solely for the purpose of reporting or investigating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or</p> <p>(B) is made in a complaint or other document filed in a lawsuit or other proceeding, if such filing is made under seal.</p> <p>(2) Use of trade secret information in anti-retaliation lawsuit.-An individual who files a lawsuit for retaliation by an employer for reporting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may disclose the trade secret to the attorney of the individual and use the trade secret information in the court proceeding, if the individual-</p> <p>(A) files any document containing the trade secret under seal; and</p> <p>(B) does not disclose the trade secret, except pursuant to court order.</p>	<p>(a) 일반규정 - 이 법은 다음을 금지 또는 개인 소권을 성립하지 아니한다:</p> <p>(1)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주의 하부 행정구역 기관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또는</p> <p>(2) 제 (b)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공개</p> <p>(b) 정부 또는 법원에 영업비밀을 공개한 것에 대한 면책 -</p> <p>(1) 면책 - 개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의 공개에 대하여 영업비밀 관련 연방법이나 주(州)법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p> <p>(A) 다음과 같이 공개된 영업비밀 -</p> <p>(i) 직간접적으로 연방·주(州)·지방정부 공무원 또는 검사에게 비밀로 공개하였다.</p> <p>(ii) 오로지 의심되는 법률 위반의 보고나 조사를 위하여 공개하였다.</p> <p>(B) 소송이나 다른 절차에서 제출된 소장이나 기타 문서를 통하여 공개된 영업비밀. 단, 봉인 후에 제출이 이루어졌다.</p> <p>(2) 반보복(反報復) 소송에서 영업비밀 정보의 사용 - 어떠한 개인이 다음 각 목과 같이 행위한다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고발에 따른 고용주의 보복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개인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영업비밀을 공개하고 법원 절차에서 영업비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p> <p>(A) 영업비밀을 포함한 서류를 봉인하여 제출한다.</p> <p>(B) 법원 명령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아니한다.</p>
--	--

<p>(3) Notice.-</p> <p>(A) In general.-An employer shall provide notice of the immunity set forth in this subsection in any contract or agreement with an employee that governs the use of a trade secret or other confidential information.</p> <p>(B) Policy document.-An employer shall be considered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notice requirement in subparagraph (A) if the employer provides a cross-reference to a policy document provided to the employee that sets forth the employer's reporting policy for a suspected violation of law.</p> <p>(C) Non-compliance.-If an employer does not comply with the notice requirement in subparagraph (A), the employer may not be awarded exemplary damages or attorney fees under subparagraph (C) or (D) of section 1836(b)(3) in an action against an employee to whom notice was not provided.</p> <p>(D) Applicability.-This paragraph shall apply to contracts and agreements that are entered into or updated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subsection.</p> <p>(4) Employee defined.-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employee" includes any individual performing work as a contractor or consultant for an employer.</p> <p>(5) Rule of construction.-Except as expressly provided for under this subsection, nothing in this sub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authorize, or limit liability for, an act that is otherwise prohibited by law, such as the unlawful access of material by unauthorized means.</p> <p>§1834. Criminal forfeiture</p> <p>Forfeiture, destruction, and restitution relating to this chapter shall be subject to</p>	<p>(3) 고지 -</p> <p>(A) 일반 규정 - 고용주는 영업비밀이나 기타 기밀 정보의 사용을 규율하는 피용인과의 모든 계약이나 합의에서 이항에 규정된 면책을 고지한다.</p> <p>(B) 정책 문서 - 고용주가 교차 참조를 위하여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용주 정책 보고서를 피용인에게 제공한다. (A)목의 고지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p> <p>(C) 불이행 - 고용주는 (A)목의 고지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면, 고지를 받지 아니한 피용인에 대한 소송에서 제1836조 제(b)항 제(3)호 (C)목이나 (D)목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변호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다.</p> <p>(D) 적용 가능성 - 이 호는 이 항의 제정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과 합의에 적용된다.</p> <p>(4) 피용인의 정의 - 이 항에서, “피용인”에는 고용주의 하청업자나 고문으로 업무하는 개인이 포함된다.</p> <p>(5) 해석 규칙 - 이 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 항은 미승인된 수단에 의한 자료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등 법률이 달리 금지하는 행위를 허용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p>제1834조 몰수</p> <p>이 법과 관련된 몰수, 파기 및 배상은 법에서 제공하는 기타 유사한 구제 수단에 추가</p>
--	---

section 2323, to the extent provided in that section, in addition to any other similar remedies provided by law.

§1835. Orders to preserve confidentiality

(a) In General.-In any prosecution or other proceeding under this chapter, the court shall enter such orders and take such other action as may be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preserve the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and Civil Procedure,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and all other applicable laws. An interlocutory appeal by the United States shall lie from a decision or order of a district court authorizing or directing the disclosure of any trade secret.

(b) Rights of Trade Secret Owners.-The court may not authorize or direct the disclosure of any information the owner asserts to be a trade secret unless the court allows the owner the opportunity to file a submission under seal that describes the interest of the owner in keeping the information confidential. No submission under seal made under this subsection may be used in a prosecution under this chapter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ose set forth in this section, or otherwise required by law.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a trade secret to the United States or the court in connection with a prosecution under this chapter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trade secret protection, and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lating to a trade secret in connection with a prosecution under this chapter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trade secret protection unless the trade secret owner expressly consents to such waiver.

하여 해당 절에 제공된 범위 내에서 2323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1835조 기밀보전 명령

(a) 일반규정 - 법원은 이 법에 따른 기소 또는 기타 소송절차에서 ‘연방형사규칙’, ‘연방민사규칙’, ‘연방증거규칙’ 및 기타 모든 적용가능한 법률의 요건과 일치하는, 통상기밀보전에 필요한 명령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간 판결에 대한 국가의 항소는 통상기밀 공개를 허가 또는 지시하는 지방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제기된다.

(b) 영업비밀 소유자의 권리 - 법원은 소유자가 영업비밀로 획득한 이익을 기술하는 진술을 봉인 후 제출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유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 이 항에 따라 봉인된 진술은 이 조의 목적이나 법률이 요구하는 다른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장의 기소에서 사용될 수 없다. 영업비밀 소유자가 정보 포기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이 장의 기소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정보를 정부나 법원에 제공하는 것은 영업비밀 보호의 포기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이 장의 기소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 보호의 포기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836. Civil proceedings

(a) The Attorney General may, in a civil action, obtain appropriate injunctive relief against any violation of this chapter.

(b) Private Civil Actions.-

(1) In general.-An owner of a trade secret that is misappropriated may bring a civil action under this subsection if the trade secret is related to a product or service used in, or intended for use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2) Civil seizure.-

(A) In general.-

(i) Application.-Based on an affidavit or verified complaint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the court may, upon ex parte application but only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ssue an order providing for the seizure of property necessary to prevent the propagation or dissemination of the trade secret that is the subject of the action.

(ii) Requirements for issuing order.-The court may not grant an application under clause (i) unless the court finds that it clearly appears from specific facts that-

(I) an order issued pursuant to Rule 65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or another form of equitable relief would be inadequat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because the party to which the order would be issued would evade, avoid, or otherwise not comply with such an order;

(II) an immediate and irreparable injury will occur if such seizure is not ordered;

(III) the harm to the applicant of denying the application outweighs the harm to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erson against whom seizure would be

제1836조 민사소송

(a) 법무장관은 민사소송에서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유지명령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b) 개인 민사 소송 -

(1) 일반 규정 - 남용된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그 영업비밀이 주간(州間) 무역이나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하고자 하였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다면 이 항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민사상 압수 -

(A) 일반 규정 -

(i) 적용 - 이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서 진술서나 입증된 소장에 따라, 법원은 일방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만 소송의 주제인 영업비밀의 전달이나 보급 방지에 필요한 재산의 압수를 규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ii) 명령 발부 요건 - 법원은 다음 과 같은 사항이 구체적 사실로서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판단하지 아니한다면 (i)단의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I)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가 그 명령을 회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65조에 따라 발부된 명령이나 다른 형태의 형평법상 구제 방법이 이 호의 목적 달성에 부적절하다.

(II) 그 압수를 명령하지 아니하면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III) 신청 거절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가 신청 승인으로 압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정당한 이익의 손해보다 크고, 그 압수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제3자의

<p>ordered of granting the application and substantially outweighs the harm to any third parties who may be harmed by such seizure;</p> <p>(IV) the applicant is likely to succeed in showing that-</p> <p>(aa) the information is a trade secret; and</p> <p>(bb) the person against whom seizure would be ordered-</p> <p>(AA) misappropriated the trade secret of the applicant by improper means; or</p> <p>(BB) conspired to use improper means to misappropriate the trade secret of the applicant;</p> <p>(V) the person against whom seizure would be ordered has actual possession of-</p> <p>(aa) the trade secret; and</p> <p>(bb) any property to be seized;</p> <p>(VI) the application describes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the matter to be seized and, to the extent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identifies the location where the matter is to be seized;</p> <p>(VII) the person against whom seizure would be ordered, or persons acting in concert with such person, would destroy, move, hide, or otherwise make such matter inaccessible to the court, if the applicant were to proceed on notice to such person; and</p> <p>(VIII) the applicant has not publicized the requested seizure.</p> <p>(B) Elements of order.-If an order is issued under subparagraph (A), it shall-</p> <p>(i) set forth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required for the</p>	<p>손해보다 실질적으로 크다.</p> <p>(IV) 신청인이 다음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p> <p>(aa)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다.</p> <p>(bb) 압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p> <p>(AA)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남용하였다.</p> <p>(BB)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남용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의 사용을 공모하였다.</p> <p>(V) 압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의 사항을 실질적으로 점유한다 -</p> <p>(aa) 영업비밀</p> <p>(bb) 압수될 재산</p> <p>(VI) 신청인이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압수될 물건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압수 될 물건의 위치를 명시한다.</p> <p>(VII) 신청인이 압수를 고지하고 진행하면, 압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그와 협력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파괴·이동·은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법원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p> <p>(VIII) 신청인이 청구된 압수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p> <p>(B) 명령의 구성 요소 - 명령이 (A)목에 따라 내려진다면, 다음 각 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p> <p>(i) 명령에 필요한 사실 발견과 법률의</p>
--	--

<p>order;</p> <p>(ii) provide for the narrowest seizure of property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nd direct that the seizure be conducted in a manner that minimizes any interruption of the business operations of third parties and, to the extent possible, does not interrupt the legitimate business operations of the person accused of misappropriating the trade secret;</p> <p>(iii)(I) be accompanied by an order protecting the seized property from disclosure by prohibiting access by the applicant or the person against whom the order is directed, and prohibiting any copies, in whole or in part, of the seized property, to prevent undue damage to the party against whom the order has issued or others, until such parties have an opportunity to be heard in court; and</p> <p>(II) provide that if access is granted by the court to the applicant or the person against whom the order is directed, the access shall be consistent with subparagraph (D);</p> <p>(iv) provide guidance to the law enforcement officials executing the seizure that clearly delineates the scope of the authority of the officials, including-</p> <p>(I) the hours during which the seizure may be executed; and</p> <p>(II) whether force may be used to access locked areas;</p> <p>(v) set a date for a hearing described in subparagraph (F)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and not later than 7 days after the order has issued, unless the party against whom the order is directed and others harmed by the order consent to</p>	<p>결론을 규정한다.</p> <p>(ii) 이 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압수를 허용하고, 그 압수가 제3자의 사업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영업비밀의 남용으로 피소된 사람의 합법적 사업 운영을 중단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규정한다.</p> <p>(iii)(I)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진술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그 당사자나 다른 사람의 과도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자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압수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복사를 금지하여 압수된 재산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명령이 수반된다.</p> <p>(II) 법원이 신청인이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접근을 승인한다면, 그 접근은 (D)목에 따른다고 규정한다.</p> <p>(iv) 압수를 집행하는 사법기관 공무원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p> <p>(I) 압수를 집행할 수 있는 시간</p> <p>(II) 잠금장치를 풀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p> <p>(v)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나 그 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심리기일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명령발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한 빠른 시기로 (F)목의 심리기일을 정한다. 단,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나 그</p>
---	--

<p>another date for the hearing, except that a party against whom the order has issued or any person harmed by the order may move the court at any time to dissolve or modify the order after giving notice to the applicant who obtained the order; and</p> <p>(vi) require the person obtaining the order to provide the security determined adequate by the court for the payment of the damages that any person may be entitled to recover as a result of a wrongful or excessive seizure or wrongful or excessive attempted seizure under this paragraph.</p> <p>(C) Protection from publicity.-The court shall take appropriate action to protect the person against whom an order under this paragraph is directed from publicity, by or at the behest of the person obtaining the order, about such order and any seizure under such order.</p> <p>(D) Materials in custody of court.-</p> <p>(i) In general.-Any materials seized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taken into the custody of the court. The court shall secure the seized material from physical and electronic access during the seizure and while in the custody of the court.</p> <p>(ii) Storage medium.-If the seized material includes a storage medium, or if the seized material is stored on a storage medium, the court shall prohibit the medium from being connected to a network or the Internet without the consent of both parties, until the hearing required under subparagraph (B)(v) and described in subparagraph (F).</p> <p>(iii)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The court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seized</p>	<p>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시기에 관계없이 명령이 승인된 신청인에게 고지를 하고 그 명령을 무효로 하거나 수정하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vi) 이 호에 따른 부당하거나 과도한 압수 또는 그러한 압수의 시도로 인하여 부여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변제를 위하여 명령이 승인된 사람에게 법원이 적절하게 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p> <p>(C) 공개 방지 - 법원은 명령이 승인된 사람에 따라 또는 그의 명령으로써 그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른 압수에 관하여 이 호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p> <p>(D) 법원이 보관하는 자료 -</p> <p>(i) 일반 규정 - 법원은 이 호에 따라 압수된 모든 자료를 보관한다. 법원은 압수 중 그리고 보관 중에 물리적 전자적 접근에서 압수된 자료를 보호한다.</p> <p>(ii) 기억 매체 - 압수된 자료가 기억 매체를 포함하거나 압수된 자료가 기억 매체에 저장되어 있다면, 법원은 (B)목(v)단에 따라 요구되고 (F)목에 기술된 심리기일까지 양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매체를 네트워크나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을 금지한다.</p> <p>(iii) 비밀의 보호 - 법원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자료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이 호에 따라 압수 명령이</p>
---	--

<p>materials that are unrelated to the trade secret information ordered seiz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unless the person against whom the order is entered consents to disclosure of the material.</p> <p>(iv) Appointment of special master.-The court may appoint a special master to locate and isolate all misappropriated trade secret information and to facilitate the return of unrelated property and data to the person from whom the property was seized. The special master appointed by the court shall agree to be bound by a non-disclosure agreement approved by the court.</p> <p>(E) Service of order.-The court shall order that service of a copy of the order under this paragraph, and the submissions of the applicant to obtain the order, shall be made by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who, upon making service, shall carry out the seizure under the order. The court may allow State or local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participate, but may not permit the applicant or any agent of the applican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At the request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court may allow a technical expert who is unaffiliated with the applicant and who is bound by a court-approved non-disclosure agreemen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if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expert will aid the efficient execution of and minimize the burden of the seizure.</p> <p>(F) Seizure hearing.-</p> <p>(i) Date.-A court that issues a seizure order shall hold a hearing on the date set by the court under subparagraph (B)(v).</p>	<p>내려진 영업비밀 정보와 무관한 압수된 자료의 비밀 보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p> <p>(iv) 특별 보좌관의 임명 - 법원은 남용된 영업비밀 정보를 모두 확인하여 격리하고 무관한 재산과 데이터를 재산이 압수된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특별 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임명한 특별 보좌관은 법원이 승인한 비밀유지 계약에 구속되는 것에 합의한다.</p> <p>(E) 명령의 송달 - 법원은 연방 사법 기관 공무원에게 이 호에 따른 명령의 사본과 명령을 구하는 신청인의 진술 사본의 송달을 명하고, 그 공무원은 송달을 하면서 그 명령에 따른 압수를 이행한다. 법원은 주(州) 또는 지방 사법기관 공무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지만,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대리인이 압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사법기관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인 집행에 도움이 되고 압수의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하면 신청인에게 소속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승인한 비밀유지 계약에 구속되는 전문 기술자가 압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p> <p>(F) 압수 심리 -</p> <p>(i) 기일 - 압수 명령을 발부한 법원은 (B)목 (v)단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일에 심리를 한다.</p>
---	---

<p>(ii) Burden of proof.-At a hearing held under this subparagraph, the party who obtained the order under subparagraph (A) shall have the burden to prove the facts supporting the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necessary to support the order. If the party fails to meet that burden, the seizure order shall be dissolved or modified appropriately.</p> <p>(iii) Dissolution or modification of order.-A party against whom the order has been issued or any person harmed by the order may move the court at any time to dissolve or modify the order after giving notice to the party who obtained the order.</p> <p>(iv) Discovery time limits.-The court may make such orders modifying the time limits for discovery under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the frustration of the purposes of a hearing under this subparagraph.</p> <p>(G) Action for damage caused by wrongful seizure.-A person who suffers damage by reason of a wrongful or excessive seizure under this paragraph has a cause of action against the applicant for the order under which such seizure was made, and shall be entitled to the same relief as is provided under section 34(d)(11) of the Trademark Act of 1946 (15 U.S.C. 1116(d)(11)). The security posted with the court under subparagraph (B)(vi) shall not limit the recovery of third parties for damages.</p> <p>(H) Motion for encryption.-A party or a person who claims to have an interest in the subject matter seized may make a motion at any time, which may be heard ex parte, to encrypt any material seized or to be seized under this paragraph that</p>	<p>(ii) 입증 책임 - 이 목에 따른 심리에서 (A)목에 따라 명령이 승인된 당사자는 그 명령을 뒷받침 하는 데 필요한 사실 발견과 법률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압수 명령은 무효로 되거나 적절하게 수정된다.</p> <p>(iii) 명령의 무효나 수정 -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나 그 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시기에 관계없이 명령이 승인된 당사자에게 고지를 하고 그 명령을 무효로 하거나 수정하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p> <p>(iv) 개시(開示) 시한 - 법원은 이목의 심리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민사소송규칙」의 개시 시한을 수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p> <p>(G) 부당한 압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이 호에 따른 부당하거나 과도한 압수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압수의 근거가 되는 명령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 사유를 보유하고, 「상표법(1946)」 제34조제(d)항제(11)호(「미국연방법전」 제15편제1116조제(d)항 제(11)호)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구제 방법이 부여된다. (B)목(vi)단에 따라 법원이 정한 담보는 제3자의 손해 회복을 제한하지 아니한다.</p> <p>(H) 암호화 신청 - 압수된 목적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나 사람은 기억 매체에 저장되었고 이 호에 따라 압수되거나 압수될 자료의 암호화를 시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은 일방적으로 심리될 수 있다.</p>
---	---

<p>is stored on a storage medium. The motion shall include, when possible, the desired encryption method.</p> <p>(3) Remedies.-In a civil action brought under this subsection with respect to the misappropriation of a trade secret, a court may-</p> <p>(A) grant an injunction-</p> <p>(i) to prevent any actual or threatened misappropriation described in paragraph (1) on such terms as the court deems reasonable, provided the order does not-</p> <p>(I) prevent a person from entering into an employment relationship, and that conditions placed on such employment shall be based on evidence of threatened misappropriation and not merely on the information the person knows; or</p> <p>(II) otherwise conflict with an applicable State law prohibiting restraints on the practice of a lawful profession, trade, or business;</p> <p>(ii) if determined appropriate by the court, requiring affirmative actions to be taken to protect the trade secret; and</p> <p>(iii)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render an injunction inequitable, that conditions future use of the trade secret upon payment of a reasonable royalty for no longer than the period of time for which such use could have been prohibited:</p> <p>(B) award-</p> <p>(i)(I) damages for actual loss caused by the misappropriation of the trade secret; and</p> <p>(II) damages for any unjust enrichment caused by the misappropriation of the</p>	<p>가능할 경우에는 그 신청에 원하는 암호화 방법이 포함된다.</p> <p>(3) 구제 방법 - 이 항에 따라 영업비밀의 남용에 대하여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p> <p>(A) 다음 각 단과 같은 가처분을 승인한다 -</p> <p>(i)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조건으로 제(1)호의 실제 남용이나 남용의 우려를 방지한다. 단, 그 명령은 다음 사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p> <p>(I) 어떤 사람이 고용 관계를 맺는 것을 방지한다. 단, 그 고용에 대한 조건이 단순히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남용의 우려에 대한 증거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II) 합법적 직업·거래·사업의 실행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는 현행 주법(州法)과 다른 방식으로 충돌 한다.</p> <p>(ii)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p> <p>(iii) 가처분을 하는 것이 불공평한 예외적 상황에서, 그 사용이 금지될 수 있는 기간까지 합리적인 사용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영업비밀의 장래 사용을 허용한다.</p> <p>(B)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를 인정한다 -</p> <p>(i)(I) 영업비밀의 남용으로 인한 실제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p> <p>(II) 실제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계산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영업 비밀의</p>
--	---

<p>trade secret that is not addressed in computing damages for actual loss; or</p> <p>(ii) in lieu of damages measured by any other methods, the damages caused by the misappropriation measured by imposition of liability for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misappropriator's unauthorized disclosure or use of the trade secret;</p> <p>(C) if the trade secret is willfully and maliciously misappropriated, award exemplary damages in an amount not more than 2 times the amount of the damages awarded under subparagraph (B); and</p> <p>(D) if a claim of the misappropriation is made in bad faith, which may be established by circumstantial evidence, a motion to terminate an injunction is made or opposed in bad faith, or the trade secret was willfully and maliciously misappropriated, award reasonable attorney's fees to the prevailing party.</p> <p>(c) Jurisdiction.-The district courts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of civil actions brought under this section.</p> <p>(d) Period of Limitations.-A civil action under subsection (b) may not be commenced later than 3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misappropriation with respect to which the action would relate is discovered or by the exercise of reasonable diligence should have been discovered.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a continuing misappropriation constitutes a single claim of misappropriation.</p> <p>§1837. Applicability to conduct outside the United States</p> <p>This chapter also applies to conduct</p>	<p>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부의 축적에 대한 손해 배상</p> <p>(ii) 다른 방법으로 측정된 손해 배상을 대신하여, 남용자가 권한 없이 영업 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용료 책임을 부과하여 측정된 남용으로 인한 손해 배상</p> <p>(C) 영업비밀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남용한다면, (B)목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 배상액의 2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p> <p>(D) 남용에 대한 주장이 악의로 이루어졌고 이를 상황 증거로 입증할 수 있거나, 가처분 종료 신청이 악의로 이루어지거나 악의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영업비밀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남용하였다면,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인정한다.</p> <p>(c) 관할권 - 미국 지방 법원은 이 조에 따라 제기된 민사 소송에 대한 제1심 관할권을 보유한다.</p> <p>(d) 시효 기간 - 제(b)항의 민사 소송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남용을 발견하거나 합리적 주의를 하였다면 발견하였을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개시될 수 없다. 이 항에서 남용의 계속은 남용에 대한 단일 배상청구권을 구성한다.</p> <p>제1837조 미국 외부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다음 조건 하에서 미국 외부에서 발생하는 행위에도 적용된다:</p>
---	---

<p>occurr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if-</p> <p>(1) the offender is a natural person who is 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or an organiz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or</p> <p>(2) an act in furtherance of the offense was committed in the United States.</p> <p>§1838. Construction with other laws</p> <p>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833(b), this chapter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empt or displace any other remedies, whether civil or criminal, provided by United States Federal, State, commonwealth, possession, or territory law for the misappropriation of a trade secret, or to affect the otherwise lawful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any Government employee under section 552 of title 5 (commonly known as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p> <p>§1839. Definitions</p> <p>As used in this chapter-</p> <p>(1) the term "foreign instrumentality" means any agency, bureau, ministry, component, institution, association, or any legal, commercial, or business organization, corporation, firm, or entity that is substantially owned, controlled, sponsored, commanded, managed, or dominated by a foreign government;</p> <p>(2) the term "foreign agent" means any officer, employee, proxy, servant, delegate, or representative of a foreign government;</p> <p>(3) the term "trade secret" means all forms and types of financial, business, scientific, technical, economic, or engineering information, including patterns, plans, compilations, program devices, formulas, designs, prototypes, methods, techniques, processes, procedures, programs, or</p>	<p>(1) 범죄자가 미국의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자연인, 또는 연방, 주, 그 하위 행정조직의 법률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 또는</p> <p>(2) 해외에서의 범행에 속행되는 행위가 미국 내부에서 행하여지는 경우</p> <p>제1838조 다른 법률의 해석</p> <p>제1833조 제(b)항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이 법은 통상기밀의 악용에 대하여 미국의 다른 법들이 제공하는 민사 또는 형사 구제 조치에 우선하거나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또는 ‘정보자유법’으로 알려진 5 USC 552에 따른 정부직원에게 의한 합법적 정보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p> <p>제1839조 정의</p> <p>이 법에서 -</p> <p>(1) “외국 기관(foreign instrumentality)”이라 함은 외국 정부가 소유, 통제, 후원, 관리하는 관청, 법률기관, 상업기관, 기업, 협회 등을 의미한다;</p> <p>(2)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이라 함은 외국 정부의 관리, 대리권자, 대표를 의미한다;</p> <p>(3) “통상기밀(trade secret)”이라 함은 다음 조건 하에서 유형(有形) 또는 무형(無形)을 막론하고 모든 형태 및 유형(類型)의 재정, 상업, 과학, 기술, 경제, 엔지니어링 정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패턴, 플랜, 편찬물, 프로그램 장비, 공식, 디자인, 윌형, 체계, 테크닉, 공정, 절차, 프로그램, 코드 등</p>
--	---

<p>codes, whether tangible or intangible, and whether or how stored, compiled, or memorialized physically, electronically, graphically, photographically, or in writing if-</p> <p>(A) the owner thereof has taken reasonable measures to keep such information secret; and</p> <p>(B) the information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ctual or potential,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to, and not being readily ascertainable through proper means by, another person who can obtain economic value from the disclosure or use of the information;</p> <p>(4) the term "owner", with respect to a trade secret, means the person or entity in whom or in which rightful legal or equitable title to, or license in, the trade secret is reposed;</p> <p>(5) the term "misappropriation" means-</p> <p>(A) acquisition of a trade secret of another by a person who knows or has reason to know that the trade secret was acquired by improper means; or</p> <p>(B) disclosure or use of a trade secret of another without express or implied consent by a person who-</p> <p>(i) used improper means to acquire knowledge of the trade secret;</p> <p>(ii) at the time of disclosure or use, knew or had reason to know that the knowledge of the trade secret was-</p> <p>(I) derived from or through a person who had used improper means to acquire the trade secret;</p> <p>(II) acquired under circumstances giving rise to a duty to maintain the secrecy of the trade secret or limit the use of the trade secret; or</p> <p>(III) derived from or through a person who owed a duty to the person seeking</p>	<p>이 포함되며, 보관, 편집 또는 기록 여부나 그 방식에 상관하지 아니한다:</p> <p>(A) 그 소유주가 해당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온 경우; 그리고</p> <p>(B) 그 정보가 정보의 공개나 사용에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타인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부터, 그리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정보의 공개나 사용에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타인이 쉽게 확인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독립적 경제가치를 이끌어내는 경우;</p> <p>(4) 통상기밀과 관련하여 “소유주(owner)”라 함은 보통법 또는 형평법상의 적법한 권리나 허가가 주어진 통상기밀이 위임된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p> <p>(5) “남용”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p> <p>(A) 그 영업비밀이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p> <p>(B)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람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p> <p>(i) 영업비밀을 알아내기 위하여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였다.</p> <p>(ii) 공개하거나 사용할 때에 그 영업비밀의 내용이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p> <p>(I)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였던 사람에게서 그 내용을 취득하였다.</p> <p>(II) 영업비밀을 유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취득하였다.</p> <p>(III) 영업비밀을 유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구제 방법을 구하는 사람에게</p>
---	---

<p>relief to maintain the secrecy of the trade secret or limit the use of the trade secret; or</p> <p>(iii) before a material change of the position of the person, knew or had reason to know that-</p> <p>(I) the trade secret was a trade secret; and</p> <p>(II) knowledge of the trade secret had been acquired by accident or mistake;</p> <p>(6) the term "improper means"-</p> <p>(A) includes theft, bribery, misrepresentation, breach or inducement of a breach of a duty to maintain secrecy, or espionage through electronic or other means; and</p> <p>(B) does not include reverse engineering, independent derivation, or any other lawful means of acquisition; and</p> <p>(7) the term "Trademark Act of 1946" means the Act entitled "An Act to provide for the registration and protection of trademarks used in commerce,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for other purposes 1, approved July 5, 1946 (15 U.S.C. 1051 et seq.) (commonly referred to as the 'Trademark Act of 1946' or the 'Lanham Act')" 1.</p>	<p>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내용을 취득하였다.</p> <p>(iii) 그 사람의 지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p> <p>(I) 그 영업비밀이 실제로 영업비밀이었다.</p> <p>(II) 우연히 또는 과실로써 영업비밀을 알게 되었다.</p> <p>(6) “부당한 수단”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p> <p>(A) 절도·뇌물수수·허위진술·비밀유지의무 위반이나 그 위반의 유인·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한 스파이 행위를 포함한다.</p> <p>(B) 역공학(逆工學)·독립적도출·기타 합법적 수단의 취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p> <p>(7) “「상표법(1946)」”은 “1946년 7월 5일 승인되었으며 특정 국제 협약 규정의 이행과 기타 목적을 위하여 상용으로 사용되는 상표의 등록 및 보호를 규정하는 법률(「미국연방법전」 제15편 제1051조 이하 참조, 통상적으로 「상표법(1946)」 또는 「랜햄법」으로 인용)”이란 명칭의 법률을 의미한다.“</p>
---	---

영업비밀보호법(DTSA) (2016)

국가	미국
원법률명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제정	2016.05.11 PL 114-153
수록자료	영업비밀보호법(2016), pp.1-27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7

이 번역문은 외국 법률의 해석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영업비밀보호법(2016)

Public Law 114-153
114th Congress

공법 제114-153호 제114회기

An Act

To amend chapter 90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to provide Federal jurisdiction for the theft of trade secrets, and for other purposes.

영업비밀 절도에 대하여 연방 관할권을 적용하고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90장을 개정하는 법률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이 법률은 미합중국 상하원 공동 의회에서 제정되었다.

SECTION 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제1조(약칭)

이 법은 「영업비밀보호법(2016)」 으로 인용될 수 있다.

SEC. 2. FEDERAL JURISDICTION FOR THEFT OF TRADE SECRETS.

(a) IN GENERAL.—Section 1836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by striking subsection (b) and inserting the following:

제2조(영업비밀 절도에 대한 연방 관할권)

(a) 일반 규정. 제(b)항을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하여 「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1836조를 개정한다.

“(b) PRIVATE CIVIL ACTIONS.—

“(1) IN GENERAL.—An owner of a trade secret that is misappropriated may bring a civil action under this subsection if the trade secret is related to a product or service used in, or intended for use in, interstate or

“(b) 개인 민사 소송

“(1) 일반 규정. 남용된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그 영업비밀이 주간(州間) 무역이 나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하고자 하였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다면 이 항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p>foreign commerce.</p> <p>“(2) CIVIL SEIZURE.—</p> <p>“(A) IN GENERAL.—</p> <p>“(i) APPLICATION.—Based on an affidavit or verified complaint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the court may, upon ex parte application but only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ssue an order providing for the seizure of property necessary to prevent the propagation or dissemination of the trade secret that is the subject of the action.</p> <p>“(ii) REQUIREMENTS FOR ISSUING ORDER.—The court may not grant an application under clause (i) unless the court finds that it clearly appears from specific facts that—</p> <p>“(I) an order issued pursuant to Rule 65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or another form of equitable relief would be inadequat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because the party to which the order would be issued would evade, avoid, or otherwise not comply with such an order;</p> <p>“(II) an immediate and irreparable injury will occur if such seizure is not ordered;</p> <p>“(III) the harm to the applicant of denying the application outweighs the harm to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erson against whom seizure would be ordered of granting the application and substantially outweighs the harm to any third parties who may be harmed by such seizure;</p> <p>“(IV) the applicant is likely to succeed in showing that—</p> <p>“(aa) the information is a trade secret; and</p>	<p>“(2) 민사상 압수</p> <p>“(A) 일반 규정</p> <p>“(i) 적용. 이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서 진술서나 입증된 소장에 따라, 법원은 일방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만 소송의 주체인 영업비밀의 전달이나 보급 방지에 필요한 재산의 압수를 규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p> <p>“(ii) 명령 발부 요건. 법원은 다음 과 같은 사항이 구체적 사실로서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판단하지 아니한다면 (i)단의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 할 수 있다.</p> <p>“(I)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가 그 명령을 회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65조에 따라 발부된 명령이나 다른 형태의 형평법상 구제 방법이 이 호의 목적 달성에 부적절하다.</p> <p>“(II) 그 압수를 명령하지 아니하면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p> <p>“(III) 신청 거절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가 신청 승인으로 압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정당한 이익의 손해보다 크고, 그 압수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제3자의 손해보다 실질적으로 크다.</p> <p>“(IV) 신청인이 다음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p> <p>“(aa)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다.</p>
---	---

<p>“(bb) the person against whom seizure would be ordered—</p> <p>“(AA) misappropriated the trade secret of the applicant by improper means; or</p> <p>“(BB) conspired to use improper means to misappropriate the trade secret of the applicant;</p> <p>“(V) the person against whom seizure would be ordered has actual possession of—</p> <p>“(aa) the trade secret; and</p> <p>“(bb) any property to be seized;</p> <p>“(VI) the application describes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the matter to be seized and, to the extent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identifies the location where the matter is to be seized;</p> <p>“(VII) the person against whom seizure would be ordered, or persons acting in concert with such person, would destroy, move, hide, or otherwise make such matter inaccessible to the court, if the applicant were to proceed on notice to such person; and</p> <p>“(VIII) the applicant has not publicized the requested seizure.</p> <p>“(B) ELEMENTS OF ORDER.—If an order is issued under subparagraph (A), it shall—</p> <p>“(i) set forth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required for the order;</p> <p>“(ii) provide for the narrowest seizure of property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nd direct that the seizure be conducted in a manner that minimizes any interruption of the business operations of third parties and, to</p>	<p>“(bb) 압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p> <p>“(AA)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남용하였다.</p> <p>“(BB)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남용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의 사용을 공모하였다.</p> <p>“(V) 압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의 사항을 실질적으로 점유한다.</p> <p>“(aa) 영업비밀</p> <p>“(bb) 압수될 재산</p> <p>“(VI) 신청인이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압수될 물건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압수될 물건의 위치를 명시한다.</p> <p>“(VII) 신청인이 압수를 고지하고 진행하면, 압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그와 협력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파괴·이동·은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법원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p> <p>“(VIII) 신청인이 청구된 압수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p> <p>“(B) 명령의 구성 요소. 명령이 (A) 목에 따라 내려진다면, 다음 각 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p> <p>“(i) 명령에 필요한 사실 발견과 법률의 결론을 규정한다.</p> <p>“(ii) 이 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압수를 허용하고, 그 압수가 제3자의 사업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영업비밀의 남용으로 피소된 사람의 합법적 사업 운영을 중단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규정한다.</p>
--	--

<p>the extent possible, does not interrupt the legitimate business operations of the person accused of misappropriating the trade secret;</p> <p>“(iii)</p> <p>(I) be accompanied by an order protecting the seized property from disclosure by prohibiting access by the applicant or the person against whom the order is directed, and prohibiting any copies, in whole or in part, of the seized property, to prevent undue damage to the party against whom the order has issued or others, until such parties have an opportunity to be heard in court; and</p> <p>“(II) provide that if access is granted by the court to the applicant or the person against whom the order is directed, the access shall be consistent with subparagraph</p> <p>(D);</p> <p>“(iv) provide guidance to the law enforcement officials executing the seizure that clearly delineates the scope of the authority of the officials, including—</p> <p>“(I) the hours during which the seizure may be executed; and</p> <p>“(II) whether force may be used to access locked areas;</p> <p>“(v) set a date for a hearing described in subparagraph(F)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and not later than 7 days after the order has issued, unless the party against whom the order is directed and others harmed by the order consent to another date for the hearing, except that a party against whom the order has issued or any person</p>	<p>“(iii)</p> <p>(I)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진술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그 당사자나 다른 사람의 과도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자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압수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복사를 금지하여 압수된 재산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명령이 수반된다.</p> <p>“(II) 법원이 신청인이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접근을 승인한다면, 그 접근은 (D)목에 따른다고 규정한다.</p> <p>“(iv) 압수를 집행하는 사법기관 공무원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p> <p>“(I) 압수를 집행할 수 있는 시간</p> <p>“(II) 잠금장치를 풀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p> <p>“(v)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나 그 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심리기일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명령발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한 빠른 시기로 (F)목의 심리기일을 정한다. 단,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나 그 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시기에 관계없이 명령이 승인된 신청인에게 고지를 하고 그 명령을 무효로 하거나 수정하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	--

<p>harmed by the order may move the court at any time to dissolve or modify the order after giving notice to the applicant who obtained the order; and</p> <p>“(vi) require the person obtaining the order to provide the security determined adequate by the court for the payment of the damages that any person may be entitled to recover as a result of a wrongful or excessive seizure or wrongful or excessive attempted seizure under this paragraph.</p> <p>“(C) PROTECTION FROM PUBLICITY.—The court shall take appropriate action to protect the person against whom an order under this paragraph is directed from publicity, by or at the behest of the person obtaining the order, about such order and any seizure under such order.</p> <p>“(D) MATERIALS IN CUSTODY OF COURT.—</p> <p>“(i) IN GENERAL.—Any materials seized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taken into the custody of the court. The court shall secure the seized material from physical and electronic access during the seizure and while in the custody of the court.</p> <p>“(ii) STORAGE MEDIUM.—If the seized material includes a storage medium, or if the seized material is stored on a storage medium, the court shall prohibit the medium from being connected to a network or the Internet without the consent of both parties, until the hearing required under subparagraph (B)(v) and described in subparagraph (F).</p> <p>“(iii)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The court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p>	<p>“(vi) 이 호에 따른 부당하거나 과도한 압수 또는 그러한 압수의 시도로 인하여 부여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변제를 위하여 명령이 승인된 사람에게 법원이 적절하게 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p> <p>“(C) 공개 방지. 법원은 명령이 승인된 사람에 따라 또는 그의 명령으로써 그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른 압수에 관하여 이 호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p> <p>“(D) 법원이 보관하는 자료</p> <p>“(i) 일반 규정. 법원은 이 호에 따라 압수된 모든 자료를 보관한다. 법원은 압수 중 그리고 보관 중에 물리적 전자적 접근에서 압수된 자료를 보호한다.</p> <p>“(ii) 기억 매체. 압수된 자료가 기억 매체를 포함하거나 압수된 자료가 기억 매체에 저장되어 있다면, 법원은 (B)목(v)단에 따라 요구되고 (F)목에 기술된 심리기일까지 양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매체를 네트워크나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을 금지한다.</p> <p>“(iii) 비밀의 보호. 법원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자료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이 호에 따라</p>
---	--

<p>the confidentiality of seized materials that are unrelated to the trade secret information ordered seiz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unless the person against whom the order is entered consents to disclosure of the material.</p> <p>“(iv) APPOINTMENT OF SPECIAL MASTER.—The court may appoint a special master to locate and isolate all misappropriated trade secret information and to facilitate the return of unrelated property and data to the person from whom the property was seized. The special master appointed by the court shall agree to be bound by a non-disclosure agreement approved by the court.</p> <p>“(E) SERVICE OF ORDER.—The court shall order that service of a copy of the order under this paragraph, and the submissions of the applicant to obtain the order, shall be made by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who, upon making service, shall carry out the seizure under the order. The court may allow State or local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participate, but may not permit the applicant or any agent of the applican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At the request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court may allow a technical expert who is unaffiliated with the applicant and who is bound by a court-approved non-disclosure agreemen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if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expert will aid the efficient execution of and minimize the burden of the seizure.</p> <p>“(F) SEIZURE HEARING.—</p> <p>“(i) DATE.—A court that issues a seizure order shall hold a hearing on</p>	<p>압수 명령이 내려진 영업비밀 정보와 무관한 압수된 자료의 비밀 보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p> <p>“(iv) 특별 보좌관의 임명. 법원은 남용된 영업비밀 정보를 모두 확인하여 격리하고 무관한 재산과 데이터를 재산이 압수된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특별 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임명한 특별 보좌관은 법원이 승인한 비밀유지 계약에 구속되는 것에 합의한다.</p> <p>“(E) 명령의 송달. 법원은 연방 사법 기관 공무원에게 이 호에 따른 명령의 사본과 명령을 구하는 신청인의 진술 사본의 송달을 명하고, 그 공무원은 송달을 하면서 그 명령에 따른 압수를 이행한다. 법원은 주(州) 또는 지방 사법기관 공무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지만,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대리인이 압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사법기관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인 집행에 도움이 되고 압수의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하면 신청인에게 소속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승인한 비밀유지 계약에 구속되는 전문 기술자가 압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p> <p>“(F) 압수 심리</p> <p>“(i) 기일. 압수 명령을 발부한 법원은 (B)목(v)단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일에</p>
--	--

<p>the date set by the court under subparagraph (B)(v).</p> <p>“(ii) BURDEN OF PROOF.—At a hearing held under this subparagraph, the party who obtained the order under subparagraph (A) shall have the burden to prove the facts supporting the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necessary to support the order. If the party fails to meet that burden, the seizure order shall be dissolved or modified appropriately.</p> <p>“(iii) DISSOLUTION OR MODIFICATION OF ORDER.— A party against whom the order has been issued or any person harmed by the order may move the court at any time to dissolve or modify the order after giving notice to the party who obtained the order.</p> <p>“(iv) DISCOVERY TIME LIMITS.—The court may make such orders modifying the time limits for discovery under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the frustration of the purposes of a hearing under this subparagraph.</p> <p>“(G) ACTION FOR DAMAGE CAUSED BY WRONGFUL SEIZURE.— A person who suffers damage by reason of a wrongful or excessive seizure under this paragraph has a cause of action against the applicant for the order under which such seizure was made, and shall be entitled to the same relief as is provided under section 34(d)(11) of the Trademark Act of 1946 (15 U.S.C. 1116(d)(11)). The security posted with the court under subparagraph (B)(vi) shall not limit the recovery of third parties for damages.</p>	<p>심리를 한다.</p> <p>“(ii) 입증 책임. 이 목에 따른 심리에서 (A)목에 따라 명령이 승인된 당사자는 그 명령을 뒷받침 하는 데 필요한 사실 발견과 법률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압수 명령은 무효로 되거나 적절하게 수정된다.</p> <p>“(iii) 명령의 무효나 수정.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나 그 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시기에 관계없이 명령이 승인된 당사자에게 고지를 하고 그 명령을 무효로 하거나 수정하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p> <p>“(iv) 개시(開示) 시한. 법원은 이목의 심리에 대한 방해로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민사소송규칙」의 개시 시한을 수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p> <p>“(G) 부당한 압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이 호에 따른 부당하거나 과도한 압수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압수의 근거가 되는 명령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 사유를 보유하고, 「상표법(1946)」 제34조제(d)항제(11)호(「미국연방법전」 제15편제1116조제(d)항 제(11)호)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구제 방법이 부여된다. (B)목(vi)단에 따라 법원이 정한 담보는 제3자의 손해 회복을 제한하지 아니한다.</p>
--	--

<p>“(H) MOTION FOR ENCRYPTION.—A party or a person who claims to have an interest in the subject matter seized may make a motion at any time, which may be heard ex parte, to encrypt any material seized or to be seized under this paragraph that is stored on a storage medium. The motion shall include, when possible, the desired encryption method.</p> <p>“(3) REMEDIES.—In a civil action brought under this subsection with respect to the misappropriation of a trade secret, a court may—</p> <p>“(A) grant an injunction—</p> <p>“(i) to prevent any actual or threatened misappropriation described in paragraph (1) on such terms as the court deems reasonable, provided the order does not—</p> <p>“(I) prevent a person from entering into an employment relationship, and that conditions placed on such employment shall be based on evidence of threatened misappropriation and not merely on the information the person knows; or</p> <p>“(II) otherwise conflict with an applicable State law prohibiting restraints on the practice of a lawful profession, trade, or business;</p> <p>“(ii) if determined appropriate by the court, requiring affirmative actions to be taken to protect the trade secret; and</p> <p>“(iii)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render an injunction inequitable, that conditions future use of the trade secret upon payment of a reasonable royalty for no longer than the period of time for which such use could have been prohibited;</p>	<p>“(H) 암호화 신청. 압수된 목적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나 사람은 기억 매체에 저장되었고 이 호에 따라 압수되거나 압수될 자료의 암호화를 시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은 일방적으로 심리될 수 있다. 가능할 경우에는 그 신청에 원하는 암호화 방법이 포함된다.</p> <p>“(3) 구제 방법. 이 항에 따라 영업비밀의 남용에 대하여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p> <p>“(A) 다음 각 단과 같은 가처분을 승인한다.</p> <p>“(i)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조건으로 제(1)호의 실제 남용이나 남용의 우려를 방지한다. 단, 그 명령은 다음 사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p> <p>“(I) 어떤 사람이 고용 관계를 맺는 것을 방지한다. 단, 그 고용에 대한 조건이 단순히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남용의 우려에 대한 증거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II) 합법적 직업·거래·사업의 실행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는 현행 주법(州法)과 다른 방식으로 충돌한다.</p> <p>“(ii)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p> <p>“(iii) 가처분을 하는 것이 불공평한 예외적 상황에서, 그 사용이 금지될 수 있는 기간까지 합리적인 사용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영업비밀의 장래 사용을 허용한다.</p>
--	---

<p>“(B) award—</p> <p>“(i)</p> <p>(I) damages for actual loss caused by the misappropriation of the trade secret; and</p> <p>“(II) damages for any unjust enrichment caused by the misappropriation of the trade secret that is not addressed in computing damages for actual loss; or</p> <p>“(ii) in lieu of damages measured by any other methods, the damages caused by the misappropriation measured by imposition of liability for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misappropriator’s unauthorized disclosure or use of the trade secret;</p> <p>“(C) if the trade secret is willfully and maliciously misappropriated, award exemplary damages in an amount not more than 2 times the amount of the damages awarded under subparagraph (B); and</p> <p>“(D) if a claim of the misappropriation is made in bad faith, which may be established by circumstantial evidence, a motion to terminate an injunction is made or opposed in bad faith, or the trade secret was willfully and maliciously misappropriated, award reasonable attorney’s fees to the prevailing party.</p> <p>“(c) JURISDICTION.—The district courts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of civil actions brought under this section.</p> <p>“(d) PERIOD OF LIMITATIONS.—A civil action under subsection (b) may not be commenced later than 3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misappropriation with respect to which the action would relate is discovered or by the exercise of reasonable</p>	<p>“(B)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를 인정한다.</p> <p>“(i)</p> <p>(I) 영업비밀의 남용으로 인한 실제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p> <p>“(II) 실제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계산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영업 비밀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부의 축적에 대한 손해 배상</p> <p>“(ii) 다른 방법으로 측정된 손해 배상을 대신하여, 남용자가 권한 없이 영업 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용료 책임을 부과하여 측정된 남용으로 인한 손해 배상</p> <p>“(C) 영업비밀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남용한다면, (B)목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 배상액의 2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p> <p>“(D) 남용에 대한 주장이 악의로 이루어졌고 이를 상황 증거로 입증할 수 있거나, 가치분 종료 신청이 악의로 이루어지거나 악의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영업비밀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남용하였다면,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인정한다.</p> <p>“(c) 관할권. 미국 지방 법원은 이 조에 따라 제기된 민사 소송에 대한 제1심 관할권을 보유한다.</p> <p>“(d) 시효 기간. 제(b)항의 민사 소송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남용을 발견하거나 합리적 주의를 하였다면 발견하였을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개시될 수 없다. 이 항에서 남용의 계속은 남용에 대한 단일 배상청구권을 구성한다.”</p>
--	--

diligence should have been discovered.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a continuing misappropriation constitutes a single claim of misappropriation.”

(b) DEFINITIONS.—Section 1839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1) in paragraph (3)—

(A) in subparagraph (B), by striking “the public” and inserting “another person who can obtain economic value from the disclosure or use of the information”; and

(B) by striking “and” at the end;

(2) in paragraph (4), by striking the period at the end and inserting a semicolon; and

(3)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5) the term ‘misappropriation’ means—

“(A) acquisition of a trade secret of another by a person who knows or has reason to know that the trade secret was acquired by improper means; or

“(B) disclosure or use of a trade secret of another without express or implied consent by a person who—

“(i) used improper means to acquire knowledge of the trade secret;

“(ii) at the time of disclosure or use, knew or had reason to know that the knowledge of the trade secret was—

“(I) derived from or through a person who had used improper means to acquire the trade secret;

“(II) acquired under circumstances giving rise to a duty to maintain the secrecy of the trade secret or limit the use

(b)정의. 「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1839 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된다.

(1) 제(3)호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개정된다.

(A) 제(B)목에서 "대중"을 삭제하고 "정보의 공개나 사용에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타인"을 삽입한다.

(B) 말미(末尾)에 "그리고"를 삭제한다.

(2) 제(4)호에서 말미에 기간을 삭제하고 쌍반점(;)을 삽입한다.

(3)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5) "남용"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그 영업비밀이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

“(B)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람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

“(i) 영업비밀을 알아내기 위하여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였다.

“(ii) 공개하거나 사용할 때에 그 영업비밀의 내용이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I)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였던 사람에게서 그 내용을 취득하였다.

“(II) 영업비밀을 유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취득하였다.

<p>of the trade secret; or</p> <p>“(III) derived from or through a person who owed a duty to the person seeking relief to maintain the secrecy of the trade secret or limit the use of the trade secret; or</p> <p>“(iii) before a material change of the position of the person, knew or had reason to know that—</p> <p>“(I) the trade secret was a trade secret; and</p> <p>“(II) knowledge of the trade secret had been acquired by accident or mistake;</p> <p>“(6) the term ‘improper means’—</p> <p>“(A) includes theft, bribery, misrepresentation, breach or inducement of a breach of a duty to maintain secrecy, or espionage through electronic or other means; and</p> <p>“(B) does not include reverse engineering, independent derivation, or any other lawful means of acquisition; and</p> <p>“(7) the term ‘Trademark Act of 1946’ means the Act entitled ‘An Act to provide for the registration and protection of trademarks used in commerce,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for other purposes, approved July 5, 1946 (15 U.S.C. 1051 et seq.) (commonly referred to as the “Trademark Act of 1946” or the “Lanham Act”)’.”.</p> <p>(c) EXCEPTIONS TO PROHIBITION.—Section 1833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in the matter preceding paragraph (1), by inserting “or create a private right of action for” after “prohibit”.</p> <p>(d) CONFORMING AMENDMENTS.—</p> <p>(1) The section heading for section</p>	<p>“(III) 영업비밀을 유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구체 방법을 구하는 사람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내용을 취득하였다.</p> <p>“(iii) 그 사람의 지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p> <p>“(I) 그 영업비밀이 실제로 영업비밀이었다.</p> <p>“(II) 우연히 또는 과실로써 영업비밀을 알게 되었다.</p> <p>“(6) "부당한 수단"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p> <p>“(A) 절도·뇌물 수수·허위 진술·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나 그 위반의 유인·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한 스파이 행위를 포함한다.</p> <p>“(B) 역공학(逆工學)·독립적 도출·기타 합법적 수단의 취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p> <p>“(7) "「상표법(1946)」"은 "1946년 7월 5일 승인되었으며 특정 국제 협약 규정의 이행과 기타 목적을 위하여 상용으로 사용되는 상표의 등록 및 보호를 규정하는 법률(「미국연방법전」 제15편 제1051조 이하 참조. 통상적으로 「상표법(1946)」 또는 「랜햄법」으로 인용)"이란 명칭의 법률을 의미한다."</p> <p>(c) 금지의 예외. 제(1)호의 앞 문장에서 "금지" 뒤에 "또는 개인 소권을 성립"을 삽입하여 「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1833조를 개정한다.</p> <p>(d) 관련 개정</p> <p>(1) 「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1836조의</p>
---	---

<p>1836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p> <p>“§ 1836. Civil proceedings”. (2) The table of sections for chapter 90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by striking the item relating to section 1836 and inserting the following:</p> <p>“1836. Civil proceedings”. (e) EFFECTIVE DATE.—The amendments made by this section shall apply with respect to any misappropriation of a trade secret (as defined in section 1839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as amended by this section) for which any act occurs on o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f) RULE OF CONSTRUCTION.—Nothing in the amendments made by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modify the rule of construction under section 1838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or to preempt any other provision of law. (g) APPLICABILITY TO OTHER LAWS.—This section and the amendments made by this section shall not be construed to be a law pertaining to intellectual property for purposes of any other Act of Congress.</p> <p>SEC. 3. TRADE SECRET THEFT ENFORCEMENT. (a) IN GENERAL.—Chapter 90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1) in section 1832(b), by striking “\$5,000,000” and inserting “the</p>	<p>조항명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p> <p>“제1836조(민사 소송 절차)” (2) 제1836조에 관련된 항목을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하여 「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90장의 목차를 개정한다.</p> <p>“제1836조(민사 소송 절차)” (e) 발효일. 이 조에 따른 개정은 이 법률의 제정일 이후에 발생한 모든 행위 중 영업비밀의 남용(「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1839조에서 정의되고, 이 조로 개정된 바를 따름)에 적용된다.</p> <p>(f) 해석 규칙. 이 조에 따른 개정은 「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1838조의 해석 규칙을 수정하거나 법률의 다른 규정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p>(g) 다른 법률에 대한 적용 가능성. 이 조와 이 조에 따른 개정은 다른 의회 입법을 위하여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p>제3조(영업비밀 절도에 대한 실행) (a) 일반 규정. 「미국연방법전」 제18편 제90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된다. (1) 제1832조제(b)항에서, “5,000,000 달러”를 삭제하고 “5,000,000달러 또는</p>
---	--

<p>greater of \$5,000,000 or 3 times the value of the stolen trade secret to the organization, including expenses for research and design and other costs of reproducing the trade secret that the organization has thereby avoided”; and</p> <p>(2) in section 1835—</p> <p>(A) by striking “In any prosecution” and inserting the following: “(a) IN GENERAL.—In any prosecution”; and</p> <p>(B)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b) RIGHTS OF TRADE SECRET OWNERS.—The court may not authorize or direct the disclosure of any information the owner asserts to be a trade secret unless the court allows the owner the opportunity to file a submission under seal that describes the interest of the owner in keeping the information confidential. No submission under seal made under this subsection may be used in a prosecution under this chapter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ose set forth in this section, or otherwise required by law.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a trade secret to the United States or the court in connection with a prosecution under this chapter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trade secret protection, and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lating to a trade secret in connection with a prosecution under this chapter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trade secret protection unless the trade secret owner expressly consents to such waiver..</p> <p>(b) RICO PREDICATE OFFENSES.—Section 1961(1)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p>	<p>연구 및 설계 비용과 영업비밀을 복제하여 해당 단체가 회피한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영업비밀의 절도로써 그 단체가 얻은 가치의 3배 중 큰 금액”을 삽입한다.</p> <p>(2) 제1835조를 다음 각 목과 같이 개정한다.</p> <p>(A) "기소에서"를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한다.</p> <p>“(a) 일반 규정. 기소에서”</p> <p>(B)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p> <p>“(b) 영업비밀 소유자의 권리. 법원은 소유자가 영업비밀로 획득한 이익을 기술하는 진술을 봉인 후 제출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유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 이 항에 따라 봉인된 진술은 이 조의 목적이나 법률이 요구하는 다른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장의 기소에서 사용될 수 없다. 영업비밀 소유자가 정보 포기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이 장의 기소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정보를 정부나 법원에 제공하는 것은 영업비밀 보호의 포기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이 장의 기소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 보호의 포기를 구성하지 아니한다.”</p> <p>(b) 「조직 범죄 피해자 보상법」 관련 범죄. "제1951조" 앞에 "제1831조와 제1832조(산업 스파이와 영업비밀 절도</p>
--	--

<p>by inserting “sections 1831 and 1832 (relating to economic espionage and theft of trade secrets)”, before “section 1951”.</p> <p>SEC. 4. REPORT ON THEFT OF TRADE SECRETS OCCURRING ABROAD.</p> <p>(a) DEFINITIONS.—In this section:</p> <p>(1) DIRECTOR.—The term “Director” means the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p> <p>(2) FOREIGN INSTRUMENTALITY, ETC.—The terms “foreign instrumentality”, “foreign agent”, and “trade secret” have the meanings given those terms in section 1839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p> <p>(3) STATE.—The term “State” includes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any commonwealth,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p> <p>(4) UNITED STATES COMPANY.—The term “United States company” means an organiz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p> <p>(b) REPORTS.—Not later than 1 year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and biannually thereafter, the Attorney General, in consulta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the Director, and the heads of other appropriate agencies,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s on the Judiciary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and make publicly available on the Web site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disseminate to the public through such other means as</p>	<p>관련)"를 삽입하여 「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1961조 제(1)호를 개정한다.</p> <p>제4조(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절도에 대한 보고)</p> <p>(a) 정의. 이 조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p> <p>(1) 관리자. "관리자"란 지적 재산권 담당 상무부 차관 겸 미 특허청 청장을 의미한다.</p> <p>(2) 외국 기관 등. "외국 기관", "외국 관리" 및 "영업비밀"은 「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1839조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p> <p>(3) 주(州). "주(州)"에는 컬럼비아 특별구 그리고 미국의 자치주·준주(準州)·속령이 포함된다.</p> <p>(4) 미국 회사. "미국 회사"란 미연방법이나 주(州)법 또는 그 정치적 하부기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의미한다.</p> <p>(b) 보고. 이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연 2회, 법무부 장관은 지적재산권 집행조정관·관리자·기타 관련 기관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의 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 아울러, 법무부 웹사이트에 해당보고서를 공개하고, 법무부 장관이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수단으로 대중에게 보급한다.</p>
---	--

<p>the Attorney General may identify, a report on the following:</p> <p>(1) The scope and breadth of the theft of the trade secrets of United States companies occurring outside of the United States.</p> <p>(2) The extent to which theft of trade secrets occurring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s sponsored by foreign governments, foreign instrumentalities, or foreign agents.</p> <p>(3) The threat posed by theft of trade secrets occurring outside of the United States.</p> <p>(4) The ability and limitations of trade secret owners to prevent the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to enforce any judgment against foreign entities for theft of trade secrets, and to prevent imports based on theft of trade secrets overseas.</p> <p>(5) A breakdown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s afforded United States companies by each country that is a trading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and enforcement efforts available and undertaken in each such country, including a list identifying specific countries where trade secret theft, laws, or enforcement is a significant problem for United States companies.</p> <p>(6) Instances of the Federal Government working with foreign countries to investigate, arrest, and prosecute entitie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the theft of trade secret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p> <p>(7) Specific progress made under trade agreements and treaties, including any new remedies enacted by foreign countries, to protect against theft of trade secrets of United States companie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p> <p>(8) Recommendations of legislative and</p>	<p>(1) 해외에서 발생하는 미국 회사의 영업비밀 절도의 범위와 빈도</p> <p>(2)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절도 중에서 외국 정부·외국 기관·외국 관리가 지원하는 정도</p> <p>(3)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절도에 따른 위협</p> <p>(4) 해외에서 영업비밀의 남용을 방지하고, 영업비밀을 절취한 외국 단체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고, 해외 영업비밀 절도에 기초한 수입(輸入)을 방지하기 위한 영업 비밀 소유자의 능력과 한계</p> <p>(5) 미국의 무역 상대국인 국가가 미국 회사에 제공하는 영업비밀 보호의 세부 사항과 해당 국가가 협조하고 약속한 집행 활동. 미국 회사가 영업비밀 절도·법률·집행 관련 사항을 주요하게 간주할 경우, 여기에는 관련 국가의 목록도 포함된다.</p> <p>(6) 연방 정부가 해외 영업비밀 절도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을 조사·체포·기소하기 위하여 외국과 공조한 사례</p> <p>(7) 무역 협정과 조약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여기에는 해외에서 미국 회사의 영업 비밀을 절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이 입법한 새로운 구제 방법이 포함된다.</p> <p>(8) 다음 각 목을 위하여 입법부와</p>
---	--

<p>executive branch actions that may be undertaken to—</p> <p>(A) reduce the threat of and economic impact caused by the theft of the trade secrets of United States companies occurring outside of the United States;</p> <p>(B) educate United States companies regarding the threats to their trade secrets when take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p> <p>(C) provide assistance to United States companies to reduce the risk of loss of their trade secrets when take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p> <p>(D) provide a mechanism for United States companies to confidentially or anonymously report the theft of trade secrets occurring outside of the United States.</p> <p>SEC. 5. SENSE OF CONGRESS.</p> <p>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p> <p>(1) trade secret theft occurs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p> <p>(2) trade secret theft, wherever it occurs, harms the companies that own the trade secrets and the employees of the companies;</p> <p>(3) chapter 90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commonly known as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applies broadly to protect trade secrets from theft; and</p> <p>(4) it is important when seizing information to balance the need to prevent or remedy misappropriation with the need to avoid interrupting the—</p> <p>(A) business of third parties; and</p> <p>(B)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rty accused of wrongdoing.</p>	<p>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권고</p> <p>(A) 해외에서 발생하는 미국 회사의 영업비밀 절도의 위협과 그 경제적 영향을 저감시킨다.</p> <p>(B) 해외로 반출한 경우, 영업비밀에 대한 위협을 미국 회사에 교육한다.</p> <p>(C) 해외로 반출한 경우, 영업비밀의 상실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미국 회사를 지원한다.</p> <p>(D)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절도를 미국 회사가 비밀로 또는 익명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만든다.</p> <p>제5조(의회의 인지)</p> <p>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p> <p>(1) 영업비밀 절도가 미국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발생한다.</p> <p>(2) 영업비밀 절도가 발생할 때마다 그 영업비밀을 소유한 회사와 그 회사의 피용인은 피해를 겪는다.</p> <p>(3) 영업비밀을 절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90장 (「산업스파이법(1996)」)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p> <p>(4) 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 남용을 방지하거나 치유하라는 요구와 다음 각 목에 대한 제한을 예방하라는 요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p> <p>(A) 제3자의 영업</p> <p>(B) 불법 행위로 피소된 당사자의 정당 이익</p>
---	--

SEC. 6. BEST PRACTICES.

(a) IN GENERAL.—Not later than 2 year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the Federal Judicial Center, using existing resources, shall develop recommended best practices for—

- (1) the seizure of information and media storing the information; and
- (2) the securing of the information and media once seized.

(b) UPDATES.—The Federal Judicial Center shall update the recommended best practices developed under subsection (a) from time to time.

(c) CONGRESSIONAL SUBMISSIONS.—The Federal Judicial Center shall provide a copy of the recommendations developed under subsection (a), and any updates made under subsection (b), to the—

- (1) Committee on the Judiciary of the Senate; and
- (2) Committee on the Judiciary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EC. 7. IMMUNITY FROM LIABILITY FOR CONFIDENTIAL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O THE GOVERNMENT OR IN A COURT FILING.

(a) AMENDMENT.—Section 1833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 (1) by striking “This chapter” and inserting “(a) IN GENERAL.— This chapter”;
- (2) in subsection (a)(2), as designated by paragraph (1), by striking “the reporting of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to any governmental entity of the United States, a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if such entity has lawful authority with respect to that violation” and inserting “the disclosure

제6조(모범 실무)

(a) 일반 규정. 이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방사법센터는 기존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를 위한 권장 모범 실무를 개발한다.

- (1) 정보와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의 압수
- (2) 일단 압수된 정보와 매체의 보안

(b) 갱신. 연방사법센터는 제(a)항에 따라 개발된 권장 모범 실무를 수시로 갱신한다.

(c) 의회 제출. 연방사법센터는 제(a)항에 따라 결정된 권고와 제(b)항에 따른 갱신이 기재된 사본을 다음 각 호에 제출한다.

- (1) 상원의 사법위원회
- (2) 하원의 사법위원회

제7조(정부 또는 법원에 영업비밀을 공개한 것에 대한 면책)

(a) 개정. 「미국연방법전」 제18편 제1833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된다.

- (1) "이 장"을 삭제하고 "(a) 일반 규정. 이 장"을 삽입한다.
- (2) 제(a)항제(2)호에서, 제(1)호로 지정된 바와 같이 “그 기관이 해당 위반에 대하여 합법적 권한이 있다면, 연방·주(州)·주(州)의 정치적 하부기관의 정부기관에 의심되는 법률 위반을 보고”를 삭제하고 “제(b)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공개”를 삽입한다.

<p>of a trade secret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b);” and</p> <p>(3)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b) IMMUNITY FROM LIABILITY FOR CONFIDENTIAL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O THE GOVERNMENT OR IN A COURT FILING.—</p> <p>“(1) IMMUNITY.—An individual shall not be held criminally or civilly liable under any Federal or State trade secret law for the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at—</p> <p>“(A) is made—</p> <p>“(i) in confidence to a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official,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r to an attorney; and</p> <p>“(ii) solely for the purpose of reporting or investigating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or</p> <p>“(B) is made in a complaint or other document filed in a lawsuit or other proceeding, if such filing is made under seal.</p> <p>“(2) USE OF TRADE SECRET INFORMATION IN ANTI—RETALIATION LAWSUIT.—An individual who files a lawsuit for retaliation by an employer for reporting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may disclose the trade secret to the attorney of the individual and use the trade secret information in the court proceeding, if the individual—</p> <p>“(A) files any document containing the trade secret under seal; and</p> <p>“(B) does not disclose the trade secret, except pursuant to court order.</p> <p>“(3) NOTICE.—</p> <p>“(A) IN GENERAL.—An employer shall provide notice of the immunity set forth in this subsection in any contract or agreement with an employee that governs the use of a trade secret or</p>	<p>(3)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p> <p>“(b) 정부 또는 법원에 영업비밀을 공개한 것에 대한 면책</p> <p>“(1) 면책. 개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의 공개에 대하여 영업비밀 관련 연방법이나 주(州)법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p> <p>“(A) 다음과 같이 공개된 영업비밀</p> <p>“(i) 직간접적으로 연방·주(州)·지방 정부 공무원 또는 검사에게 비밀로 공개하였다.</p> <p>“(ii) 오로지 의심되는 법률 위반의 보고나 조사를 위하여 공개하였다.</p> <p>“(B) 소송이나 다른 절차에서 제출된 소장이나 기타 문서를 통하여 공개된 영업비밀. 단, 봉인 후에 제출이 이루어졌다.</p> <p>“(2) 반보복(反報復) 소송에서 영업비밀 정보의 사용. 어떠한 개인이 다음 각 목과 같이 행위한다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고발에 따른 고용주의 보복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개인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영업비밀을 공개하고 법원 절차에서 영업비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p> <p>“(A) 영업비밀을 포함한 서류를 봉인하여 제출한다.</p> <p>“(B) 법원 명령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아니한다.</p> <p>“(3) 고지</p> <p>“(A) 일반 규정. 고용주는 영업비밀이나 기타 기밀 정보의 사용을 규율하는 피용인과의 모든 계약이나 합의에서 이항에 규정된 면책을 고지한다.</p>
---	--

<p>other confidential information.</p> <p>“(B) POLICY DOCUMENT.—An employer shall be considered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notice requirement in subparagraph (A) if the employer provides a cross-reference to a policy document provided to the employee that sets forth the employer’s reporting policy for a suspected violation of law.</p> <p>“(C) NON-COMPLIANCE.—If an employer does not comply with the notice requirement in subparagraph (A), the employer may not be awarded exemplary damages or attorney fees under subparagraph (C) or (D) of section 1836(b)(3) in an action against an employee to whom notice was not provided.</p> <p>“(D) APPLICABILITY.—This paragraph shall apply to contracts and agreements that are entered into or updated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subsection.</p> <p>“(4) EMPLOYEE DEFINED.—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employee’ includes any individual performing work as a contractor or consultant for an employer.</p> <p>“(5) RULE OF CONSTRUCTION.—Except as expressly provided for under this subsection, nothing in this sub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authorize, or limit liability for, an act that is otherwise prohibited by law, such as the unlawful access of material by unauthorized means”.</p> <p>(b) TECHNICAL AND CONFORMING AMENDMENT.—Section 1838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by striking “This chapter”and inserting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833(b), this chapter”.</p>	<p>“(B) 정책 문서. 고용주가 교차 참조를 위하여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용주 정책 보고서를 피용인에게 제공한다면, (A)목의 고지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p> <p>“(C) 불이행. 고용주는 (A)목의 고지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면, 고지를 받지 아니한 피용인에 대한 소송에서 제1836조제(b)항 제(3)호(C)목이나 (D)목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변호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다.</p> <p>“(D) 적용 가능성. 이 호는 이 항의 제정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과 합의에 적용된다.</p> <p>“(4) 피용인의 정의. 이 항에서, "피용인"에는 고용주의 하청업자나 고문으로 업무하는 개인이 포함된다.</p> <p>“(5) 해석 규칙. 이 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 항은 미승인된 수단에 의한 자료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등 법률이 달리 금지하는 행위를 허용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p>(b) 기술적 개정과 관련 개정. "이 장"을 삭제하고 "제1833조제(b)항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이 장"을 삽입하여 「미국연방법전」 제18편제1838조를 개정한다.</p>
---	---

<p>Approved May 11, 2016.</p> <p>LEGISLATIVE HISTORY—S. 1890: HOUSE REPORTS: No. 114-529 (Comm. on the Judiciary). SENATE REPORTS: No. 114-220 (Comm. on the Judiciary). CONGRESSIONAL RECORD, Vol. 162 (2016): Apr. 4, considered and passed Senate. Apr. 27, considered and passed House. DAILY COMPILATION OF PRESIDENTIAL DOCUMENTS (2016): May 11, Presidential remarks.</p>	<p>2016년 5월 11일 승인</p> <p>입법 연혁—S. 1890: 하원 보고서: 제114-529호(사법위원회) 상원 보고서: 제114-220호(사법위원회) 연방 의회 의사록 제162호(2016): 4월 4일, 상원에서 심의되고 통과됨 4월 27일, 하원에서 심의되고 통과됨 대통령문서일일편람(2016): 5월 11일, 대통령 주석</p>
--	---

일 본

원 본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본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법」

- 국 가 · 지 역: 일본
- 법 률 번 호: 평성5<1993>년 법률 제47호
- 공 포 일: 1993년 5월 19일
- 개 정 일: 2018년 5월 30일

원문	번역문
<p>第一章 総則</p> <p>第一条 (目的) この法律は、事業者間の公正な競争及びこれに関する国際約束の的確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不正競争の防止及び不正競争に係る損害賠償に関する措置等を講じ、もって国民経済の健全な発展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p> <p>第二条 (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不正競争」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一 他人の商品等表示 (人の</p>	<p>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및 이에 관한 국제약속의 정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경쟁의 방지 및 부정경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조치 등을 하여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부정경쟁”이란 다음과 같다.</p> <p>1. 타인의 상품 등 표시(사</p>

業務に係る氏名、商号、商標、標章、商品の容器若しくは包装その他の商品又は營業を表示す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として需要者の間に広く認識されているもの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等表示を使用し、又はその商品等表示を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て、他人の商品又は營業と混同を生じさせる行為

二 自己の商品等表示として他人の著名な商品等表示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ものを使用し、又はその商品等表示を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

三 他人の商品の形態(当該商品の機能を確保するために不可欠な形態を除く。)を模倣した商品を譲渡し、貸し渡し、譲渡若しくは貸

람의 업무와 관련된 성명, 상호, 상표, 포장, 상품의 용기나 포장, 그 밖의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등 표시를 사용 또는 그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2. 자기의 상품 등 표시로서 타인의 유명한 상품 등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또는 그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품의 형태(해당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형태를 제외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양도나 대여를

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又は輸入する行為

四 窃取、詐欺、強迫その他の不正の手段により営業秘密を取得する行為（以下「営業秘密不正取得行為」という。）又は営業秘密不正取得行為により取得した営業秘密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秘密を保持しつつ特定の者に示すことを含む。次号から第九号まで、第十九条第一項第六号、第二十一条及び附則第四条第一号において同じ。）

五 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取得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若しくは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いで営業秘密を取得し、又はその取得した営業秘密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

六 その取得した後に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取得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又は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いでその取得した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する行為

위하여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4. 절도·사기·강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이하 “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라 한다) 또는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로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5호부터 제19조제1항제6호, 제21조 및 부칙 제4조제1호에서 같다)

5. 그 영업 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고 영업 비밀을 취득하거나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취득한 후에 그 영업 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七 営業秘密を保有する事業者（以下「営業秘密保有者」という。）からその営業秘密を示された場合におい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する行為

八 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同号に規定する目的でその営業秘密を開示する行為又は秘密を守る法律上の義務に違反してその営業秘密を開示する行為をいう。以下同じ。）であること若しくは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若しくは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いで営業秘密を取得し、又はその取得した営業秘密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

九 その取得した後に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があったこと若しくは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が

7. 영업 비밀을 보유한 사업자(이하 “영업비밀 보유자”라 한다)가 그 영업 비밀을 공개한 경우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8. 그 영업 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제7호의 경우에 동호에 따른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 또는 비밀을 준수할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그 영업 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 비밀을 취득하거나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9. 취득한 후에 그 영업 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가 있었던 사실이나 그 영업 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가

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又は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いでその取得した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する行為

十 第四号から前号までに掲げる行為（技術上の秘密（営業秘密のうち、技術上の情報であ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使用する行為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不正使用行為」という。）により生じた物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当該物を譲り受けた者（その譲り受けた時に当該物が不正使用行為により生じた物であることを知らず、かつ、知らないことにつき重大な過失がない者に限る。）が当該物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を除く。）

十一 窃取、詐欺、強迫その他の不正の手段により限定

개입한 사실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또는 공개하는 행위

10.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위[기술상 비밀(영업 비밀 중 기술상의 정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부정사용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발생한 물건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해당 물건을 양도받은 자(양도받은 때에 해당 물건이 부정사용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건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가 해당 물건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1. 절취(窃取), 사기, 강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提供データを取得する行為
 (以下「限定提供データ不正取得行為」という。)又は限定提供データ不正取得行為により取得した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

十二 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取得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限定提供データを取得し、又はその取得した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

十三 その取得した後に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取得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その取得した限定提供データを開示する行為

十四 限定提供データを保有する事業者(以下「限定提供データ保有者」という。)からその限定提供データを示された場合におい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限定提供データ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する行為(その限定提供データの管理に係る任務

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이하 “한정제공데이터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한정제공데이터 부정취득행위로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2.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취득행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면서 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3. 그 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한 후에 한정제공데이터 부정취득행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공개하는 행위

14. 한정제공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이하 “한정제공데이터 보유자”라 한다)가 그 한정제공데이터를 제시한 경우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한정제공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그 한정제공데이터의 관리와 관련된 임무에 위반

に違反して行うものに限る。
 。) 又は開示する行為
 十五 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同号に規定する目的でその限定提供データを開示する行為をいう。以下同じ。)であること若しくは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限定提供データを取得し、又はその取得した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
 十六 その取得した後に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があったこと又は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その取得した限定提供データを開示する行為
 十七 営業上用いられている技術的制限手段(他人が特定の者以外の者に影像若しくは音の視聽、プ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は情報(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

하여 이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공개하는 행위
 15.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공개행위(제14호의 경우에 동호에 따른 목적으로 그 한정제공데이터를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공개행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면서 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6. 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한 후에 한정제공데이터 부정공개행위가 있었던 사실 또는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공개행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면서 그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를 공개하는 행위
 17. 영업상 이용되는 기술적 제한수단[타인이 특정인 외의 사람에게 영상이나 음(音)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전자적 기록(전자적(電子的) 방식, 자기

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に記録されたものに限る。以下この号、次号及び第八項において同じ。)の処理又は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の記録をさせないために用いているものを除く。)により制限されている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プ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は情報の処理又は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の記録(以下この号において「影像の視聴等」という。)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より可能とする機能を有する装置(当該装置を組み込んだ機器及び当該装置の部品一式であつて容易に組み立て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含む。)、当該機能を有するプログラム(当該プログラムが他のプログラムと組み合わせられたものを含む。)若しくは指令符号(電子計算機に対す

적(磁氣的) 방식, 그 밖의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에 기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제18호 및 제8항에서 같다}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를 기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제한된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의 기록(이하 이 호에서 “영상의 시청 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해당 장치를 장착한 기기 및 해당 장치의 부품 세트로서 용이하게 조립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이나 명령 부호(컴퓨터에 대한 명령으로서 해당 명령으로 하나의 결과를 얻을

る指令であって、当該指令のみによって一の結果を得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を記録した記録媒体若しくは記憶した機器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若しくは輸入し、若しくは当該機能を有するプログラム若しくは指令符号を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当該装置又は当該プログラムが当該機能以外の機能を併せて有する場合には、影像の視聴等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 より可能とする用途に供するために 行うものに限る。)又は影像の視聴等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 より可能とする役務を提供する行為

十八 他人が特定の者以外の者に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プ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は情報の処理又は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の記録をさせないために営業上用いている技術的制限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18호에서 같다)를 기록한 기록 매체나 저장한 기기를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나 명령 부호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해당 장치 또는 프로그램에 해당 기능 외의 기능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영상의 시청 등을 그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영상의 시청 등을 그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18. 타인이 특정인 외의 사람에게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를 기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상 이용하는 기술적 제한수단

手段により制限されている
 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プ
 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は情
 報の処理又は影像、音、プ
 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の記
 録（以下この号において
 「影像の視聴等」という
 。）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
 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より
 可能とする機能を有する装
 置（当該装置を組み込んだ
 機器及び当該装置の部品一
 式であって容易に組み立て
 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含む
 。）、当該機能を有するプ
 ログラム（当該プログラム
 が他のプログラムと組み合
 わされたものを含む。）若
 しくは指令符号を記録した
 記録媒体若しくは記憶した
 機器を当該特定の者以外の
 者に譲渡し、引き渡し、譲
 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
 展示し、輸出し、若しくは
 輸入し、若しくは当該機能
 を有するプログラム若しく
 は指令符号を電気通信回線
 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当
 該装置又は当該プログラム
 が当該機能以外の機能を併
 せて有する場合にあっては

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영상
 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
 의 정보의 기록(이하 이 호
 에서 “영상의 시청 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술적 제한
 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해당 장치를 장
 착한 기기 및 해당 장치의
 부품 세트로서 용이하게 조
 립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다),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
 그램(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된 것을 포
 함한다), 명령 부호를 기록
 한 기록 매체나 저장한 기
 기를 해당 특정인 외의 사
 람에게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 또
 는 수입하거나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나 명령 부
 호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
 여 제공하는 행위(해당 장
 치 또는 해당 프로그램에
 해당 기능 외의 기능이 동
 시에 있는 경우에는 영상의
 시청 등을 그 기술적 제한
 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
 써 가능하게 하는 용도로

、影像の視聽等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より可能とする用途に供するために行うものに限る。) 又は影像の視聽等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より可能とする役務を提供する行為
 十九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他人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他人の特定商品等表示(人の業務に係る氏名、商号、商標、標章その他の商品又は役務を表示するものをいう。)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ドメイン名を使用する権利を取得し、若しくは保有し、又はそのドメイン名を使用する行為

二十 商品若しくは役務若しくはその広告若しくは取引に用いる書類若しくは通信にその商品の原産地、品質、内容、製造方法、用途若しくは数量若しくはその役務の質、内容、用途若しくは数量について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をし、又はその表示を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영상의 시청 등을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19.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특정상품 등 표시(사람의 업계와 관련된 성명, 상호, 상표, 포장,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명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또는 그 도메인명을 사용하는 행위

20. 상품, 서비스 또는 그 광고나 거래에 이용하는 서류나 통신에 그 상품의 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나 수량 또는 그 서비스의 질, 내용, 용도나 수량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그 표시를 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若しくはその表示をして役務を提供する行為

二十一 競争関係にある他人の営業上の信用を害する虚偽の事実を告知し、又は流布する行為

二十二 파리条約（商標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二百二十七号）第四条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パリ条約をいう。）の同盟国、世界貿易機関の加盟国又は商標法条約の締約国において商標に関する権利（商標権に相当する権利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単に「権利」という。）を有する者の代理人若しくは代表者又はその行為の日前一年以内に代理人若しくは代表者であった者が、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その権利を有する者の承諾を得ないでその権利に係る商標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標をその権利に係る商品若しくは役務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若しくは役務に使用し、又は当該商

통하여 제공하거나 그 표시를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1.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해치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22. 파리 조약[「상표법」(소화34<1959>년 법률 제 127호)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리 조약을 말한다]의 가맹국,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 또는 상표법조약의 체결국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상표권에 해당하는 권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권리”라 한다)를 가지는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리를 가지는 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와 관련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권리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나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한 그 권

標を使用したその権利に係る商品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若しくは当該商標を使用してその権利に係る役務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役務を提供する行為

2 この法律において「商標」とは、商標法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商標をいう。

3 この法律において「標章」とは、商標法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標章をいう。

4 この法律において「商品の形態」とは、需要者が通常の用法に従った使用に際して知覚によって認識することができる商品の外部及び内部の形状並びにその形状に結合した模様、色彩、光沢及び質感をいう。

5 この法律において「模倣する」とは、他人の商品の形態に依拠して、これと実質的に同一の形態の商品を作り出すことをいう。

6 この法律において「営業秘

리와 관련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그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② 이 법에서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표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상품의 형태”란 수요자가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때에 지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품의 외부 및 내부의 형상, 그 형상에 결합한 모양, 색채, 광택 및 질감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모방하다”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영업 비밀”이

密」とは、秘密として管理されている生産方法、販売方法その他の事業活動に有用な技術上又は営業上の情報であって、公然と知られていないものをいう。

7 この法律において「限定提供データ」とは、業として特定の者に提供する情報として電磁的方法（電子的方法、磁気的方法その他の知覚によっ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法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により相当量蓄積され、及び管理されている技術上又は営業上の情報（秘密として管理されているものを除く。）をいう。

8 この法律において「技術的制限手段」とは、電磁的方法により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プ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は情報の処理又は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の記録を制限する手段であって、視聴等機器（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プ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は情報の処理又は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の記録のために用いられる機器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

란 비밀로 관리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한정제공데이터”란 업으로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법[전자적(電子的) 방법, 자기적(磁氣的) 방법, 그 밖에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 제8항에서 같다]으로 상당량 축적되고 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비밀로 관리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기술적 제한수단”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의 기록을 제한하는 수단으로서 시청 등 기기(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의 기록을 위하여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특정 반응

同じ。)が特定の反応をする信号を記録媒体に記録し、若しくは送信する方式又は視聴等機器が特定の変換を必要とするよう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を変換して記録媒体に記録し、若しくは送信する方式によるものをいう。

9 この法律において「プログラム」とは、電子計算機に対する指令であって、一の結果を得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組み合わされたものをいう。

10 この法律において「ドメイン名」とは、インターネットにおいて、個々の電子計算機を識別するために割り当てられる番号、記号又は文字の組合せに対応する文字、番号、記号その他の符号又はこれらの結合をいう。

11 この法律にいう「物」には、プログラムを含むものとする。

第二章 差止請求、損害賠償等

第三条 (差止請求権)

不正競争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

을 하는 신호를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 또는 시청 등 기기가 특정 변환을 필요로 하도록 영상, 음, 프로그램, 그 밖의 정보를 변환하여 기록 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프로그램”이란 컴퓨터에 대한 명령으로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편성된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도메인명”이란 인터넷에서 개개의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하여 할당되는 번호, 기호 또는 문자의 조합에 대응하는 문자, 번호, 기호, 그 밖의 부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물건”이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제2장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

제3조 (금지청구권)

① 부정경쟁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

るおそれがある者は、そ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する者又は侵害するおそれがある者に対し、その侵害の停止又は予防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不正競争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に際し、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物（侵害の行為により生じた物を含む。第五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の廃棄、侵害の行為に供した設備の除却その他の侵害の停止又は予防に必要な行為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条 (損害賠償)

故意又は過失により不正競争を行って他人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した者は、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めに任ずる。ただし、第十五条の規定により同条に規定する権利が消滅した後にその営業秘密又は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する行為によって生じた損害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정경쟁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 침해의 행위를 조성한 물건(침해의 행위로 발생한 물건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에서 같다)의 폐기, 침해의 행위에 제공한 설비의 제거, 그 밖의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을 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동조에 따른 권리가 줄어들 후에 그 영업비밀 또는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五条 (損害の額の推定等)

第二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十六号まで又は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同項第四号から第九号までに掲げるものにあつては、技術上の秘密に関するものに限る。)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た者

(以下この項において「被侵害者」という。)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の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物を譲渡したときは、その譲渡した物の数量(以下この項において「譲渡数量」という。)に、被侵害者がその侵害の行為がなければ販売することができた物の単位数量当たりの利益の額を乗じて得た額を、被侵害者の当該物に係る販売その他の行為を行う能力に応じた額を超えない限度において、被侵害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譲渡数量の全部又は一部に相当する数量を被侵害者が販売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する事情があるとき

제5조 (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22호의 부정경쟁(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상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하 이 항에서 “피침해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자가 그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한 물건의 수량(이하 이 항에서 “양도수량”이라 한다)에 피침해자가 그 침해 행위가 없으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 당 이익 금액을 곱하여 얻은 액수를 피침해자의 해당 물건과 관련된 판매, 그 밖의 행위를 할 능력에 따른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피침해자가 입은 침해의 액수로 할 수 있다. 다만, 양도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수량을 피침해자가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정에

は、当該事情に相当する数量に応じた額を控除するものとする。

2 不正競争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た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は、その利益の額は、そ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た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3 第二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九号まで、第十一号から第十六号まで、第十九号又は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た者は、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した者に対し、次の各号に掲げる不正競争の区分に応じて当該各号に定める行為に対し受けるべき金銭の額に相当する額の金銭を、自己が受けた損害の額としてその賠償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第二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 当該侵害に係る商品等表示の

상당하는 수량에 따른 액수를 공제한다.

② 부정경쟁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자가 그 침해 행위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 금액은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제19호 또는 제22호의 부정경쟁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정경쟁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받아야 할 금전의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가 입은 손해액으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상품 등 표시

<p>使用</p> <p>二 第二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不正競争 当該侵害に係る商品の形態の使用</p> <p>三 第二条第一項第四号から第九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 当該侵害に係る営業秘密の使用</p> <p>四 第二条第一項第十一号から第十六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 当該侵害に係る限定提供データの使用</p> <p>五 第二条第一項第十九号に掲げる不正競争 当該侵害に係るドメイン名の使用</p> <p>六 第二条第一項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 当該侵害に係る商標の使用</p> <p>4 前項の規定は、同項に規定する金額を超える損害の賠償の請求を妨げ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した者に故意又は重大な過失がなかったときは、裁判所は、損害の賠償の額を定めるについて、これを参酌することができる。</p> <p>第五条之二 (技術上の秘密を取得した者の当該技術上の秘密を使用する行為等の推定)</p>	<p>의 사용</p> <p>2. 제2조제1항제3호의 부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상품의 형태의 사용</p> <p>3.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영업비밀의 사용</p> <p>4. 제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부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한정제공 데이터의 사용</p> <p>5. 제2조제1항제19호의 부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도메인명의 사용</p> <p>6. 제2조제1항제22호의 부정경쟁: 해당 침해와 관련된 상표의 사용</p> <p>④ 제3항은 동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침해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때에는 재판소는 침해배상액을 정할 때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p> <p>제5조의2 (기술상의 비밀을 취득한 자의 해당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의 추정)</p>
---	--

技術上の秘密（生産方法その他政令で定める情報に係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第二条第一項第四号、第五号又は第八号に規定する行為（営業秘密を取得する行為に限る。）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その行為をした者が当該技術上の秘密を使用する行為により生ずる物の生産その他技術上の秘密を使用したことが明らかな行為として政令で定める行為（以下この条において「生産等」という。）をしたときは、その者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規定する行為（営業秘密を使用する行為に限る。）として生産等をしたものと推定する。

第六条（具体的態様の明示義務）

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不正競争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主張する者が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のものとして主張する物又は方法の具体的態様を否認するとき

기술상의 비밀(생산방식,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행위(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를 한 자가 해당 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건의 생산, 그 밖에 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행위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생산 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그 자는 각각 해당 각호에 따른 행위(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서 생산 등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조 (구체적 양태의 명시 의무)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부정경쟁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침해 행위를 조성한 것으로 주장하는 물건 또는 방법의 구체적 상태를 부인하는 때에

は、相手方は、自己の行為の具体的態様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相手方において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七条（書類の提出等）

裁判所は、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当事者に対し、当該侵害行為について立証するため、又は当該侵害の行為による損害の計算をするため必要な書類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書類の所持者においてその提出を拒む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裁判所は、前項本文の申立てに係る書類が同項本文の書類に該当するかどうか又は同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正当な理由があるかどうかの判断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書類の所持者にその提示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何人も、その提示された書類の開

는 상대방은 자기 행위의 구체적 상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분명히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서류의 제출 등)

① 재판소는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또는 해당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소는 제1항 본문의 신청과 관련된 서류가 동항 본문의 서류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 소지자에게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제시된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지 못한다.

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

3 裁判所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第一項本文の申立てに係る書類が同項本文の書類に該当するかどうか又は同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正当な理由があるかどうかについて前項後段の書類を開示してその意見を聴くことが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等（当事者（法人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代表者）又は当事者の代理人（訴訟代理人及び補佐人を除く。）、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をいう。以下同じ。）、訴訟代理人又は補佐人に対し、当該書類を開示することができる。

4 裁判所は、第二項の場合において、同項後段の書類を開示して専門的な知見に基づく説明を聴くことが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の同意を得て、民事訴訟法（平成八年法律第百九号）第一編第五章第二節第一款に規定する専門委員に対し、当該書類を開示することができる。

5 前各項の規定は、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ける当該侵害行

③ 재판소는 제2항의 경우에 제1항 본문의 신청과 관련된 서류가 동항 본문의 서류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제2항 후단의 서류를 공개하여 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등[당사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소송대리인 및 보좌인을 제외한다), 사용인, 그 밖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게 해당 서류를 개시할 수 있다.

④ 재판소는 제2항의 경우에 동항 후단의 서류를 공개하여 전문적인 식견에 따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민사소송법」(평성 8<1996>년 법률 제109호) 제1편제5장제2절제1관에 따른 전문위원에게 해당 서류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為について立証するため必要な検証の目的の提示について準用する。

第八条 (損害計算のための鑑定)

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裁判所が当該侵害の行為による損害の計算をするため必要な事項について鑑定を命じたときは、当事者は、鑑定人に対し、当該鑑定をするため必要な事項について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九条 (相当な損害額の認定)

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損害が生じたことが認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損害額を立証するために必要な事実を立証することが当該事実の性質上極めて困難であるときは、裁判所は、口頭弁論の全趣旨及び証拠調べの結果に基づき、相当な損害額を認定することができる。

해당 침해 행위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증의 목적 제시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8조 (손해계산을 위한 감정)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소가 해당 침해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정을 명령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해당 감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한 사실의 입증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재판소는 구두변론의 전취지(全趣旨) 및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第十条 (秘密保持命令)

裁判所は、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その当事者が保有する営業秘密について、次に掲げる事由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ことにつき疎明があった場合に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決定で、当事者等、訴訟代理人又は補佐人に対し、当該営業秘密を当該訴訟の追行の目的以外の目的で使用し、又は当該営業秘密に係るこの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者以外の者に開示してはならない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申立ての時までに当事者等、訴訟代理人又は補佐人が第一号に規定する準備書面の閲読又は同号に規定する証拠の取調べ若しくは開示以外の方法により当該営業秘密を取得し、又は保有してい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既に提出され若しくは提出されるべき準備書面に当事者の保有する営業秘密が記載され、又は既に取り調べられ若しくは取り調べられるべき証拠 (第七条第

제10조 (비밀유지명령)

① 재판소는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소명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당사자 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수행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과 관련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까지 당사자 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이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 또는 증거조사나 공개 외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되거나 제출되어야 하는 준비서면에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이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이미 조사되거나 조사되어야 하는 증거(제7조제3항에 따라

<p>三項の規定により開示された書類又は第十三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開示された書面を含む。)の内容に当事者の保有する営業秘密が含まれること。</p> <p>二 前号の営業秘密が当該訴訟の追行の目的以外の目的で使用され、又は当該営業秘密が開示されることにより、当該営業秘密に基づく当事者の事業活動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り、これを防止するため当該営業秘密の使用又は開示を制限する必要があること。</p> <p>2 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以下「秘密保持命令」という。)の申立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一 秘密保持命令を受けべき者</p> <p>二 秘密保持命令の対象となるべき営業秘密を特定するに足りる事実</p> <p>三 前項各号に掲げる事由に該当する事実</p> <p>3 秘密保持命令が発せられた場合には、その決定書を秘密保持命令を受けた者に送達し</p>	<p>공개된 서류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된 서면을 포함한다) 내용에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이 포함될 것</p> <p>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의 수행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해당 영업비밀이 공개됨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따른 당사자의 사업활동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p> <p>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p> <p>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p> <p>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p> <p>③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p>
--	---

なければならぬ。

4 秘密保持命令は、秘密保持命令を受けた者に対する決定書の送達がされた時から、効力を生ずる。

5 秘密保持命令の申立てを却下した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十一条 (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

秘密保持命令の申立てをした者又は秘密保持命令を受けた者は、訴訟記録の存する裁判所(訴訟記録の存する裁判所がない場合にあつては、秘密保持命令を発した裁判所)に対し、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要件を欠くこと又はこれを欠くに至ったことを理由として、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があつた場合には、その決定書をその申立てをした者及び相手方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소송기록이 존재하는 재판소(소송기록이 존재하는 재판소가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재판소)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더이상 충족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4 秘密保持命令を取り消す裁判は、確定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5 裁判所は、秘密保持命令を取り消す裁判をした場合において、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の申立てをした者又は相手方以外に当該秘密保持命令が発せられた訴訟において当該営業秘密に係る秘密保持命令を受けている者があ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直ちに、秘密保持命令を取り消す裁判をし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二条 (訴訟記録の閲覧等の請求の通知等)

秘密保持命令が発せられた訴訟(全ての秘密保持命令が取り消された訴訟を除く。)に係る訴訟記録につき、民事訴訟法第九十二条第一項の決定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事者から同項に規定する秘密記載部分の閲覧等の請求があり、かつ、その請求の手続を行った者が当該訴訟において秘密保持命令を受けていない者であ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同項の申立てをした当事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재판소는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소송에서 해당 영업비밀과 관련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의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을 제외한다)과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92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동항에 따른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청구하고, 그 청구 절차를 이행한 자가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인 때에는 재판소 서기관은 동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청구를 한 자를 제

<p>者（その請求をした者を除く。第三項において同じ。）に対し、その請求後直ちに、その請求があっ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2 前項の場合において、裁判所書記官は、同項の請求があった日から二週間を経過する日までの間（その請求の手続を行った者に対する秘密保持命令の申立てがその日までにされ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が確定するまでの間）、その請求の手続を行った者に同項の秘密記載部分の閲覧等をさせてはならない。</p> <p>3 前二項の規定は、第一項の請求をした者に同項の秘密記載部分の閲覧等をさせることについて民事訴訟法第九十二条第一項の申立てをした当事者の全ての同意があるときは、適用しない。</p>	<p>외한다.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후 즉시 그 청구가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재판소 서기관은 동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가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그 청구 절차를 이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날까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그 청구 절차를 이행한 자에게 동항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의 청구를 한 자에게 동항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92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第十三条 (当事者尋問等の公開停止)</p> <p>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ける当事者等が、その侵害の有無についての判断の基礎となる事</p>	<p>제13조 (당사자 심문 등의 공개정지)</p> <p>①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당사자 등이 그 침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p>

項であって当事者の保有する営業秘密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当事者本人若しくは法定代理人又は証人として尋問を受ける場合においては、裁判所は、裁判官の全員一致により、その当事者等が公開の法廷で当該事項について陳述をすることにより当該営業秘密に基づく当事者の事業活動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ことから当該事項について十分な陳述をすることができず、かつ、当該陳述を欠くことにより他の証拠のみによっては当該事項を判断の基礎とすべき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の有無についての適正な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るときは、決定で、当該事項の尋問を公開しないで行う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前項の決定をするに当たっては、あらかじめ、当事者等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裁判所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等にその陳述すべき事項の要領を記載した書

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 또는 증인으로서 심문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그 당사자 등이 공개 법정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기초한 당사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없으며, 해당 진술을 생략함으로써 다른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항을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할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의 유무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사항의 심문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진행할 수 있다.

② 재판소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재판소는 제2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그 진술하여야 하는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面の提示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何人も、その提示された書面の開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

4 裁判所は、前項後段の書面を開示してその意見を聴くことが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等、訴訟代理人又は補佐人に対し、当該書面を開示することができる。

5 裁判所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当該事項の尋問を公開しないで行うときは、公衆を退廷させる前に、その旨を理由とともに言い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当該事項の尋問が終了したときは、再び公衆を入廷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四条 (信用回復の措置)

故意又は過失により不正競争を行って他人の営業上の信用を害した者に対しては、裁判所は、その営業上の信用を害された者の請求により、損害の賠償に代え、又は損害の賠償とともに、その者の営業上の信用を回復するのに必要な措置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서면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누구나 그 제시된 서면의 공개를 요구하지 못한다.

④ 재판소는 제3항 후단의 서면을 공개하여 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게 해당 서면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재판소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항의 심문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진행할 때에는 방청객을 퇴정시키기 전에 그 취지를 이유와 함께 선고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의 심문이 종료된 때에는 다시 방청객을 입정시켜야 한다.

제14조 (신용회복조치)

재판소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을 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한 자에게는 그 영업상의 신용에 피해를 입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대신하거나 손해배상과 아울러 그 자의 영업상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第十五条 (消滅時効)

第二条第一項第四号から第九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のうち、営業秘密を使用する行為に対する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侵害の停止又は予防を請求する権利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時効によって消滅する。

一 その行為を行う者がその行為を継続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行為により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営業秘密保有者がその事実及びその行為を行う者を知った時から三年間行わないとき。

二 その行為の開始の時から二十年を経過したとき。

2 前項の規定は、第二条第一項第十一号から第十六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のうち、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する行為に対する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侵害の停止又は予防を請求する権利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項第一号中「営業秘密保有者」とあるのは、「限定提供データ保有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제15조 (소멸시효)

①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정경쟁 중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3조제1항에 따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는 다음의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1. 그 행위를 하는 자가 그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그 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사실 및 그 행위를 하는 자를 안 때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한 때

2. 그 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때

② 제1항은 제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부정경쟁 중 한정제공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3조제1항에 따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항제1호 중 “영업비밀보유자”는 “한정제공데이터보유자”로 한다.

第三章 國際約束に基づく禁止行為 제3장 국제약속에 따른 금지행위

第十六条 (外国の国旗等の商業上の使用禁止)

何人も、外国の国旗若しくは国の紋章その他の記章であつ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以下「外国国旗等」という。)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もの(以下「外国国旗等類似記章」という。)を商標として使用し、又は外国国旗等類似記章を商標として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若しくは外国国旗等類似記章を商標として使用して役務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その外国国旗等の使用の許可(許可に類する行政処分を含む。以下同じ。)を行う権限を有する外国の官庁の許可を受け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何人も、商品の原産地を

제16조 (외국 국기 등의 상업상 사용 금지)

① 누구든지 외국 국기나 국가의 문장(紋章), 그 밖의 기장(記章)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외국 국기 등”이라 한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하 “외국 국기 등 유사기장”이라 한다)을 상표로서 사용하거나 외국 국기 등 유사기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외국 국기 등 유사기장을 상표로서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외국 국기 등의 사용 허가(허가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할 권한을 가진 외국 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것 외에 누구든지 상품의 원산지를 오인

誤認させるような方法で、同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外国の国の紋章（以下「外国紋章」という。）を使用し、又は外国紋章を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若しくは外国紋章を使用して役務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その外国紋章の使用の許可を行う権限を有する外国の官庁の許可を受け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3 何人も、外国の政府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の監督用若しくは証明用の印章若しくは記号であっ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以下「外国政府等記号」という。）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もの（以下「外国政府等類似記号」という。）をその外国政府等記号が用いられている商品若しくは役務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若しくは役務の商標として使用し、又は外国政府等類似記号を当該商標として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항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외국 국가의 문장(이하 “외국 문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외국 문장을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외국 문장으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외국 문장의 사용 허가를 할 권한을 가진 외국 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외국 의 정부나 지방공공단체의 감독용, 증명용 인장이나 기호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외국정부 등 기호”라 한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하 “외국정부 등 유사기호”라 한다)을 그 외국정부 등 기호가 이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표로서 사용하거나 외국정부 등 유사기호를 해당 상표로서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

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若しくは外国政府等類似記号を当該商標として使用して役務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その外国政府等記号の使用の許可を行う権限を有する外国の官庁の許可を受け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十七条 (국제기관의 표장의 상업상의 사용 금지)

何人も、その国際機関（政府間の国際機関及び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国際機関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と関係があると誤認させるような方法で、国際機関を表示する標章であっ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と同若しくは類似のもの（以下「国際機関類似標章」という。）を商標として使用し、又は国際機関類似標章を商標として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若しくは国際機関類似標章を商標として使用して役務

하거나 외국정부 등 유사기호를 해당 상표로서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외국정부 등 기호의 사용을 허가할 권한을 가진 외국 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국제기관의 표장의 상업상 사용 금지)

누구나 그 국제기구(정부간 국제기구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기구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하 “국제기구 유사표장”이라 한다)을 상표로서 사용하거나 국제기구 유사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국제기구 유사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この国際機関の許可を受け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十八条 (外国公務員等に対する不正の利益の供与等の禁止)

何人も、外国公務員等に対し、国際的な商取引に関して営業上の不正の利益を得るために、その外国公務員等に、その職務に関する行為をさせ若しくはさせないこと、又はその地位を利用して他の外国公務員等にその職務に関する行為をさせ若しくはさせないようにあっせんを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金銭その他の利益を供与し、又はその申込み若しくは約束をしてはならない。

2 前項において「外国公務員等」とは、次に掲げる者をいう。

- 一 外国の政府又は地方公共団体の公務に従事する者
- 二 公共の利益に関する特定の事務を行うために外国の特別の法令により設立されたものの事務に従事する者

다. 다만, 이 국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 이익의 공여 등 금지)

① 누구나 외국공무원 등에게 국제적인 상거래에 관하여 영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알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제안이나 약속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외국공무원 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외국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 2. 공공의 이익에 관한 특정 사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의 특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三 一又は二以上の外国の政府又は地方公共団体により、発行済株式のうち議決権のある株式の総数若しくは出資の金額の総額の百分の五十を超える当該株式の数若しくは出資の金額を直接に所有され、又は役員

(取締役、監査役、理事、監事及び清算人並びにこれら以外の者で事業の経営に従事しているものをいう。)の過半数を任命され若しくは指名されている事業者であって、その事業の遂行に当たり、外国の政府又は地方公共団体から特に権益を付与されているものの事務に従事する者その他これに準ずる者として政令で定める者

四 国際機関(政府又は政府間の国際機関によって構成される国際機関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の公務に従事する者

五 外国の政府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又は国際機関の権限に属する事務であって、これらの機関から委任されたものに従事する者

3.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외국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주식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총수나 출자 금액의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수나 출자 금액을 직접 소유하거나 임원(주식회사 및 법인의 이사, 주식회사 및 법인의 감사, 청산인 및 이들 외에 사업의 경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의 과반수가 임명되거나 지명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 수행 시에 외국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특별히 권익을 부여한 사업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

4. 국제기구(정부 또는 정부간 국제기구로 구성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제5호에서 같다)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5. 외국정부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국제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이들 기관이 위임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第四章 雜則

第十九条 (適用除外等)

第三条から第十五条まで、第二十一条(第二項第七号に係る部分を除く。)及び第二十二條の規定は、次の各号に掲げる不正競争の区分に応じて当該各号に定める行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 一 第二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第二十号及び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 商品若しくは營業の普通名称(ぶどうを原料又は材料とする物の原産地の名称であって、普通名称となったものを除く。)若しくは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若しくは營業について慣用されている商品等表示(以下「普通名称等」と総称する。)を普通に用いられる方法で使用し、若しくは表示をし、又は普通名称等を普通に用いられる方法で使用し、若しくは表示を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

제4장 잡칙

제19조 (적용제외 등)

①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제2항제7호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22조는 다음 각 호의 부정경쟁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0호 및 제22호의 부정경쟁: 상품이나 영업의 보통명칭(포도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는 물건의 원산지 명칭으로서 보통명칭이 된 것을 제외한다)이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영업에 대하여 관용되는 상품 등 표시(이하 “보통명칭 등”이라 한다)를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표시, 또는 보통명칭 등을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표시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제2조제1항제20호 및 제22호

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同項第二十号及び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の場合にあっては、普通名称等を普通に用いられる方法で表示をし、又は使用して役務を提供する行為を含む。）

二 第二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及び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 自己の氏名を不正の目的（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他人に損害を加える目的その他の不正の目的をいう。以下同じ。）でなく使用し、又は自己の氏名を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同号に掲げる不正競争の場合にあっては、自己の氏名を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て役務を提供する行為を含む。）

三 第二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不正競争 他人の商品等表示が需要者の間に広く認識される前からその商品等

의 부정경쟁의 경우에는 보통명칭 등을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2호의 부정경쟁: 자기의 성명을 부정한 목적(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그 밖의 부정한 목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없이 사용하거나 자기의 성명을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동호의 부정경쟁의 경우에는 자기의 성명을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제2조제1항제1호의 부정경쟁: 타인의 상품 등 표시가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상품 등

表示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等表示を使用する者又はその商品等表示に係る業務を承継した者がその商品等表示を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又はその商品等表示を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

四 第二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 他人の商品等表示が著名になる前からその商品等表示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等表示を使用する者又はその商品等表示に係る業務を承継した者がその商品等表示を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又はその商品等表示を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

五 第二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不正競争 次のいずれかに掲げる行為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하는 자 또는 그 상품 등 표시와 관련된 업무를 승계한 자가 그 상품 등 표시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거나 또는 그 상품 등 표시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4. 제2조제1항제2호의 부정 경쟁: 타인의 상품 등 표시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그 상품 등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하는 자 또는 그 상품 등 표시와 관련된 업무를 승계한 자가 그 상품 등 표시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거나 그 상품 등 표시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5. 제2조제1항제3호의 부정 경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イ 日本国内において最初に販売された日から起算して三年を経過した商品について、その商品の形態を模倣した商品を譲渡し、貸し渡し、譲渡若しくは貸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又は輸入する行為

ロ 他人の商品の形態を模倣した商品を譲り受けた者（その譲り受けた時にその商品が他人の商品の形態を模倣した商品であることを知らず、かつ、知らないことにつき重大な過失がない者に限る。）がその商品を譲渡し、貸し渡し、譲渡若しくは貸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又は輸入する行為

六 第二条第一項第四号から第九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取引によって営業秘密を取得した者（その取得した時に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であること又は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取得行為若しくは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らず、かつ、知らないこと

가. 일본 국내에서 최초로 판매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나.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받은 자(상품을 양도받은 때에 그 상품이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가 그 상품을 양도·대여, 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6.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정경쟁: 거래에 따라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영업비밀을 취득한 때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인 사실 또는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나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

につき重大な過失がない者に限る。)がその取引によって取得した権原の範囲内においてその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する行為

七 第二条第一項第十号に掲げる不正競争 第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同項に規定する権利が消滅した後にその営業秘密を使用する行為により生じた物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
八 第二条第一項第十一号から第十六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 次のいずれかに掲げる行為

イ 取引によって限定提供データを取得した者(その取得した時に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であること又は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取得行為若しくは限定提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らない者に限る。)がその取引によって取得した権原の範囲内にお

실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가 그 거래에 따라 취득한 권원의 범위 내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7. 제2조제1항제10호의 부정경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항에 따른 권리가 소멸한 후에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건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8. 제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부정경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거래에 따라 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한 자(한정제공데이터를 취득한 때에 그 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개시행위인 사실 또는 그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 한정제공데이터 부정취득행위나 한정제공데이터 부정개시행위가 개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자로 한정한다)가 그 거래에 따라 취득한 권원

<p>いてその限定提供データを 開示する行為</p> <p>ロ その相当量蓄積されてい る情報が無償で公衆に利用 可能となっている情報と同 一の限定提供データを取得 し、又はその取得した限定 提供データを使用し、若し くは開示する行為</p> <p>九 第二条第一項第十七号及 び第十八号に掲げる不正競 争 技術的制限手段の試験又 は研究のために用いられる 同項第十七号及び第十八号 に規定する装置、これらの 号に規定するプログラム若 しくは指令符号を記録した 記録媒体若しくは記憶した 機器を譲渡し、引き渡し、 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 に展示し、輸出し、若しく は輸入し、若しくは当該プ ログラム若しくは指令符号 を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 供する行為又は技術的制限 手段の試験又は研究のため に行われるこれらの号に規 定する役務を提供する行為</p> <p>2 前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 げる行為によって営業上の利 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p>	<p>의 범위 내에서 그 한정제 공데이터를 공개하는 행위 나. 상당량 축적된 정보가 무상으로 공중이 이용 가 능한 정보와 동일한 한정 제공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한정제공데이터 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p> <p>9. 제2조제1항제17호 및 제 18호의 부정경쟁: 기술적 제한수단의 시험 또는 연구 를 위하여 이용되는 동항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장치, 프로그램이나 명령 부 호를 기록한 기록매체나 저 장한 기기를 양도·인도, 양 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 출·수입하거나 해당 프로그 램이나 명령 부호를 전기통 신회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기술적 제한수단 의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p> <p>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 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p>
---	--

るおそれがある者は、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の区分に応じて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対し、自己の商品又は営業との混同を防ぐのに適当な表示を付すべき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前項第二号に掲げる行為
自己の氏名を使用する者
(自己の氏名を使用した商品を自ら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者を含む。)
- 二 前項第三号に掲げる行為
他人の商品等表示と同一又は類似の商品等表示を使用する者及びその商品等表示に係る業務を承継した者
(その商品等表示を使用した商品を自ら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者を含む。)

第十九条之二 (政令等への委任)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 1. 제1항제2호의 행위: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는 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한 상품을 스스로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 2. 제1항제3호의 행위: 타인의 상품 등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하는 자 및 그 상품 등 표시와 관련된 업무를 승계한 자(그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스스로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19조의2 (정령 등에의 위임)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か、没収保全と滞納処分との
手続の調整について必要な事
項で、滞納処分に関するもの
は、政令で定める。

2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
か、第三十二条の規定による
第三者の参加及び裁判に關す
る手続、第八章に規定する没
収保全及び追徴保全に關する
手続並びに第九章に規定する
国際共助手続について必要な
事項（前項に規定する事項を
除く。）は、最高裁判所規則で
定める。

第二十条 (経過措置)

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政令
又は経済産業省令を制定し、
又は改廃する場合において
は、その政令又は経済産業省
令で、その制定又は改廃に伴
い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
範囲内において、所要の経過
措置（罰則に關する経過措置
を含む。）を定めることができ
る。

第五章 罰則

第二十一条 (罰則)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

몰수 보전과 체납 처분 절차
의 조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
항으로서 체납 처분에 관한
것은 정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32조에 따른 제3자의 참가
및 재판에 관한 절차, 제8장
에 따른 몰수 보전 및 추징
보전에 관한 절차, 제9장에
따른 국제공조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제1항에 따른 사
항을 제외한다)은 「최고재판
소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정령 또는 경제
산업성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
는 경우에는 그 정령 또는 경
제산업성령으로서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p>る者は、十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二千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p> <p>一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詐欺等行為（人を欺き、人に暴行を加え、又は人を脅迫する行為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又は管理侵害行為（財物の窃取、施設への侵入、不正アクセス行為（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百二十八号）第二条第四項に規定する不正アクセス行為をいう。）その他の営業秘密保有者の管理を害する行為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により、営業秘密を取得した者</p> <p>二 詐欺等行為又は管理侵害行為により取得した営業秘密を、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使用し、又は開示した者</p> <p>三 営業秘密を営業秘密保有者から示された者であっ</p>	<p>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p> <p>1.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기 등 행위(기망,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호에서 같다) 또는 관리침해행위[재물의 절취, 시설 침입, 부정접속 행위{「부정접속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평성 11<1999>년 법률 제128호) 제2조제4항에 따른 부정접속행위를 말한다}, 그 밖의 영업비밀 보유자의 관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제2호에서 같다]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p> <p>2. 사기 등 행위 또는 관리침해행위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한 자</p> <p>3.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을 알려준 자로서 부정</p>
---	--

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営業秘密の管理に係る任務に背き、次のいずれかに掲げる方法でその営業秘密を領得した者

イ 営業秘密記録媒体等（営業秘密が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文書、図画又は記録媒体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又は営業秘密が化体された物件を横領すること。

ロ 営業秘密記録媒体等の記載若しくは記録について、又は営業秘密が化体された物件について、その複製を作成すること。

ハ 営業秘密記録媒体等の記載又は記録であって、消去すべきものを消去せず、かつ、当該記載又は記録を消去したように仮装すること。

四 営業秘密を営業秘密保有者から示された者であって、その営業秘密の管理に係る任務に背いて前号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方法によ

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임무에 반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영득(領得)한 자

가.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영업비밀이 기재되거나 기록된 문서, 도화 또는 기록매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영업비밀이 구체화된 물건의 횡령

나.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의 기재나 기록 또는 영업비밀이 구체화된 물건에 대한 그 복제 작성

다.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의 기재 또는 기록으로서 소거하여야 할 것을 소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재 또는 기록을 소거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

4.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을 알려준 자로서 그 영업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p>り領得した営業秘密を、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営業秘密の管理に係る任務に背き、使用し、又は開示した者</p> <p>五 営業秘密を営業秘密保有者から示されたその役員（理事、取締役、執行役、業務を執行する社員、監事若しくは監査役又はこれらに準ずる者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又は従業者であっ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営業秘密の管理に係る任務に背き、その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した者（前号に掲げる者を除く。）</p> <p>六 営業秘密を営業秘密保有者から示されたその役員又は従業者であった者であっ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p>	<p>임무에 반하여 제3호의가²부터 다까지의 방법으로 영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임무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공개한 자</p> <p>5.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을 알려준 그 임원(법인 및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법인 및 주식회사의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제6호에서 같다) 또는 근로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임무에 반하여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자(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p> <p>6.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을 보여준 그 임원 또는 근로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영</p>
--	--

² 일본 법조문 체계는 ‘편-장-절-관-목/조-항-호’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의 명칭이 없다. 따라서, ‘~호의가, 나, 다/가, 나, 다’와 같이 번역하기로 한다.

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在職中に、その営業秘密の管理に係る任務に背いてその営業秘密の開示の申込みをし、又はその営業秘密の使用若しくは開示について請託を受けて、その営業秘密をその職を退いた後に使用し、又は開示した者（第四号に掲げる者を除く。）

七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第二号若しくは前三号の罪又は第三項第二号の罪（第二号及び前三号の罪に当たる開示に係る部分に限る。）に当たる開示によって営業秘密を取得して、その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した者

八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第二号若しくは第四号から前号までの罪又は第三項第二号の罪（第二号及び第四号から前号までの罪に当た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재직 중에 그 영업비밀의 관리와 관련된 임무에 반하여 그 영업비밀의 공개를 신청하거나 그 영업비밀의 사용이나 공개에 대하여 청탁을 받아 그 직무를 그만둔 후에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자(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7.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2호나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 또는 제3항 제2호의 죄(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공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공개에 따라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자

8.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2호나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 또는 제3항 제2호의 죄(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에 해

る開示に係る部分に限る。)に当たる開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営業秘密を取得して、その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した者

九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自己又は他人の第二号若しくは第四号から前号まで又は第三項第三号の罪に当たる行為(技術上の秘密を使用する行為に限る。以下この号及び次条第一項第二号において「違法使用行為」という。)により生じた物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た者(当該物が違法使用行為により生じた物であることの情を知らないで譲り受け、当該物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た者を除く。)

2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

당하는 공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공개가 개입한 사실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자

9.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제2호나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3항제3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위법사용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발생한 물건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한 자(해당 물건이 위법사용행위로 발생한 물건이라는 사정을 모르고 양수, 해당 물건을 양도·인도, 양도나 인도를 위하여 전시·수출·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한 자를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する者は、五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一 不正の目的をもって第二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十号に掲げる不正競争を行った者

二 他人の著名な商品等表示に係る信用若しくは名声を利用し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当該信用若しくは名声を害する目的で第二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を行った者

三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第二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不正競争を行った者

四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営業上技術的制限手段を用いている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第二条第一項第十七号又は第十八号に掲げる不正競争を行った者

五 商品若しくは役務若しくはその広告若しくは取引に用いる書類若しくは通信にその商品の原産地、品質、内容、製造方法、用途若しくは数量又はその役務の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부정한 목적으로 제2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0호의 부정경쟁을 한 자

2. 타인의 저명한 상품 등 표시와 관련된 신용이나 명성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해당 신용이나 명성을 해칠 목적으로 제2조제1항제2호의 부정경쟁을 한 자

3.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2조제1항제3호의 부정경쟁을 한 자

4.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영업상 기술적 제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2조제1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부정경쟁을 한 자

5. 상품이나 서비스, 그 광고나 거래에 이용하는 서류나 통신에 그 상품의 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나 수량 또는 그 서비스의 질, 내용, 용도나 수량

<p>質、内容、用途若しくは数量について誤認させるような虚偽の表示をした者（第一号に掲げる者を除く。）</p> <p>六 秘密保持命令に違反した者</p> <p>七 第十六条、第十七条又は第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p> <p>3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十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三千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p> <p>一 日本国外において使用する目的で、第一項第一号又は第三号の罪を犯した者</p> <p>二 相手方に日本国外において第一項第二号又は第四号から第八号までの罪に当たる使用をする目的があることの情を知って、これらの罪に当たる開示をした者</p> <p>三 日本国内において事業を行う営業秘密保有者の営業秘密について、日本国外において第一項第二号又は第四号から第八号までの罪に当たる使用をした者</p> <p>4 第一項（第三号を除く。）</p>	<p>에 대하여 오인할 수 있는 허위 표시를 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p> <p>6. 비밀유지명령에 위반한 자</p> <p>7.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제1항에 위반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p> <p>1. 일본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죄를 범한 자</p> <p>2. 상대방에게 일본 국외에서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용을 할 목적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들 죄에 해당하는 공개를 한 자</p> <p>3. 일본 국외에서 사업을 하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일본 국외에서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용을 한 자</p> <p>④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p>
---	--

<p>並びに前項第一号（第一項第三号に係る部分を除く。）、第二号及び第三号の罪の未遂は、罰する。</p> <p>5 第二項第六号の罪は、告訴がなければ公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p> <p>6 第一項各号（第九号を除く。）、第三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又は第四項（第一項第九号に係る部分を除く。）の罪は、日本国内において事業を行う営業秘密保有者の営業秘密について、日本国外においてこれらの罪を犯した者にも適用する。</p> <p>7 第二項第六号の罪は、日本国外において同号の罪を犯した者にも適用する。</p> <p>8 第二項第七号（第十八条第一項に係る部分に限る。）の罪は、刑法（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第三条の例に従う。</p> <p>9 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刑法その他の罰則の適用を妨げない。</p> <p>10 次に掲げる財産は、これを没収することができる。</p> <p>一 第一項、第三項及び第四項の罪の犯罪行為により生</p>	<p>제3항제1호(제1항제3호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제2호 및 제3호의 죄의 미수는 처벌한다.</p> <p>⑤ 제2항제6호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p> <p>⑥ 제1항 각 호(제9호를 제외한다), 제3항제1호나 제2호 또는 제4항(제1항제9호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의 죄는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일본 국외에서 이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p> <p>⑦ 제2항제6호의 죄는 일본 국외에서 동호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p> <p>⑧ 제2항제7호(제18조제1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죄는 「형법」(명치 40<1907>년 법률 제45호) 제3조의 예에 따른다.</p> <p>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형법」, 그 밖의 벌칙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p> <p>⑩ 다음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p> <p>1.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p>
---	---

じ、若しくは当該犯罪行為により得た財産又は当該犯罪行為の報酬として得た財産

二 前号に掲げる財産の果実として得た財産、同号に掲げる財産の対価として得た財産、これらの財産の対価として得た財産その他同号に掲げる財産の保有又は処分に基つき得た財産

11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百三十六号。以下「組織的犯罪処罰法」という。）第十四条及び第十五条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没収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組織的犯罪処罰法第十四条中「前条第一項各号又は第四項各号」とあるのは、「不正競争防止法第二十一条第十項各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12 第十項各号に掲げる財産を没収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又は当該財産の性質、その使用の状況、当該財産に関する犯人以外の者の権利の有無その他の事情からこれを没収することが相当でないを認

발생하거나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2. 제1호의 재산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동호의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동호의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따라 얻은 재산

⑪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 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평성11<1999>년 법률 제136호. 이하 “조직적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는 제10항에 따른 몰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조직적범죄처벌법」 제14조 중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항 각 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 제10항 각 호”로 대체한다.

⑫ 제10항 각 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때 또는 해당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해당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의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부터 이를 몰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められるときは、その価額を犯人から追徴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二條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に対して当該各号に定める罰金刑を、その人に対して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

一 前条第三項第一号（同条第一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第二号（同条第一項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係る部分に限る。）若しくは第三号（同条第一項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係る部分に限る。）又は第四項（同条第三項第一号（同条第一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第二号（同条第一項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係る部分に限る。）及び第三号（同条第一項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係る部分に限る。）に係る部分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제22조

①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근로자가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등 그 법인에 대하여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벌금형을, 그 사람에게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제1호(동조 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호(동조 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나 제3호(동조 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4항[동조 제3항제1호(동조 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호(동조 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동조 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동조 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に限る。) 十億円以下の罰金刑

二 前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第七号、第八号若しくは第九号(同項第四号から第六号まで又は同条第三項第三号(同条第一項第四号から第六号までに係る部分に限る。)の罪に係る違法使用行為(以下この号及び第三項において「特定違法使用行為」という。)をした者が該当する場合を除く。)又は第四項(同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第七号、第八号及び第九号(特定違法使用行為をした者が該当する場合を除く。)に係る部分に限る。) 五億円以下の罰金刑

三 前条第二項 三億円以下の罰金刑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当該行為者に対してした前条第二項第六号の罪に係る同条第五項の告訴は、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ても効力を生じ、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てした告訴は、当該行為者に対しても効力を生ずるものとする。

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10억엔 이하의 벌금형

2.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나 제9호 [동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동조 제3항제3호(동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죄와 관련된 위법사용행위(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특정위법사용행위”라 한다)를 한 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4항[동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특정위법사용행위를 한 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5억엔 이하의 벌금형

3. 제21조제2항: 3억엔 이하의 벌금형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행위자에게 한 제21조제6호의 죄와 관련된 동조 제5항의 고소는 그 법인 또는 사람에게도 효력이 발생하고, 그 법인 또는 사람에게 한 고소는 해당 행위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p>3 第一項の規定により前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第七号、第八号若しくは第九号（特定違法使用行為をした者が該当する場合を除く。）、第二項、第三項第一号（同条第一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第二号（同条第一項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係る部分に限る。）若しくは第三号（同条第一項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係る部分に限る。）又は第四項（同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第七号、第八号及び第九号（特定違法使用行為をした者が該当する場合を除く。）並びに同条第三項第一号（同条第一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第二号（同条第一項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係る部分に限る。）及び第三号（同条第一項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係る部分に限る。）に係る部分に限る。）の違反行為につき法人又は人に罰金刑を科する場合における時効の期間は、これらの規定の罪についての時効の期間による。</p>	<p>③ 제1항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나 제9호(특정위법사용행위를 한 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항, 제3항제1호(동조 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호(동조 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나 제3호(동조 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4항[동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특정위법사용행위를 한 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동조 제3항제1호(동조 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호(동조 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동조 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 또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의 시효 기간은 이들 규정의 죄에 대한 시효 기간에 따른다.</p>
--	--

第六章 刑事訴訟手続の特例

第二十三条 (営業秘密の秘匿決定等)

裁判所は、第二十一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の罪又は前条第一項(第三号を除く。)の罪に係る事件を取り扱う場合において、当該事件の被害者若しくは当該被害者の法定代理人又はこれらの者から委託を受けた弁護士から、当該事件に係る営業秘密を構成する情報の全部又は一部を特定させることとなる事項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されたくない旨の申出があるときは、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範囲を定めて、当該事項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しない旨の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申出は、あらかじめ、検察官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検察官は、意見を付して、これを裁判所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3 裁判所は、第一項に規定する事件を取り扱う場合におい

제6장 형사소송절차의 특례

제23조 (영업비밀의 비공개결정 등)

① 재판소는 제21조제1항, 제3항이나 제4항의 죄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죄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피해자나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의 위탁을 받은 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고 싶지 아니하다는 뜻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해당 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사전에 검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검찰관은 의견을 붙여 이를 재판소에 통지한다.

③ 재판소는 제1항에 따른 사건을 다루는 경우에 검찰관

て、検察官又は被告人若しくは弁護人から、被告人その他の者の保有する営業秘密を構成する情報の全部又は一部を特定させることとなる事項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されたくない旨の申出があるときは、相手方の意見を聴き、当該事項が犯罪の証明又は被告人の防御のために不可欠であり、かつ、当該事項が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されることにより当該営業秘密に基づく被告人その他の者の事業活動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場合であっ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範囲を定めて、当該事項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しない旨の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

4 裁判所は、第一項又は前項の決定（以下「秘匿決定」という。）をし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決定で、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秘匿決定により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しないこととされた営業秘密を構成する情報の全部又は一部を特定させることとな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고인, 그 밖의 사람이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고 싶지 아니하다는 뜻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사항이 범죄의 증명 또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필수적이며, 해당 사항이 공개 법정에서 밝혀짐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기초한 피고인, 그 밖의 사람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해당 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재판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이하 “비공개 결정”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비공개 결정에 따라 공개 법정에서 밝히지 아니하게 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

る事項をいう。以下同じ。)に係る名称その他の表現に代わる呼称その他の表現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5 裁判所は、秘匿決定をした事件について、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しないことが相当でないことを認めるに至ったとき、又は刑事訴訟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三十一号）第三百十二条の規定により罰条が撤回若しくは変更されたため第一項に規定する事件に該当しなくなったときは、決定で、秘匿決定の全部又は一部及び当該秘匿決定に係る前項の決定（以下「呼称等の決定」という。）の全部又は一部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四条（起訴状の朗読方法の特例）

秘匿決定があったときは、刑事訴訟法第二百九十一条第一項の起訴状の朗読は、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を明らかにしない方法で行う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検察官は、被告人に起訴

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명칭, 그 밖의 표현을 대신하는 호칭, 그 밖의 표현을 정할 수 있다.

⑤ 재판소는 비공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게 된 때 또는 「형사소송법」(소화23<1948>년 법률 제131호) 제312조에 따라 벌칙 조항이 철회되거나 변경되어 제1항에 따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결정으로 비공개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및 해당 비공개 결정과 관련된 제4항의 결정(이하 “호칭 등의 결정”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 (기소장의 낭독방법의 특례)

비공개결정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91조제1항의 기소장의 낭독은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기소장을 제시하여야 한

状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五条 (尋問等の制限)

裁判長は、秘匿決定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訴訟関係人のする尋問又は陳述が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にわたるときは、これを制限することにより、犯罪の証明に重大な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又は被告人の防御に実質的な不利益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除き、当該尋問又は陳述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訴訟関係人の被告人に対する供述を求める行為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2 刑事訴訟法第二百九十五条第五項及び第六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検察官又は弁護士である弁護人がこれに従わなかっ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十六条 (公判期日外の証人尋問等)

裁判所は、秘匿決定をした場合において、証人、鑑定人、通訳人若しくは翻訳人を尋問するとき、又は被告人が任意に供述をするときは、検察官

다.

제25조 (심문 등의 제한)

① 재판장은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에 소송관계인의 심문 또는 진술이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에 걸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하면 범죄의 증명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심문 또는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소송관계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같다.

② 「형사소송법」 제295조 제5항 및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찰관 또는 변호사인 변호인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6조 (공판기일 외의 증인 심문 등)

① 재판소는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통역인이나 번역인을 심문하는 때, 또는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하는 때에는 검찰관 및 피

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証人、鑑定人、通訳人若しくは翻訳人の尋問若しくは供述又は被告人に対する供述を求める行為若しくは被告人の供述が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にわたり、かつ、これが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されることにより当該営業秘密に基づく被害者、被告人その他の者の事業活動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り、これを防止するためやむを得ないと認めるときは、公判期日外において当該尋問又は刑事訴訟法第三百十一条第二項及び第三項に規定する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刑事訴訟法第百五十七条第一項及び第二項、第百五十八条第二項及び第三項、第百五十九条第一項、第二百七十三条第二項、第二百七十四条並びに第三百三条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百五十七条第一項、第百五十八条第三項及び第百五十九条第一項中「被告人又は弁護

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이나 번역인의 심문이나 진술 또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나 피고인의 진술이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 사항에 걸치며, 공개 법정에서 밝혀지면 해당 영업비밀에 기초한 피해자, 피고인, 그 밖의 사람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기일 외에 해당 심문 또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1항 및 제2항, 제158조제2항 및 제3항, 제159조제1항, 제273조제2항, 제274조, 제303조는 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3항 및 제159조제1항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변호인, 공동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 동법 제158조제2항 중

人」とあるのは「弁護人、共同被告人又はその弁護人」と、同法第百五十八条第二項中「被告人及び弁護人」とあるのは「弁護人、共同被告人及びその弁護人」と、同法第二百七十三条第二項中「公判期日」とあるのは「不正競争防止法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の期日」と、同法第二百七十四条中「公判期日」とあるのは「不正競争防止法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の日時及び場所」と、同法第三百三条中「証人その他の者の尋問、検証、押収及び搜索の結果を記載した書面並びに押収した物」とあるのは「不正競争防止法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の結果を記載した書面」と、「証拠書類又は証拠物」とあるのは「証拠書類」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호인, 공동 피고인 및 그 변호인”, 동법 제273조제2항 중 “공판기일”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의 기일”, 동법 제274조 중 “공판기일”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의 일시 및 장소”, 동법 제303조 중 “증인, 그 밖의 사람의 심문, 검증, 압수 및 수색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 및 압수한 물건”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은 “증거서류”로 한다.

第二十七条 (尋問等に係る事項)

제27조 (심문 등과 관련된 사

の要領を記載した書面の提示命令)

裁判所は、呼称等の決定をし、又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尋問若しくは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を公判期日外においてする旨を定めるに当た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に対し、訴訟関係人のすべき尋問若しくは陳述又は被告人に対する供述を求める行為に係る事項の要領を記載した書面の提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八条 (証拠書類の朗読方法の特例)

秘匿決定があったときは、刑事訴訟法第三百五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証拠書類の朗読は、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を明らかにしない方法でこれを行うものとする。

第二十九条 (公判前整理手続等における決定)

次に掲げる事項は、公判前整理手続及び期日間整理手続において行うことができる。

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명령)

재판소는 호칭 등의 결정을 하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문이나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공판기일 외에 한다고 정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관계인의 모든 심문이나 진술 또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제28조 (증거서류의 낭독방법의 특례)

비공개 결정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0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의 낭독은 영업비밀 구성정보 특정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9조 (공판 전 정리절차 등의 결정)

다음의 사항은 공판 전 정리절차 및 기일간 정리절차에서 할 수 있다.

- 一 秘匿決定若しくは呼称等の決定又はこれらの決定を取り消す決定をすること。
- 二 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尋問又は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を公判期日外においてする旨を定めること。

第三十条 (証拠開示の際の営業秘密の秘匿要請)

検察官又は弁護人は、第二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事件について、刑事訴訟法第二百九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証拠書類又は証拠物を閲覧する機会を与えるに当たり、第二十三条第一項又は第三項に規定する営業秘密を構成する情報の全部又は一部を特定させることとなる事項が明らかにされることにより当該営業秘密に基づく被害者、被告人その他の者の事業活動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相手方に対し、その旨を告げ、当該事項が、犯罪の証明若しくは犯罪の捜査又は被告人の防御に関し必要がある場合を除き、関係者(被告人を含む。)に知ら

- 1. 비공개 결정이나 호칭 등의 결정 또는 이들 결정의 취소 결정
-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문 또는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공판기일 외에 한다는 결정

제30조 (증거공개 시 영업비밀의 비공개 요청)

① 검찰관 또는 변호인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9조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할 기회를 부여할 때에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게 되는 사항이 밝혀지면 해당 영업비밀에 기초한 피해자, 피고인, 그 밖의 사람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해당 사항이 범죄의 증명이나 범죄의 수사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자(피고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요구할

<p>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被告人に知ら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求めることについては、当該事項のうち起訴状に記載された事項以外のものに限る。</p> <p>2 前項の規定は、検察官又は弁護人が刑事訴訟法第二編第三章第二節第一款第二目（同法第三百十六条の二十八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証拠の開示を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p> <p>第三十一条（最高裁判所規則への委任）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二十三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p> <p>第七章 没収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p> <p>第三十二条（第三者の財産の没収手続等） 第二十一条第十項各号に掲げる財産である債権等（不動産</p>	<p>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중 기소장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것으로 한정한다.</p> <p>② 제1항은 검찰관 또는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2절제1관제2목(동법 제316조의28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거의 공개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p> <p>제31조 (「최고재판소 규칙」에의 위임)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실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p> <p>제32조 (제3자의 재산의 몰수 절차 등) ① 제21조제10항 각 호의 재산인 채권 등(부동산 및 동산</p>
--	--

及び動産以外の財産をいう。第三十四条において同じ。)が被告人以外の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第三者」という。)に帰属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第三者が被告事件の手續への参加を許されていないときは、没収の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第二十一条第十項の規定により、地上権、抵当権その他の第三者の権利がその上に存在する財産を没収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第三者が被告事件の手續への参加を許されていない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3 組織的犯罪処罰法第十八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地上権、抵当権その他の第三者の権利がその上に存在する財産を没収する場合において、第二十一条第十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組織的犯罪処罰法第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当該権利を存続させるべきときについて準用する。

4 第一項及び第二項に規定する財産の没収に関する手續について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めがあるもののほか、刑事

외의 재산을 말한다. 제34조에서 같다)이 피고인 외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3자”라 한다)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해당 제3자의 피고사건 절차 참여가 허락되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의 재판을 하지 못한다.

② 제21조제10항에 따라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제3자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려는 경우에 해당 제3자의 피고사건 절차 참여가 허락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조직적범죄처벌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제3자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 제21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조직적범죄처벌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켜야 하는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몰수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형사 사

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昭和三十八年法律第百三十八号）の規定を準用する。

第三十三条（没収された債権等の処分等）

組織的犯罪処罰法第十九条の規定は第二十一条第十項の規定による没収について、組織的犯罪処罰法第二十条の規定は権利の移転について登記又は登録を要する財産を没収する裁判に基づき権利の移転の登記又は登録を関係機関に囑託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中「次章第一節」とあるのは、「不正競争防止法第八章」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三十四条（刑事補償の特例）

債権等の没収の執行に対する刑事補償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一号）による補償の内容については、同法第四条第六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八章 保全手続

건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소화 38<1963>년 법률 제138호)을 준용한다.

제33조 (몰수 채권 등의 처분 등)

「조직적범죄처벌법」 제19조는 제21조제10항에 따른 몰수에 대하여, 「조직적범죄처벌법」 제20조는 권리의 이전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따라 권리의 이전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9조 중 “제4장제1절”은 “「부정경쟁방지법」 제8장”으로 한다.

제34조 (형사보상의 특례)

「채권 등의 몰수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법」(소화 25<1950>년 법률 제1호)에 따른 보상의 내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8장 보전절차

第三十五条 (没収保全命令)

裁判所は、第二十一条第一項、第三項及び第四項の罪に係る被告事件に関し、同条第十項の規定により没収することができる財産（以下「没収対象財産」という。）に当たると思料する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り、かつ、当該財産を没収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没収保全命令を發して、当該財産につき、その処分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地上権、抵当権その他の権利がその上に存在する財産について没収保全命令を發した場合又は發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権利が没収により消滅すると思料する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る場合であって当該財産を没収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当該権利が仮装のものであると思料す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附帯保全命令を別に發して、当該権利

제35조 (몰수 보전명령)

① 재판소는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죄와 관련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동조 제10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사료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해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몰수 보전명령을 내려 해당 재산에 대하여 그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재판소는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 보전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그 명령을 내리려 하는 경우에 해당 권리가 몰수에 따라 소멸한다고 사료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권리가 가장(仮装)된 것으로 사료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부대보전명령을 따로

の処分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

3 裁判官は、前二項に規定する理由及び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公訴が提起される前であっても、検察官又は司法警察員（警察官たる司法警察員については、国家公安委員会又は都道府県公安委員会が指定する警部以上の者に限る。）の請求により、前二項に規定す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三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れらの規定による処分については、組織的犯罪処罰法第四章第一節及び第三節の規定による没収保全命令及び附帯保全命令による処分の禁止の例による。

第三十六条 (追徴保全命令)

裁判所は、第二十一条第一項、第三項及び第四項の罪に係る被告事件に関し、同条第十二項の規定により追徴すべき場合に当たると思料する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る場合において、追徴の裁判の執行を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おそれがあり、又はその執行を

내려 해당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재판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유 및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경찰관인 사법경찰원에 대하여는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지정하는 경부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의 청구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들 규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조직적범죄처벌법」 제4장제1절 및 제3절에 따른 몰수 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에 따른 처분의 금지의 예에 따른다.

제36조 (추징보전명령)

① 재판소는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죄와 관련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동조 제12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징 재판의 집행을 못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그 집행을 하기에 현저한 어려움이

<p>するのに著しい困難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追徴保全命令を發して、被告人に対し、その財産の処分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p> <p>2 裁判官は、前項に規定する理由及び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公訴が提起される前であっても、検察官の請求により、同項に規定す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p> <p>3 前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れらの規定による処分については、組織的犯罪処罰法第四章第二節及び第三節の規定による追徴保全命令による処分の禁止の例による。</p>	<p>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내려 피고인에게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p> <p>② 재판관은 제1항에 따른 이유 및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들 규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조직적범죄처벌법」 제4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처분 금지의 예에 따른다.</p>
<p>第九章 沒收及び追徴の裁判の執行及び保全についての国際共助手続等</p> <p>第三十七条 (共助の実施)</p> <p>外国の刑事事件 (当該事件において犯されたとされている犯罪に係る行為が日本国内において行われたと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行為が第二十一</p>	<p>제9장 몰수 및 추징 재판의 집행 및 보전에 대한 국제공조절차 등</p> <p>제37조 (공조의 실시)</p> <p>① 외국의 형사사건(해당 사건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일어난 경우에 해당 행위가 제21조제1항, 제</p>

条第一項、第三項又は第四項の罪に当たる場合に限る。) に関して、当該外国から、没収若しくは追徴の確定裁判の執行又は没収若しくは追徴のための財産の保全の共助の要請があったとき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当該要請に係る共助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共助犯罪(共助の要請において犯されたとされている犯罪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係る行為が日本国内において行われたとした場合において、日本国の法令によればこれについて刑罰を科す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二 共助犯罪に係る事件が日本国の裁判所に係属するとき、又はその事件について日本国の裁判所において確定判決を経たとき。

三 没収の確定裁判の執行の共助又は没収のための保全の共助については、共助犯罪に係る行為が日本国内において行われたとした場合において、要請に係る財産が日本国の法令によれば共

3항 또는 제4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해당 외국에서 몰수나 추징의 확정 재판의 집행 또는 몰수나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요청과 관련된 공조를 할 수 있다.

1. 공조 범죄(공조 요청에서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관련된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일어났다고 한 경우에 일본국 법령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공조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일본국 재판소에 계속하는 때 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일본국 재판소에서 확정 재판을 거친 때

3. 몰수의 확정 재판의 집행 공조 또는 몰수를 위한 보전 공조에 대하여는 공조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일어났다고 한 경우에 요청과 관련된 재판이 일본국 법령에 따르면 공조

助犯罪について没収の裁判をし、又は没収保全をすることができる財産に当たるものでないとき。

四 追徴の確定裁判の執行の共助又は追徴のための保全の共助については、共助犯罪に係る行為が日本国内において行われたとした場合において、日本国の法令によれば共助犯罪について追徴の裁判をし、又は追徴保全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当たるものでないとき。

五 没収の確定裁判の執行の共助については要請に係る財産を有し又はその財産の上に地上権、抵当権その他の権利を有すると思料するに足りる相当な理由のある者が、追徴の確定裁判の執行の共助については当該裁判を受けた者が、自己の責めに帰することのできない理由により、当該裁判に係る手続において自己の権利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と認められるとき。

六 没収又は追徴のための保全の共助については、要請国の裁判所若しくは裁判官

범죄에 대하여 몰수 재판을 하거나 몰수 보전을 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때

4. 추징의 확정 재판의 집행 공조 또는 추징을 위한 보전 공조에 대하여는 공조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일어났다고 한 경우에 일본국 법령에 따르면 공조 범죄에 대하여 추징 재판을 하거나 추징 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때

5. 몰수의 확정 재판의 집행 공조에 대하여는 요청과 관련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상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다고 사료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추징 확정 재판의 집행 공조에 대하여는 해당 재판을 받는 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로 해당 재판과 관련된 절차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때

6. 몰수 또는 추징의 보전 공조에 대하여는 요청국 재판소나 재판관이 한 몰수나

의した没収若しくは追徴のための保全の裁判に基づく要請である場合又は没収若しくは追徴の裁判の確定後の要請である場合を除き、共助犯罪に係る行為が行われたと疑う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ないとき、又は当該行為が日本国内で行われたとした場合において第三十五条第一項又は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理由が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2 地上権、抵当権その他の権利がその上に存在する財産に係る没収の確定裁判の執行の共助をするに際し、日本国の法令により当該財産を没収するとすれば当該権利を存続させるべき場合に当たるときは、これを存続させるものとする。

第三十八条 (追徴とみなす没収)

第二十一条第十項各号に掲げる財産に代えて、その価額が当該財産の価額に相当する財産であって当該裁判を受けた者が有するものを没収する確定裁判の執行に係る共助の要

추징을 위한 보전 재판에 따른 요청인 경우 또는 요청이나 추징 재판의 확정 후 요청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조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일어났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때 또는 해당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일어났다고 한 경우에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과 관련된 몰수 확정 재판의 집행 공조를 하는 때에는 일본국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몰수하면 해당 권리를 존속시켜야 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때에는 이를 존속시킨다.

제38조 (추징으로 보는 몰수)

① 제21조제10항 각 호의 재산을 대신하여 그 가액이 해당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으로서 해당 재판을 받은 자가 가지는 것을 몰수하는 확정 재판의 집행과 관련된

請にあっては、当該確定裁判は、この法律による共助の実施については、その者から当該財産の価額を追徴する確定裁判とみなす。

2 前項の規定は、第二十一条第十項各号に掲げる財産に代えて、その価額が当該財産の価額に相当する財産を没収するための保全に係る共助の要請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三十九条 (要請国への共助の実施に係る財産等の譲与)

第三十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没収又は追徴の確定裁判の執行の共助の要請をした外国から、当該共助の実施に係る財産又はその価額に相当する金銭の譲与の要請があったときは、その全部又は一部を譲与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十条 (組織的犯罪処罰法による共助等の例)

前三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三十七条の規定による共助及び前条の規定による譲与については、組織的犯罪処罰法第六章の規定による共助及び

공조 요청인 경우에는 해당 확정 재판은 이 법에 따른 공조의 실시에 대하여는 그 자로부터 해당 재산의 가액을 추징하는 확정 재판으로 본다.

② 제1항은 제21조제10항 각호의 재산을 대신하여 그 가액이 해당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보전과 관련된 공조 요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9조 (요청국에의 공조 실시와 관련된 재산 등의 양여)

제37조제1항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 재판의 집행 공조 요청을 한 외국에서 해당 공조의 실시와 관련된 재산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양여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제40조 (「조직적범죄처벌법」에 따른 공조 등의 예)

제37조부터 제39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37조에 따른 공조 및 제39조에 따른 양여에 대하여는 「조직적범죄처벌법」 제6장에 따른 공조 및

<p>譲与の例による。</p> <p>附 則 抄</p>	<p>양여의 예에 따른다.</p> <p>부칙</p>
------------------------------	------------------------------

중 국

원 본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본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 국 가 · 지 역: 중국
- 법 률 번 호: 주석령 [2019] 제 29 호
- 제 정 일: 1993년 9월 2일
- 개 정 일: 2019년 4월 23일
- 공 포 일: 2019년 4월 23일
- 시 행 일: 2019년 4월 23일

목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부정경쟁행위

제 3 장 부정경쟁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제 4 장 법적 책임

제 5 장 부칙

원문	번역문
第一章 总则	제 1 장 총칙
第一条 为了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健康发展，鼓励和保护公平竞争，制	제 1 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며, 공평한 경쟁을

止不正当竞争行为，保护经营者和消费者的合法权益，制定本法。

第二条

经营者在生产经营活动中，应当遵循自愿、平等、公平、诚信的原则，遵守法律和商业道德。

本法所称的“不正当竞争行为”，是指经营者在生产经营活动中，违反本法规定，扰乱市场竞争秩序，损害其他经营者或者消费者的合法权益的行为。

本法所称的经营者，是指从事商品生产、经营或者提供服务（以下所称商品包括服务）的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

第三条

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制止不正当竞争行为，为公平竞争创造良好的环境和条件。

国务院建立反不正当竞争工作协调机制，研究决定反不正当竞争重大政策，协调处理维护市场竞争秩序的重大问题。

장려하고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제지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경영자는 생산경영활동 중에 자발성·평등성·공평성·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법률과 상업 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부정경쟁행위”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시장경쟁질서를 교란시키고, 다른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서 “경영자”란 상품 생산·경영에 종사하거나 서비스(이하 ‘상품’이란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자연인·법인·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제지하고, 공평한 경쟁을 위하여 건전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부정경쟁행위 업무에 대한 협조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중대한 정책 결정을 연구하고, 시장경쟁질서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 처리에

<p>第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履行工商行政管理职责的部门对不正当竞争行为进行查处；法律、行政法规规定由其他部门查处的，依照其规定。</p> <p>第五条 国家鼓励、支持和保护一切组织和个人对不正当竞争行为进行社会监督。</p> <p>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不得支持、包庇不正当竞争行为。</p> <p>行业组织应当加强行业自律，引导、规范会员依法竞争，维护市场竞争秩序。</p> <p>第二章 不正当竞争行为</p> <p>第六条 经营者不得实施下列混淆行为，引人误认为是他人商品或者与他人存在特定联系：</p>	<p>협조한다.</p> <p>제 4 조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 상공 행정관리 직무책임이 있는 부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처리한다. 법률·행정법규에 다른 부서가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p> <p>제 5 조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감독하도록 독려하고 지지하며 보호한다.</p> <p>국가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은 부정경쟁행위를 지원하거나 감싸주어서는 아니 된다.</p> <p>업종 조직은 그 회원이 법에 따라 경쟁하도록 업종 자율성·가이드·규범을 강화하여 시장경쟁 질서를 보호하여야 한다.</p> <p>제 2 장 부정경쟁행위</p> <p>제 6 조 경영자는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오해하도록 혼동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p>(一) 擅自使用与他人有一定影响的商品名称、包装、装潢等相同或者近似的标识；</p> <p>(二) 擅自使用他人有一定影响的企业名称（包括简称、字号等）、社会组织名称（包括简称等）、姓名（包括笔名、艺名、译名等）；</p> <p>(三) 擅自使用他人有一定影响的域名主体部分、网站名称、网页等；</p> <p>(四) 其他足以引人误认为是他人商品或者与他人存在特定联系的混淆行为。</p>	<p>(1) 다른 사람의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품 명칭·포장·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p> <p>(2) 다른 사람의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기업 명칭(약칭·글자 모양 등을 포함한다), 사회조직 명칭(약칭 등을 포함한다), 성명(필명·예명·번역명 등을 포함한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p> <p>(3) 다른 사람의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도메인 주요 부분·웹사이트 명칭·웹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p> <p>(4)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오해하는 혼동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그 밖의 행위</p>
<p>第七条</p> <p>经营者不得采用财物或者其他手段贿赂下列单位或者个人，以谋取交易机会或者竞争优势：</p> <p>(一) 交易相对方的工作人员；</p> <p>(二) 受交易相对方委托办理相关事务的单位或者个人；</p>	<p>제 7 조</p> <p>경영자는 재물이나 그 밖의 수단으로 다음의 사업장 또는 개인에게 뇌물을 주어 거래 기회를 획득하거나 경쟁 우위를 차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거래 상대방의 업무 담당자</p> <p>(2) 거래 상대방의 위탁을 받아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사업</p>

(三) 利用职权或者影响力影响交易的单位或者个人。

经营者在交易活动中，可以以明示方式向交易相对方支付折扣，或者向中间人支付佣金。经营者向交易相对方支付折扣、向中间人支付佣金的，应当如实入账。接受折扣、佣金的经营者也应当如实入账。

经营者的工作人员进行贿赂的，应当认定为经营者的行为；但是，经营者有证据证明该工作人员的行为与为经营者谋取交易机会或者竞争优势无关的除外。

第八条

经营者不得对其商品的性能、功能、质量、销售状况、用户评价、曾获荣誉等作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欺骗、误导消费者。

经营者不得通过组织虚假交易等方式，帮助其他经营者进行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

장 또는 개인

(3) 거래에 영향을 주는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업장 또는 개인

경영자는 거래활동 중에 거래 상대방에게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나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명시할 수 있다. 경영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할인을 해주는 방식·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사실과 동일하게 장부에 기입되어야 한다.

경영자 측의 업무 담당자가 뇌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경영자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자의 행위가 경영자가 거래 기회를 획득하거나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명확한 증거·증명이 경영자에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8 조

경영자는 그 상품의 성능·기능·품질·매출 상황·사용자 평가·수상 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 광고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영자는 조직적으로 허위 거래 등을 하는 방식으로 다른 경영자가 허위 활동을 하는 것 또는 오

第九条

经营者不得实施下列侵犯商业秘密的行为：

- (一) 以盗窃、贿赂、欺诈、胁迫、电子侵入或者其他不正当手段获取权利人的商业秘密；
- (二) 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以前项手段获取的权利人的商业秘密；
- (三) 违反保密义务或者违反权利人有关保守商业秘密的要求，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其所掌握的商业秘密；
- (四) 教唆、引诱、帮助他人违反保密义务或者违反权利人有关保守商业秘密的要求，获取、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权利人的商业秘密。

经营者以外的其他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实施前款所列违法

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 광고를 하는 것을 도와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절도·회유·협박·전산 침입·부정한 그 밖의 수단으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2) 앞 항의 수단으로 획득한 영업비밀을 폭로·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 (3)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채권자 관련 영업비밀 보호 요구를 위반하거나, 그렇게 하여 손에 넣은 영업비밀을 폭로·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 (4) 다른 사람이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위반하도록 선동·유도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채권자에 관련된 영업비밀 보호·유지 요구를 위반하거나, 그 영업비밀을 획득·폭로·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 경영자를 제외한 그 밖의 자연인·법인·비법인 조직이 앞 관에

行为的，视为侵犯商业秘密。

第三人明知或者应知商业秘密权利人的员工、前员工或者其他单位、个人实施本条第一款所列违法行为，仍获取、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该商业秘密的，视为侵犯商业秘密。

本法所称的"商业秘密"，是指不为公众所知悉、具有商业价值并经权利人采取相应保密措施的技术信息、经营信息等商业信息。

第十条

经营者进行有奖销售不得存在下列情形：

- (一) 所设奖的种类、兑奖条件、奖金金额或者奖品等有奖销售信息不明确，影响兑奖；
- (二) 采用谎称有奖或者故意让内定人员中奖的欺骗方式进行有奖销售；
- (三) 抽奖式的有奖销售，最高奖的金额超过五万元。

열거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영업비밀 채권자의 직원을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제 3 자, 그 직원이나 다른 사업장·개인이 제 9 조제 1 관에 열거된 위법행위를 하여, 해당 영업비밀을 획득·복로·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본다.

이 법에서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상업적 가치가 있고, 채권자가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여 보호하는 기술정보·경영정보 등의 상업정보를 말한다.

제 10 조

경영자가 경품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경품 종류·경품 교환 조건·당첨 금액 및 상품 등 경품 판매 정보가 불명확하여 경품 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 허위로 경품 판매를 꾸며 내거나 경품 당첨자를 고의로 내정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경품 판매를 하는 경우
- (3) 추첨식 경품 판매의 최고 당첨 금액이 5 만 위안을 초과

<p>第十一条 经营者不得编造、传播虚假信息或者误导性信息，损害竞争对手的商业信誉、商品声誉。</p> <p>第十二条 经营者利用网络从事生产经营活动，应当遵守本法的各项规定。</p> <p>经营者不得利用技术手段，通过影响用户选择或者其他方式，实施下列妨碍、破坏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运行的行为：</p> <p>(一) 未经其他经营者同意，在其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中，插入链接、强制进行目标跳转；</p> <p>(二) 误导、欺骗、强迫用户修改、关闭、卸载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p> <p>(三) 恶意对其他经营者合法</p>	<p>하는 경우</p> <p>제 11 조 경영자는 허위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를 날조·유포하여 경쟁 상대방의 상업 신용·상품 평판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제 12 조 경영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경영자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다른 경영자의 동의없이 그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에 링크·강제 리디렉션을 삽입하는 행위</p> <p>(2) 사용자에게 왜곡하여 알리거나, 사용자를 기만·강박하여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정·폐쇄·삭제하도록 하는 행위</p> <p>(3)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p>
--	--

<p>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实施不兼容；</p> <p>(四) 其他妨碍、破坏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运行的行为。</p> <p>第三章 对涉嫌不正当竞争行为的调查</p> <p>第十三条</p> <p>监督检查部门调查涉嫌不正当竞争行为，可以采取下列措施：</p> <p>(一)进入涉嫌不正当竞争行为的经营场所进行检查；</p> <p>(二)询问被调查的经营者、利害关系人及其他有关单位、个人，要求其说明有关情况或者提供与被调查行为有关的其他资料；</p> <p>(三)查询、复制与涉嫌不正当竞争行为有关的协议、账簿、单据、文件、记录、业务函电和其他资料；</p> <p>(四)查封、扣押与涉嫌不正当竞争行为有关的财物；</p> <p>(五)查询涉嫌不正当竞争行为的经营者的银行账户。</p>	<p>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를 악의로 수용하지 아니하는 행위</p> <p>(4)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훼방하는 그 밖의 행위</p> <p>제 3 장 부정경쟁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p> <p>제 13 조</p> <p>감독검사부서는 부정경쟁행위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1) 부정경쟁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사업장에 들어가서 관련 조사 진행</p> <p>(2) 조사를 받는 경영자·이해관계자 및 그 밖의 사업장·개인에게 물어보아서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조사받는 행위에 관련된 그 밖의 자료 제공을 요청</p> <p>(3) 부정경쟁행위 혐의와 관련된 합의서·장부·청구서·문서·기록·업무서신과 그 밖의 자료를 조회·복사</p> <p>(4) 부정경쟁행위 혐의와 관련된 재물을 봉인·압수</p> <p>(5) 부정경쟁행위 혐의를 받는 경영자의 은행계좌를 조회</p>
---	--

采取前款规定的措施，应当向监督检查部门主要负责人书面报告，并经批准。采取前款第四项、第五项规定的措施，应当向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监督检查部门主要负责人书面报告，并经批准。

监督检查部门调查涉嫌不正当竞争行为，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并应当将查处结果及时向社会公开。

第十四条

监督检查部门调查涉嫌不正当竞争行为，被调查的经营者、利害关系人及其他有关单位、个人应当如实提供有关资料或者情况。

第十五条

监督检查部门及其工作人员对调查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第十六条

对涉嫌不正当竞争行为，任何单

앞 관에서 말하는 조치를 취하려면 감독검사부서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비준도 받아야 한다. 앞 관의 제 4 항·제 5항의 조치를 취하려면 구가 설치된 시(市)급 이상의 인민정부 감독검사부서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비준도 받아야 한다. 부정경쟁행위 혐의를 조사하는 감독검사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행정부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곧바로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14 조

감독검사부서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경영자·이해관계자 및 그 밖의 관련 사업장·개인은 사실대로 관련 자료 또는 상황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15 조

감독검사부서 및 그 업무 담당자는 조사 과정 중에 알게 된 영업 비밀에 관하여 비밀보호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6 조

부정경쟁행위 혐의에 대하여 모

位和个人有权向监督检查部门举报，监督检查部门接到举报后应当依法及时处理。

监督检查部门应当向社会公开受理举报的电话、信箱或者电子邮件地址，并为举报人保密。对实名举报并提供相关事实和证据的，监督检查部门应当将处理结果告知举报人。

第四章 法律责任

第十七条

经营者违反本法规定，给他人造成损害的，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

经营者的合法权益受到不正当竞争行为损害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因不正当竞争行为受到损害的经营者的赔偿数额，按照其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计算的，按照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经营者恶意实施侵犯商业秘密行为，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

定 사업장과 개인은 감독검사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감독검사부서는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감독검사부서는 신고를 접수받는 전화번호·우편번호·전자메일주소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신고 제보자를 위하여 신고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를 진다. 실명으로 제보하면서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처리결과를 신고 제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17 조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경영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영자에 대한 배상액수는 권리침해를 입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하며, 실제 손실을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얻게 된

定数额的一倍以上五倍以下确定赔偿数额。赔偿数额还应当包括经营者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经营者违反本法第六条、第九条规定，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由人民法院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权利人五百万元以下的赔偿。

第十八条

经营者违反本法第六条规定实施混淆行为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商品。违法经营额五万元以上的，可以并处违法经营额五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万元的，可以并处二十五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이익으로 계산하여 확정한다. 경영자가 악의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위에 서술된 방법으로 확정된 액수의 1 배 이상 5 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배상액수로 정한다. 배상액수에는 경영자가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경영자가 이 법 제 6 조·제 9 조를 위반하여, 채권자가 권리 침해로 입은 실제 손실·권리를 침해한 자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얻게 된 이익을 계산하여 확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행위 관련 상황을 심리하여 채권자에게 500 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해주도록 판결한다.

제 18 조

경영자가 이 법 제 6 조를 위반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에 관련된 상품을 몰수한다. 위법경영액이 5 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5 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 만 위안 미만인 경우

经营者登记的企业名称违反本法第六条规定的，应当及时办理名称变更登记；名称变更前，由原企业登记机关以统一社会信用代码代替其名称。

第十九条

经营者违反本法第七条规定贿赂他人的，由监督检查部门没收违法所得，处十万元以上三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第二十条

经营者违反本法第八条规定对其商品作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或者通过组织虚假交易等方式帮助其他经营者进行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一百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的罚款，可以吊销营业执照。

2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면허를 회수하여 취소한다. 경영자가 등기한 기업 명칭이 이 법 제 6 조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명칭 변경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명칭 변경 이전에는 해당 기업이 원래 등기하였던 기관은 통합사회 신용코드로 그 명칭을 대체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제 19 조

경영자가 이 법 제 7 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그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 만 위안 이상 3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면허를 회수하여 취소한다.

제 20 조

경영자가 이 법 제 8 조를 위반하여 그 상품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조직적으로 허위 거래 등을 하는 방식으로 다른 경영자가 허위 활동을 하는 것 또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 광고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经营者违反本法第八条规定，属于发布虚假广告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的规定处罚。

第二十一条

经营者以及其他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违反本法第九条规定侵犯商业秘密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二条

经营者违反本法第十条规定进行有奖销售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三条

经营者违反本法第十一条规定损害竞争对手商业信誉、商品声誉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0 만 위안 이상 2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면허를 회수하여 취소할 수도 있다.

경영자가 이 법 제 8 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허위 광고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1 조

경영자 및 그 밖의 자연인·법인과 비법인이 조직적으로 이 법 제 9 조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한 뒤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0 만 위안 이상 5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2 조

경영자가 이 법 제 10 조를 위반하여 경품 판매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3 조

경영자가 이 법 제 11 조를 위반하여 경쟁 상대방의 상업 신용·상품 평판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法行为、消除影响，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三百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四条

经营者违反本法第十二条规定妨碍、破坏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运行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三百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五条

经营者违反本法规定从事不正当竞争，有主动消除或者减轻违法行为危害后果等法定情形的，依法从轻或者减轻行政处罚；违法行为轻微并及时纠正，没有造成危害后果的，不予行政处罚。

감독검사부서가 위법행위 중지와 그에 따른 영향의 제거를 명령하고,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0 만 위안 이상 3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4 조

경영자가 이 법 제 12 조를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0 만 위안 이상 3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5 조

경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나, 위법행위에 따른 유해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 또는 완화하는 법적 상황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그에 대한 행정처벌을 경감하거나 선처한다.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적시에 시정되어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벌하지 아니한다.

第二十六条

经营者违反本法规定从事不正当竞争，受到行政处罚的，由监督检查部门记入信用记录，并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公示。

第二十七条

经营者违反本法规定，应当承担民事责任、行政责任和刑事责任，其财产不足以支付的，优先用于承担民事责任。

第二十八条

妨害监督检查部门依照本法履行职责，拒绝、阻碍调查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改正，对个人可以处五千元以下的罚款，对单位可以处五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第二十九条

当事人对监督检查部门作出的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제 26 조

경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부정 경쟁행위를 하여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이를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공시한다.

제 27 조

경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민사책임·행정책임·형사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그 재산으로는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 민사책임을 지는 것부터 처리한다.

제 28 조

감독검사부서가 이 법에 따른 직무 및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훼방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며, 해당 개인을 5 천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사업장을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할 수도 있다.

제 29 조

감독조사부서가 내리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第三十条

监督检查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泄露调查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的，依法给予处分。

第三十一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二条

在侵犯商业秘密的民事审判程序中，商业秘密权利人提供初步证据，证明其已经对所主张的商业秘密采取保密措施，且合理表明商业秘密被侵犯，涉嫌侵权人应当证明权利人所主张的商业秘密不属于本法规定的商业秘密。

商业秘密权利人提供初步证据合理表明商业秘密被侵犯，且提供以下证据之一的，涉嫌侵权人应当证明其不存在侵犯商业秘密的

제 30 조

감독검사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사리사욕을 추구하거나, 조사과정 중에 알게 된 영업비밀을 유출·폭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 31 조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2 조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민사재판 절차 진행 중 영업비밀 권리를 보유한 채권자는 재판 초기에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보호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증명을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표명한다. 그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이 법에 규정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영업비밀 권리를 보유한 채권자가 재판 초기에 제출한 증거가 영업비밀 침해 상황을 합리적으로 표명하고, 다음 각 항의 증거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p>(一) 有证据表明涉嫌侵权人有渠道或者机会获取商业秘密，且其使用的信息与该商业秘密实质上相同；</p> <p>(二) 有证据表明商业秘密已经被涉嫌侵权人披露、使用或者有被披露、使用的风险；</p> <p>(三) 有其他证据表明商业秘密被涉嫌侵权人侵犯。</p> <p>第五章 附则</p> <p>第三十三条 本法自 2018 年 1 月 1 日起施行。</p>	<p>피의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p> <p>(1) 피의자가 영업비밀을 입수할 수 있는 경로 또는 기회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그에 따라 사용된 정보가 해당 영업비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p> <p>(2) 영업비밀이 이미 피의자에 의하여 폭로·사용되었거나, 폭로·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p> <p>(3) 피의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그 밖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p> <p>제 5 장 부칙</p> <p>제 33 조 이 법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p>
---	--

E U

원 본 출처: EUR-LEX
번역본 출처: 자체번역

<p>15.6.2016 E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157/1</p>	<p>2016. 6.15 [EN] 유럽 연합 공식 관보 L157/1</p>
<p>I <i>(Legislative acts)</i></p>	<p>I (입법)</p>
<p>DIRECTIVES</p>	<p>지침</p>
<p>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Text with EEA relevance)</p>	<p>불법 취득, 이용, 공개로부터 미공개 노하우 및 사업정보(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6/943 2016년 6월 8일 (전문 및 EEA 관련 사항)</p>
<p>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p>	<p>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는,</p>
<p>Having regard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nd in particular Article 114 thereof,</p>	<p>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특히 제 114 조를 고려하고,</p>
<p>Having regard to the proposal from the European Commission,</p>	<p>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하여,</p>
<p>After transmission of the draft legislative act to the national parliaments,</p>	<p>입법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한 후,</p>
<p>Having regard to the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p>	<p>유럽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고,</p>
<p>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p>	<p>일반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행동하였다.</p>
<p>Whereas:</p>	<p>해설:</p>
<p>(1) Businesses and non-commercial research institutions invest in acquiring, developing and applying know-how and information which is the currency of the knowledge economy and provides a competitive advantage. This investment in generating and applying intellectual capital is a determining factor as regards their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related performance in the market and therefore their returns on investment, which is the underlying motivation for business research and development. Businesses have recourse to</p>	<p>(1) 기업과 비상업적 연구기관은 지식경제의 화폐이자 경쟁상의 우위를 제공하는 노하우와 정보를 획득, 개발, 적용하는데 투자한다. 이와 같이 지적 자본의 생성 및 적용을 위한 투자는 시장의 경쟁력과 혁신 관련 기능을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연구 및 개발의 근본적인 동기인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기업은 개방성으로 인하여 연구 및 혁신에 대한 자신의 투자가 완전히 활용될 수 없을 때, 혁신 관련 활동의 결과를 전유하기</p>

different means to appropriate the results of their innovation-related activities when openness does not allow for the full exploitation of their investment in research and innovation.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design rights or copyright, is one such means. Another means of appropriating the results of innovation is to protect access to, and exploit, knowledge that is valuable to the entity and not widely known. Such valuable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hat is undisclosed and intended to remain confidential, is referred to as a trade secret.

(2) Businesses, irrespective of their size, value trade secrets as much as patents and other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y use confidentiality as a business competitiveness and research innovation management tool, and in relation to a diverse range of information that extends beyond technological knowledge to commercial data such as information on customers and suppliers, business plans, and market research and strategi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value and rely on trade secrets even more. By protecting such a wide range of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whether as a complement or as an alternative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ade secrets allow creators and innovators to derive profit from their creation or innovation and, therefore,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business competitiveness as well a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novation-related performance.

(3) Open innovation is a catalyst for new ideas which meet the needs of consumers and tackle societal challenges, and allows those ideas to find their way to the market. Such innovation is an important lever for the creation of new knowledge, and underpins the emergence of new and innovative business models based on the use of co-created knowledge. Collaborative research, including cross-border cooperat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increasing the levels of business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in the internal market.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being essential for the purpose of ensuring dynamic, positive and equal business development opportunities, in particular for SMEs. In an internal market in which barriers to

위해 다양한 수단에 의존한다. 특허, 디자인권 혹은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의 이용이 그러한 수단 중 하나이다. 혁신의 결과를 전유하는 또 다른 수단은 기업에 가치가 있으면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지식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고 그러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않고 기밀로 유지할 것이 의도된 가치 있는 노하우와 사업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한다.

(2) 기업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영업비밀을 특허 및 기타 형태의 지적 재산권만큼이나 중요하게 그 가치를 인식하고, 기밀을 사업상의 경쟁력 및 연구 혁신 관리 도구로서, 또한 기술 지식을 넘어 고객 및 공급업체, 사업 계획, 시장 조사 및 전략에 대한 정보와 같은 상업적 데이터로 확장되는 다양한 범위의 정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영업비밀을 더욱 중시하고 그에 의존한다. 지식 재산권의 보완이든, 혹은 대안이든, 이러한 넓은 범위의 노하우 및 사업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영업 비밀은 창안자와 혁신가가 자신의 창안 혹은 혁신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 경쟁력 및 혁신 관련 기능에 특히 중요성을 갖는다.

(3) 개방된 혁신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촉매제이며, 이러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실현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혁신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위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며 집단으로 형성된 지식의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의 발현을 뒷받침한다. 국제적 협력을 포함하는 공동 연구는 자국 시장에서 비즈니스 연구 및 개발의 수준을 높이는 데 특히 중요하다. 지식과 정보의 보급은 역동적, 적극적이며, 평등한 사업 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경우에 그러하다. 국제적 협력에 대한

cross-border collaboration are minimised and cooperation is not distorted, intellectual creation and innovation should encourage investment in innovative processes, services and products. Such an environment conducive to intellectual creation and innovation, and in which employment mobility is not hindered, is also important for employment growth and for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Union economy. Trade secrets have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he exchange of knowledge between businesses, including in particular SMEs, and research institutions both within and across the borders of the internal market, in the contex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novation. Trade secrets are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forms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creation and innovative know-how by businesses, yet at the same time they are the least protected by the existing Union legal framework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by other parties.

(4) Innovative businesses are increasingly exposed to dishonest practices aimed at misappropriating trade secrets, such as theft, unauthorised copying, economic espionage or the breach of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whether from within or from outside of the Union. Recent developments, such as globalisation, increased outsourcing, longer supply chains, and the increased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risk of those practices.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compromises legitimate trade secret holders' ability to obtain first-mover returns from their innovation-related efforts. Without effective and comparable legal means for protecting trade secrets across the Union, incentives to engage in innovation-related cross-border activity within the internal market are undermined, and trade secrets are unable to fulfil their potential as drivers of economic growth and jobs. Thus, innovation and creativity are discouraged and investment diminishes, thereby affecting the smooth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and undermining its growth-enhancing potential.

(5) International efforts made in the framework of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to address this problem led to the

장벽이 최소화되고 협력이 왜곡되지 않는 내부 시장에서 지적 창조와 혁신은 혁신적인 프로세스,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투자를 고취시켜야 한다. 이러한 지적 창조와 혁신을 유인하면서 고용의 이동성이 제한받지 않는 환경은 유럽 연합의 고용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영업 비밀은 연구 개발 및 혁신의 맥락에서 국내 시장 내부 및 국제간의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을 포함하는 기업들과 연구 기관들 간에 지식의 교환을 보호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지적 생산물과 혁신적인 노하우를 보호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식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유럽연합의 기존 법 체제 하에서는 다른 당사자에 의한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로부터 가장 덜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4) 혁신적인 기업들은 유럽 연합 내부 혹은 외부에서 절도, 무단 복사, 경제 스파이 혹은 기밀 의무 위반과 같은 영업 비밀의 도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직한 행태에 대한 증가하는 노출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 아웃소싱의 증가, 연장되는 공급망, 정보 및 통신 기술 사용의 증가와 같은 최근의 발전은 이러한 행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는 영업비밀의 합법적인 보유자가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선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한다. 유럽 연합 전역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동등한 법적 수단이 없는 내부 시장 내에서 혁신 관련 국제 활동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약화되고 영업비밀은 경제 성장과 고용을 견인하는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혁신과 창의성이 위축되고 투자는 감소하여 내부 시장의 원활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성장 잠재력을 억제하게 된다.

(5)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안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시도된 국제적 노력은

conclusion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TRIPS Agreement). The TRIPS Agreement contains, inter alia,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by third parties, which are common international standards. All Member States, as well as the Union itself, are bound by this Agreement which was approved by Council Decision 94/800/EC.

(6) Notwithstanding the TRIPS Agreement, there are important differences in the Member States' legislation as regards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by other persons. For example, not all Member States have adopted national definitions of a trade secret or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erefore knowledge on the scope of protection is not readily accessible and that scope differs across the Member States. Furthermore, there is no consistency as regards the civil law remedies available in the event of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rade secrets, as cease and desist orders are not always available in all Member States against third parties who are not competitors of the legitimate trade secret holder. Divergences also exist across the Member States with respect to the treatment of a third party who has acquired the trade secret in good faith but subsequently learns, at the time of use, that the acquisition derived from a previous unlawful acquisition by another party.

(7) National rules also differ as to whether legitimate trade secret holders are allowed to seek the destruction of goods produced by third parties who use trade secrets unlawfully, or the return or destruction of any documents, files or materials containing or embodying the unlawfully acquired or used trade secret. Furthermore, applicable national rules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do not always take account of the intangible nature of trade secret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demonstrate the actual profits lost or the unjust enrichment of the infringer where no market value can be established for the information in question. Only a few Member States allow for the application of abstract rules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based on the reasonable royalty or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의 체결로 이어졌다. TRIPS 협정은 제3자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국제 표준 조항들을 포함한다. 이사회 결정 94/800/EC에 의해 승인된 이 협정은 유럽 연합뿐 아니라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6) TRIPS 협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의한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함에 있어 회원국들의 법률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모든 회원국이 영업비밀의 정의 혹은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에 대한 국내적 정의를 채택한 것은 아니므로 보호 범위를 쉽게 알 수 없고, 그 범위는 회원국마다 다르다. 더 나아가, 적법한 영업 비밀 보유자의 경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중지 명령이 모든 회원국들 내에서 이용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민법적 구제 수단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또한, 선의로 영업비밀을 취득했지만 다른 당사자가 이전에 불법적으로 취득했던 사실을 이후 사용 시점에 알게 된 제3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회원국 전체에 차이가 존재한다.

(7) 영업비밀의 합법적인 보유자가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제3자가 생산한 물품의 파기 혹은 불법적으로 취득되거나 사용된 영업 비밀을 포함하거나 구현한 문서, 파일 혹은 기타 자료의 반환 혹은 파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도 각국의 규칙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에 관한 적용 가능한 국내 규칙은 영업비밀의 무형적 성격을 항상 고려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정보에 대한 시장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익의 상실 혹은 침해자의 부당 이득의 증명을 어렵게 한다. 소수의 회원국만이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가 존재했다면 지불했어야 할 합리적인 로열티 혹은 수수료

fee which could have been due had a licence for the use of the trade secret existed. Additionally, many national rules do not provide for appropriate protection of the confidentiality of a trade secret where the trade secret holder introduces a claim for alleged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by a third party, thereby reducing the attractiveness of the existing measures and remedies and weakening the protection offered.

(8) The differences in the legal protection of trade secrets provided for by the Member States imply that trade secrets do not enjoy an equivalent level of protection throughout the Union, thus leading to fragmentation of the internal market in this area and a weakening of the overall deterrent effect of the relevant rules. The internal market is affected in so far as such differences lower the incentives for businesses to undertake innovation-related cross-border economic activity, including research cooperation or production cooperation with partners, outsourcing or investment in other Member States, which depends on the use of information that enjoys protection as trade secrets. Cross-border network research and development, as well as innovation-related activities, including related production and subsequent cross-border trade, are rendered less attractive and more difficult within the Union, thus also resulting in Union-wide innovation-related inefficiencies.

(9) In addition, there is a higher risk for businesses in Member States with comparatively lower levels of protection, due to the fact that trade secrets may be stolen or otherwise unlawfully acquired more easily. This leads to inefficient allocation of capital to growth-enhancing innovation within the internal market because of the higher expenditure on protective measures to compensate for the insufficient legal protection in some Member States. It also favours the activity of unfair competitors who, subsequent to the unlawful acquisition of trade secrets, could spread goods resulting from such acquisition across the internal market. Differences in legislative regimes also facilitate the importation of goods from third countries into the Union through entry points with weaker

를 기반으로 손해의 산정에 대한 일률적인 규칙의 적용을 허용한다. 또한, 많은 국가의 규정들이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제3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불법 취득, 사용 혹은 공개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 경우 해당 영업비밀의 기밀성을 위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현실이 기존의 조치들과 구제 수단의 매력을 감쇄하고 주어진 보호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8) 회원국들이 영업비밀에 대해 제공하는 법적 보호의 차이는 영업비밀이 유럽 연합 전체에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내부 시장의 파편화 및 관련 규칙이 갖는 전반적인 억제 효과의 약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차이가 제휴를 통한 연구 협력이나 생산 협력, 아웃소싱 혹은 다른 회원국 내 투자를 포함하여 영업 비밀로서 보호를 향유하는 정보의 사용에 의존하는 혁신 관련 국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동기 유인을 위축시키는 한, 내부 시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관련 생산과 그에 이은 국가 간 거래를 포함하여 국제적 네트워크 연구 개발 및 혁신 관련 활동이 유럽 연합 내에서 덜 매력적이고 더 어려워지며, 따라서 유럽 연합 전체에 걸쳐 혁신 관련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9)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회원국의 기업에 대한 위험이 더 높으며, 이는 영업 비밀의 도난이나 불법적 취득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부 회원국에서는 불충분한 법적 보호를 보상하기 위한 보호 조치에 더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에 내부 시장 내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에 대한 자본 할당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불공정한 경쟁자의 활동이 이득을 얻기 때문에 이들은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후 이러한 취득의 결과물을 내부 시장에 퍼뜨린다. 입법 체제의 차이는 또한 보호가 약한 진입점을 통해 그 설계, 생산 혹은 마케팅이 도난 혹은 불법 취득된 영업 비밀에 의존하는 물품들이 EU내로 쉽게 수

protection, when the design, production or marketing of those goods rely on stolen or otherwise unlawfully acquired trade secrets. On the whole, such differences hinder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10) It is appropriate to provide for rules at Union level to approximate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so as to ensure that there is a sufficient and consistent level of civil redress in the internal market in the event of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ose rules should be without prejudice to the possibility for Member States of providing for more far-reaching protection against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rade secrets, as long as the safeguards explicitly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for protecting the interests of other parties are respected.

(11) This Directive should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Union or national rules that require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including trade secrets, to the public or to public authorities. Nor should it affect the application of rules that allow public authorities to collect information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or rules that allow or require any subsequent disclosure by those public authorities of relevant information to the public. Such rules include, in particular, rules on the disclosure by the Union's institutions and bodies or national public authorities of business-related information they hold pursuant to Regulation (EC) No 1049/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egulation (EC) No 136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irective 200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r pursuant to other rules on public access to documents or on the transparency obligations of national public authorities.

(12) This Directive should not affect the right of social partners to enter into collective agreements, where provided for under labour law, as regards any obligation not to disclose a trade secret or to limit its use, and the consequences of a breach of such an obligation by the party subject to it. This should be on the condition that any such collective agreement does not restrict the

입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내부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방해한다.

(10) 영업 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가 발생한 경우 내부 시장에서 충분하고 일관성 있는 수준의 민사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법률이 근접하도록 유럽 연합 차원에서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규칙은 다른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지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보호 장치들이 존중되는 한, 각 회원국이 영업 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할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11) 본 지침은 일반 대중이나 공공 기관에 대하여 영업 비밀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유럽 연합 혹은 각 국가의 규칙의 적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공공 기관이 직무 수행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규칙 혹은 관련 정보를 추후에 대중에게 공개할 것을 공공 기관에게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규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이러한 규칙에는 특히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049/2001,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367/2006 및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4/EC에 따라, 혹은 문서에 대한 공개 접근 또는 국가 공공 기관의 투명성 의무에 관한 기타 규칙에 따라 유럽 연합의 기관이나 국가 공공 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포함된다.

(12) 본 지침은 영업 비밀을 공개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할 의무, 그리고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결과와 관련하여 사회적 파트너가 노동법에 규정된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는 그러한 단체 협약이 영업 비밀의 취득, 사용

exceptions laid down in this Directive when an application for measures, procedures or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for alleged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is to be dismissed.

(13) This Directive should not be understood as restricting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the free movement of workers or the mobility of workers as provided for in Union law. Nor is it intended to affect the possibility of concluding non-competition agreement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14)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homogenous definition of a trade secret without restricting the subject matter to be protected against misappropriation. Such definition should therefore be constructed so as to cover know-how, business information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where there is both a legitimate interest in keeping them confidential and a legitimate expectation that such confidentiality will be preserved. Furthermore, such know-how or information should have a commercial value, whether actual or potential. Such know-how or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a commercial value, for example, where its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is likely to harm the interests of the person lawfully controlling it, in that it undermines that person's scientific and technical potential, business or financial interests, strategic positions or ability to compete. The definition of trade secret excludes trivial information and the experience and skills gained by employees in the normal course of their employment, and also excludes information which is generally known among, or is readily accessible to, persons within the circles that normally deal with the kind of information in question.

(15) It is also important to identify the circumstances in which legal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s justified.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duct and practices which are to be regarded as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혹은 공개가 의심되는 경우에 제기한 본 지침에서 정한 조치, 절차 혹은 구제 수단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본 지침에 명시된 예외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3) 본 지침은 유럽 연합법에 규정된바 설립의 자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 혹은 근로자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 간 경쟁 금지 계약 체결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 지침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14) 영업비밀의 정의를 도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물을 제한함 없이 동일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정의는 기밀로 유지하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러한 기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는 경우, 노하우, 비즈니스 정보 및 기술 정보들을 포함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노하우나 정보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상업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노하우 혹은 정보는 예를 들어 그에 대한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의 결과 그에 대한 적법한 지배를 가진 자의 과학적 및 기술적 잠재성, 사업 혹은 금전적 이익, 전략적 위치 혹은 경쟁 능력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서 근로자가 얻은 사소한 정보와 경험 및 기술은 제외되며, 또한 일반적으로 해당 유형의 정보를 다루는 업계에 속한 인사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도 제외된다.

(15)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가 정당화되는 상황을 판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로 간주되는 행위 및 관행 등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16) In the interest of innovation and to foster competition,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should not create any exclusive right to know-how or information protected as trade secrets. Thus, the independent discovery of the same know-how or information should remain possible. Reverse engineering of a lawfully acquired product should be considered as a lawful means of acquiring information, except when otherwise contractually agreed. The freedom to enter into such contractual arrangements can, however, be limited by law.

(17) In some industry sectors, where creators and innovators cannot benefit from exclusive rights and where innovation has traditionally relied upon trade secrets, products can nowadays be easily reverse-engineered once in the market. In such cases, those creators and innovators can be victims of practices such as parasitic copying or slavish imitations that free-ride on their reputation and innovation efforts. Some national laws dealing with unfair competition address those practices. While this Directive does not aim to reform or harmonise the law on unfair competition in general, it would be appropriate that the Commission carefully examine the need for Union action in that area.

(18) Furthermore, the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rade secrets, whenever imposed or permitted by law, should be treated as lawful for the purposes of this Directive. This concerns, in particular, the acquisition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in the context of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workers' representatives to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in accordance with Union law and national laws and practices, and the collective defence of the interests of workers and employers, including co-determination, as well as the acquisition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in the context of statutory audit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Union or national law. However, such treatment of the acquisition of a trade secret as lawful should be without prejudice to any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as regards the trade secret or any limitation as to its use that Union or national law imposes on the

(16) 혁신과 경쟁 촉진의 이익을 위하여, 본 지침의 조항들은 노하우나 영업 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창설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동일한 노하우나 정보의 독자적 발견은 계속 인정되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획득한 제품의 역 엔지니어링은 계약상 달리 합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 획득의 합법적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달리 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할 자유는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17) 창조자와 혁신가가 독점적 권리의 이익을 누릴 수 없고 혁신이 전통적으로 영업 비밀에 의존하는 오늘날 일부 산업 부문에서는 제품이 시장에 일단 출시되고 나면 쉽게 역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다. 그러한 경우, 그러한 창조자와 혁신가는 그들의 명성과 혁신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기생적 복제 혹은 비열한 모방과 같은 행태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 불공정 경쟁 관련 법은 이러한 행태를 규제하고 있다. 본 지침은 불공정 경쟁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거나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반면, 위원회는 이 부분에서 유럽연합의 조치가 필요한지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8) 또한 영업 비밀의 취득, 사용 혹은 공개는 법에 의해 부과되거나 허용되는 경우 언제나 본 지침의 목적상 합법적인 행위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유럽 연합법, 각 국내법 및 관행에 따른 근로자 대표의 정보, 협의 및 참여에 대한 권리 행사와 공동 결정을 포함하여 근로자와 고용주의 이익의 집단적 방어의 맥락에서, 또한 유럽 연합법, 혹은 각 국내법에서 허용되는 법정 감사의 맥락에서 영업비밀의 취득 및 공개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취득을 적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유럽연합 혹은 각국의 법이 정보의 수취인이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영업 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나 사용상의 제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본 지침은 그러한 의무가 유럽 연합 혹은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 비밀

recipient or acquirer of the information. In particular, this Directive should not release public authorities from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s to which they are subject in respect of information passed on by trade secret holders, irrespective of whether those obligations are laid down in Union or national law. Such confidentiality obligations include, inter alia, the obligations in respect of information forwarded to contracting authorities in the context of procurement procedures, as laid down, for example, in Directive 2014/23/EU of the European

(19) While this Directive provides for measures and remedies which can consist of prevent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it is essential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which encompasses media freedom and pluralism, as reflected in Article 11 of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the Charter'), not be restricted,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investigative journalism and the protection of journalistic sources.

(20)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should not restrict whistleblowing activity. Therefore,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should not extend to cases in which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serves the public interest, insofar as directly relevant misconduct, wrongdoing or illegal activity is revealed. This should not be seen as preventing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from allowing an exception to the application of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in a case where the respondent had every reason to believe in good faith that his or her conduct satisfied the appropriate criteria set out in this Directive.

(21)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intended to protect trade secrets should be tailored to meet the objective of a smooth-functioning internal market for research and innovation, in particular by deterring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Such tailoring of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should not jeopardise or undermin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r the public interest, such as public safety, consumer protection,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보유자에 의해 이전된 정보와 관련하여 공공 기관에게 적용되는 기밀 유지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기밀 유지 의무에는 예를 들면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3/EU,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4/EU 및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25/EU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히 조달 절차와 관련하여 계약 당국에 전달되는 정보에 관한 의무들이 포함된다.

(19) 본 지침은 영업비밀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공개 방지 조치 및 구제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특히 조사 저널리즘 및 기사 출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헌장”) 제11조에 반영된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포괄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아야 함은 필수적이다.

(20) 본 지침에서 정한 조치, 절차 및 구제수단들은 내부 고발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법 행위, 불법 행위 혹은 불법적 활동이 드러난 한, 영업비밀의 보호는 그 영업비밀의 공개가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까지 확대될 수 없다. 이것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행위가 본 지침에 명시된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선의로 믿을 모든 이유가 있는 경우에 권한 있는 사법 당국이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21)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들은 무엇보다도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및 공개를 억지함으로써 연구 및 혁신을 위하여 원활히 작동하는 내부 시장의 확보라는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비례성의 원칙 하에 맞춤형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의 맞춤화는 공공 안전, 소비자 보호,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와 같은 기본 권리와 자유 혹은 공익을 위태롭게 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 근로

protection, and should be without prejudice to the mobility of workers. In this respect,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are aimed at ensuring that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ake into account factors such as the value of a trade secret, the seriousness of the conduct resulting in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and the impact of such conduct. It should also be ensured tha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discretion to weigh up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to the legal proceedings, as well as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including, where appropriate, consumers.

(22) The smooth-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would be undermined if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were used to pursue illegitimate intents incompatible with the objectives of this Directiv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mpower judicial authorities to adopt appropriate measures with regard to applicants who act abusively or in bad faith and submit manifestly unfounded applications with, for example, the aim of unfairly delaying or restricting the respondent's access to the market or otherwise intimidating or harassing the respondent.

(23) In the interest of legal certainty, and considering that legitimate trade secret holders are expected to exercise a duty of care as regards the preservation of the confidentiality of their valuable trade secrets and the monitoring of their use, it is appropriate to restrict substantive claims or the possibility of initiating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to a limited period. National law should also specify, in a clear and unambiguous manner, from when that period is to begin to run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that period is to be interrupted or suspended.

(24) The prospect of losing the confidentiality of a trade secret in the course of legal proceedings often deters legitimate trade secret holders from instituting legal proceedings to defend their trade secrets, thus jeopardi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ubject to appropriate safeguards

자의 이동성에 대한 침해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본 지침에 제공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은 관할 사법 당국으로 하여금 영업 비밀의 가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에 해당되는 행위의 심각성과 그러한 행위의 영향 등과 같은 제반 요소를 확실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확보되어야 할 것은 관할 사법 당국이 소송 당사자의 이익 및 경우에 따라 소비자를 포함하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22) 만약 정해진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이 본 지침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불법적인 의도를 추구하는 데 사용된다면, 내부 시장의 원활한 기능은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남용의 목적이나 악의를 가지거나, 예를 들어 피신청인의 시장 접근을 부당하게 지연 혹은 제한하거나 피신청인을 위협 혹은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명백히 근거 없는 신청을 제출한 신청인에 관하여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 당국에게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23) 법적 확실성을 위하여, 나아가 합법적인 영업비밀 보유자는 자신의 중요한 영업비밀의 기밀 유지 및 그 사용에 대한 주시 관찰을 위해 일정한 주의 의무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질적 청구 혹은 소송 개시의 가능성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각 국내법은 또한 그 기간이 언제부터 개시되고 어떤 상황에서 그 기간이 중단되거나 정지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고 모호함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지정해야 한다.

(24) 소송 등 법적 절차 과정에서 영업 비밀의 기밀성이 상실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은 경우 영업 비밀의 적법한 보유자가 영업 비밀을 방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망설이게 함으로써 법에 의해 제공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의 효과를 위태롭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효과적인 구제 수단 및 공정

ensuring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and to a fair trial, specific requirements aimed at protecting the confidentiality of the litigated trade secret in the course of legal proceedings instituted for its defence. Such protection should remain in force after the legal proceedings have ended and for as long as the information constituting the trade secret is not in the public domain.

(25) Such requirements should include, as a minimum, the possibility of restricting the circle of persons entitled to have access to evidence or hearings, bearing in mind that all such persons should be subject to th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set out in this Directive, and of publishing only the non-confidential elements of judicial decisions. In this context, considering that assessing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which is the subject of a dispute is one of the main purposes of legal proceeding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ensure both the effective protection of the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and respect for the right of the parties to those proceedings to an effective remedy and to a fair trial. The restricted circle of persons should therefore consist of at least one natural person from each of the parties as well as the respective lawyers of the parties and, where applicable, other representatives appropriately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in order to defend, represent or serve the interests of a party in legal proceedings covered by this Directive, who should all have full access to such evidence or hearings. In the event that one of the parties is a legal person, that party should be able to propose a natural person or natural persons who ought to form part of that circle of persons so as to ensure proper representation of that legal person, subject to appropriate judicial control to prevent the objective of the restriction of access to evidence and hearings from being undermined. Such safeguard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requiring the parties to be represented by a lawyer or another representative in the course of legal proceedings where such representation is not required by national law. Nor should they be understood as restricting the competence of the courts to decide, in conformity with the applicable rules and practices of the Member State concerned, whether and to what extent relevant court officials should also have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적절한 보호 장치 하에, 영업비밀을 방어하기 위해 제기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소송 목적물인 영업비밀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의무 사항들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호는 법적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영업 비밀을 구성하는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한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25) 그러한 의무 사항은 최소한의 요건으로 증거나 심리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그러한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은 본 지침에 명시된 기밀 의무 사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사법적 결정 중에서 기밀이 아닌 요소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쟁의 목적물인 정보의 성격을 평가하는 것이 법적 절차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의 기밀성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그 법적 절차의 당사자들이 효과적인 구제 수단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은 각 당사자 측으로부터 적어도 1인의 자연인과 각 당사자의 변호사들 및 해당되는 경우 법적 절차에서 당사자의 이익을 방어 혹은 대변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그 외의 대리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에게는 해당 증거나 심리 절차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주어 져야 한다. 당사자 중 하나가 법인인 경우 그러한 당사자는 증거 및 심리 절차에 대한 접근 제한의 목적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 하에 해당 법인의 적절한 대표성을 보장하면서 당사자 측 대표의 범위에 속할 자연인 1인 혹은 다수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보호 장치는 해당 국내법에 따라 법적 절차 과정에서 그러한 대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변호사 혹은 다른 대리인에 의해 대리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회원국의 적용 가능한 규칙 및 관행에 따라 관련 법원 관계자들 역시 자신들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증거 및 심리에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범

full access to evidence and hearings for the exercise of their duties.

(26)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by a third party could have devastating effects on the legitimate trade secret holder, as once publicly disclosed, it would be impossible for that holder to revert to the situation prior to the loss of the trade secret. As a result, it is essential to provide for fast, effective and accessible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immediate termination of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including where it is used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It is essential that such relief be available without having to await a decision on the merits of the case, while having due respect for the right of defence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having regar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In certain instances, it should be possible to permit the alleged infringer, subject to the lodging of one or more guarantees, to continue to use the trade secret, in particular where there is little risk that it will enter the public domain. It should also be possible to require guarantees of a level sufficient to cover the costs and the injury caused to the respondent by an unjustified application, particularly where any delay would cause irreparable harm to the legitimate trade secret holder.

(27) For the same reasons,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for definitive measures to prevent unlawful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including where it is used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For such measures to b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their duration, when circumstances require a limitation in time, should be sufficient to eliminate any commercial advantage which the third party could have derived from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In any event, no measure of this type should be enforceable if the information originally covered by the trade secret is in the public domain for reasons that cannot be attributed to the respondent.

(28) It is possible that a trade secret could be used unlawfully to design, produce or

위하는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

(26) 제3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가 적법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는 일단 공개되고 나면 해당 보유자가 영업비밀의 상실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를 즉시 종료하기 위해 빠르고 효과적이며 접근 가능한 잠정적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경우 영업비밀이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제는 방어권 및 비례의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고 사건의 특성의 고려 하에 사건의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떤 경우에는, 특히 영업비밀이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될 위험이 거의 없을 때, 침해 혐의자가 하나 혹은 다수의 보증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비밀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부당한 신청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은 비용과 피해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보증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특히 지연으로 인해 영업비밀의 적법한 보유자에게 회복 불가능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27) 같은 이유로 영업비밀이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불법적인 영업비밀의 사용 혹은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가 효과적이고 비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시간적 제한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로 인해 제3자가 얻을 수 있는 상업적 이익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영업비밀에 본래 속하던 정보가 피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경우 이러한 유형의 조치는 집행할 수 없다.

(28) 영업비밀이 상품 혹은 그 구성 요소를

market goods, or components thereof, which could be spread across the internal market, thus affecting the commercial interests of the trade secret holder and the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In such cases, and when the trade secret in ques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quality, value or price of the goods resulting from that unlawful use or on reducing the cost of, facilitating or speeding up their production or marketing processes, it is important to empower judicial authorities to order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those goods are not put on the market or are withdrawn from it. Considering the global nature of trade, it is also necessary that such measures include the prohibition of the importation of those goods into the Union or their storage for the purposes of offering or placing them on the market. Having regard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rrective measures should not necessarily entail the destruction of the goods if other viable options are present, such as depriving the good of its infringing quality or the disposal of the goods outside the market, for example, by means of donations to charitable organisations.

(29) A person could have originally acquired a trade secret in good faith, but only become aware at a later stage, including upon notice served by the original trade secret holder, that that person's knowledge of the trade secret in question derived from sources using or disclosing the relevant trade secret in an unlawful manner. In order to avoid, under those circumstances, the corrective measures or injunctions provided for causing disproportionate harm to that person, Member States should provide for the possibility, in appropriate cases, of pecuniary compensation being awarded to the injured party as an alternative measure. Such compensation should not, however, exceed the amount of ro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had that person obtained authorisation to use the trade secret in question, for the period of time for which use of the trade secret could have been prevented by the original trade secret holder. Nevertheless, where the unlawful use of the trade secret would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law other than that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or would be likely to harm consumers, such unlawful use should not be allowed.

설계, 생산 혹은 판매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이들은 내부 시장 전체에 퍼짐으로써 영업 비밀 보유자의 상업적 이익과 기업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및 문제의 영업 비밀이 그러한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상품의 품질, 가치 혹은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생산 혹은 마케팅 프로세스의 촉진, 가속화 혹은 비용 절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문제의 상품의 시장 출시 금지나 시장에서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 당국에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의 범 세계적 성격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에는 문제의 상품을 유럽연합 내로 수입하거나 이를 시장에 내놓거나 출시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시정 조치는 예를 들면 해당 상품에서 침해적 특질을 제거하거나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를 통해 시장 외부로 제품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실행 가능한 다른 옵션이 있는 경우, 상품의 파기를 반드시 수반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29) 어떤 사람의 경우 본래 선의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영업비밀의 본래의 보유자로부터의 통지를 받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이후 단계에서 문제의 영업비밀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해당 영업비밀의 불법적 사용 혹은 공개로부터 도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개인에게 비례 초과적인 피해를 입히는 시정 조치 혹은 금지 명령의 허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대안 조치로서 피해 당사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수여하는 가능성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보상은 본래 영업비밀 보유자가 문제의 영업비밀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해당 기인이 문제의 영업비밀의 사용 허가를 받았다면 지불했어야 하는 로열티 혹은 수수료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의 불법적 사용이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법의 위반에 해당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그러한 위법한 사용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0) In order to avoid a person who knowingly, or with reasonable grounds for knowing, unlawfully acquires, uses or discloses a trade secret being able to benefit from such conduct, and to ensure that the injured trade secret holder, to the extent possible, is placed in the position in which he, she or it would have been had that conduct not taken place, it is necessary to provide for adequate compensation for the prejudice suffered as a result of that unlawful conduct. The amount of damages awarded to the injured trade secret holder should take account of all appropriate factors, such as loss of earnings incurred by the trade secret holder or unfair profits made by the infringer and, where appropriate, any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trade secret holder. As an alternative, for example where, considering the intangible nature of trade secrets, it would be difficult to determine the amount of the actual prejudice suffered, the amount of the damages might be derived from elements such as the ro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had the infringer requested authorisation to use the trade secret in question. The aim of that alternative method is not to introduce an obligation to provide for punitive damages, but to ensure compensation based on an objective criterion while taking account of the expenses incurred by the trade secret holder, such as the costs of identification and research. This Directive should not prevent Member States from providing in their national law that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employees is restricted in cases where they have acted without intent.

(31) As a supplementary deterrent to future infringers and to contribute to the awareness of the public at large, it is useful to publicise decisions, including, where appropriate, through prominent advertising, in cases concerning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rade secrets, on the condition that such publication does not result in the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or disproportionately affect the privacy and reputation of a natural person.

(32)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available to trade secret holders could be undermined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with the relevant

(30)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자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혹은 공개하여 그러한 행위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해를 입은 영업비밀 보유자를 만약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있었을 상황에 가능한 한 최대한 가까이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법 행위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피해를 입은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수익의 상실 혹은 침해자가 얻은 부당 이익과 같은 모든 관련 요소와 해당되는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어야 하는 모든 명성의 훼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서, 예를 들어 영업비밀의 무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실제로 입은 피해의 양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손해액은 침해자가 문제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했다면 지불했어야 할 로열티 혹은 수수료와 같은 요소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그러한 대안적 방식의 목적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 확인 및 조사비용 등과 같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른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본 지침은 직원의 고의 없는 행동에 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이 제한된다는 원칙을 각 회원국이 자국 법에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31) 장래의 침해자에 대한 보충적 억제책으로서, 또한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영업 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와 관련된 사건에서 내려진 결정을 적절한 경우 눈에 띄는 광고나 기타 수단을 통해 공표하는 것이 유용하다. 단, 그러한 공표가 영업비밀의 공개를 초래하지 않거나 특정 자연인의 사생활 및 평판에 비례 초과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32) 영업 비밀의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의 효과는 권한 있는 사법

decisions adopted b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ose authorities enjoy the appropriate powers of sanction.

(33) In order to facilitate the uniform application of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it is appropriate to provide for systems of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s between Member States on the one hand, and between the Member States and the Commission on the other, in particular by creating a network of correspondents designated by Member States. In addition, in order to review whether those measures fulfil their intended objective, the Commission, assisted, as appropriate, by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ould examine the application of this Directiv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measures taken.

(34) This Directive respects the fundamental rights and observes the principles recognised in particular by the Charter, notably the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the right to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the freedom to choose an occupation and right to engage in work, the freedom to conduct a business, the right to property, the right to good administration, and in particular the access to files, while respecting business secrecy,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and to a fair trial and the right of defence.

(35) It is important that the rights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and to protection of personal data of any person whose personal data may be processed by the trade secret holder when taking steps to protect a trade secret, or of any person involved in legal proceedings concerning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rade secrets under this Directive, and whose personal data are processed, be respected.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¹⁾ governs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carried out in the Member States in the context of this Directive an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ember States' competent authorities, in particular the public independent authorities designated by the Member States. Thus, this

당국이 채택한 관련 결정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당국이 적절한 제재 권한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본 지침에 규정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의 균일한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특히 회원국이 지정하는 소통의 네트워크를 설립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회원국 간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국과 유럽위원회 사이에 협력 및 정보 교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유럽 연합 지재청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 본 지침의 적용 및 취해진 국가별 조치의 실제 효과를 조사해야 한다.

(34) 본 지침은 기본권 및 '헌장'에서 인정하는 원칙, 그 중에서도 특히 사생활과 가족 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개인 데이터를 보호할 권리, 표현과 정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의 자유, 사업 활동의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 양호한 행정에 대한 권리, 특히 사업 비밀을 존중하면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효과적인 구제 수단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 등을 존중 및 준수한다.

(35)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개인 데이터를 영업비밀 보유자에 의해 처리당하는 자, 혹은 본 지침에 따라 영업 비밀의 불법 취득, 사용 혹은 공개에 관한 법적 절차에 연루된 자의 사생활 및 가족 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및 개인 데이터를 보호할 권리가 존중받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의 회 및 이사회 지침 95/46/EC는 본 지침의 맥락에서, 또한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 특히 회원국이 지정한 공공 독립 기관의 감독 하에 회원국 내에서 수행되는 개인 데이터의 처리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지침은 지침 95/46/EC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 특히 처리 중인 자신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고

Directive should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laid down in Directive 95/46/EC, in particular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to access his or her personal data being processed and to obtain the rectification, erasure or blocking of the data where it is incomplete or inaccurate and, where appropriate, the obligation to process sensitive data in accordance with Article 8(5) of Directive 95/46/EC.

(36) Since the objective of this Directive, namely to achieve a smooth-functioning internal market by means of the establishment of a sufficient and comparable level of redress across the internal market in the event of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cannot be sufficiently achieved by Member States but can rather, by reason of its scale and effects, be better achieved at Union level, the Union may adopt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s set out in Article 5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set out in that Article, this Directive does not go beyond what is necessary in order to achieve that objective.

(37) This Directive does not aim to establish harmonised rules for judicial cooperation, jurisdicti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or deal with applicable law. Other Union instruments which govern such matters in general terms should, in principle, remain equally applicable to the field covered by this Directive.

(38) This Directive should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rules, in particular Articles 101 and 102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should not be used to restrict unduly competition in a manner contrary to the TFEU.

(39) This Directive should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any other relevant law in other area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law of contract. However, wher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¹⁾ and the scope of this Directive overlap, this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이를 수정,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는 데이터 주체의 권리 및 지침 95/46/EC의 제8(5)조에 따라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할 의무 (해당 있는 경우)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6)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가 발생한 경우 내부 시장 전반에 걸쳐 충분하고 동등한 수준의 구제 수단을 확립함으로써 원활히 기능하는 내부 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본 지침의 목적은 회원국이 충분히 성취할 수는 없지만 그 규모와 효과로 인해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더 잘 달성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조약 제5조에 명시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동 조에 명시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본 지침은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7) 본 지침은 사법적 협력, 관할권, 민사 및 상사 문제에 관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조화된 원칙을 설정하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보편적으로 규율하는 다른 유럽연합 문서들도 원칙적으로 본 지침이 적용되는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38) 본 지침은 경쟁법 규칙, 특히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01조 및 제102조의 적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은 TFEU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9) 본 지침은 지적 재산권 및 계약법을 포함하여 다른 분야에서 다른 관련 법률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의 적용 범위와 본 지침의 범위가 중복되는

<p>Directive takes precedence as <i>lex specialis</i>.</p> <p>(40)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was consul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2) of Regulation (EC) No 45/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²⁾ and delivered an opinion on 12 March 2014,</p> <p style="text-align: center;">HAVE ADOPTED THIS DIRECTIVE:</p> <p style="text-align: center;"><i>Ἐκδόθηκε!</i></p> <p style="text-align: center;"><i>Subject matter and scope</i></p> <p style="text-align: center;"><i>Article 1</i></p> <p style="text-align: center;">Subject matter and scope</p> <p>1. This Directive lays down rules on the protection against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p> <p>Member States may,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TFEU, provide for more far-reaching protection against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rade secrets than that required by this Directive, provided that compliance with Articles 3, 5, 6, Article 7(1), Article 8, the second subparagraph of Article 9(1), Article 9(3) and (4), Article 10(2), Articles 11, 13 and Article 15(3) is ensured.</p> <p>2. This Directive shall not affect:</p> <p>(a)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as set out in the Charter, including respect for the freedom and pluralism of the media;</p> <p>(b) the application of Union or national rules requiring trade secret holders to disclose, for reasons of public interest, information, including trade secrets, to the public or to administrative or judicial authorities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ose authorities;</p> <p>(c) the application of Union or national rules requiring or allowing Union institutions and bodies or national public authorities to disclose information submitted by businesses which those institutions, bodies or</p>	<p>경우 본 지침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p> <p>(40)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이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45/2001의 제28(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아 2014년 3월 12일에 의견을 전달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지침을 채택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p> <p style="text-align: center;">대상 및 범위</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조</p> <p style="text-align: center;">대상 및 범위</p> <p>1. 본 지침은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및 공개에 대한 보호에 관한 규칙을 명시한다.</p> <p>회원국은 TFEU의 규정에 따라 불법적인 영업 비밀의 획득, 사용 혹은 공개에 대해 본 지침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제3조, 제5조, 제6조, 제7(1)조, 제8조, 제9(1)조 제2문, 제9(3) 및 (4)조, 제10(2)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5(3)조는 준수된다.</p> <p>2. 본 지침은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a)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여 '헌장'에 명시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p> <p>(b)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공익을 위해 영업비밀을 포함한 정보를 대중에게 혹은 행정이나 사법 기관에게 그들의 직무 수행을 위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유럽연합 혹은 각국의 국내 규칙의 적용.</p> <p>(c) 유럽연합의 기관 혹은 각 국가의 공공 기관이 유럽연합 혹은 각국의 법에 명시된 의무 및 특권에 따라 보유 중인 기업이 제출한</p>
--	---

<p>authorities hold pursuant to, and in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and prerogatives set out in Union or national law;</p> <p>(d) the autonomy of social partners and their right to enter into collective agreements, in accordance with Union law and national laws and practices.</p> <p>3.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understood to offer any ground for restricting the mobility of employee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such mobility, this Directive shall not offer any ground for:</p> <p>(a) limiting employees' use of information that does not constitute a trade secret as defined in point (1) of Article 2;</p> <p>(b) limiting employees' use of experience and skills honestly acquired in the normal course of their employment;</p> <p>(c) imposing any additional restrictions on employees in their employment contracts other than restrictions imposed in accordance with Union or national law.</p>	<p>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유럽 연합 혹은 각 국가의 규칙.</p> <p>(d) 사회 파트너들의 자치 및 그들이 유럽연합법과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p> <p>3. 본 지침의 어떤 내용도 근로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그러한 이동성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 지침은 다음 중 어떤 근거도 제공하지 아니한다.</p> <p>(a) 제2조 제(1)포인트에 정의된 영업비밀을 구성하지 않는 정보의 근로자에 의한 사용 제한.</p> <p>(b) 근로자의 정상적인 고용 과정에서 선의로 취득한 경험과 기술의 사용을 제한.</p> <p>(c) 고용 계약에서 유럽연합 혹은 각 국가의 법에 따라 부과된 제한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추가 제한 부과.</p>
<p>Article 2</p>	<p>제2조</p>
<p>Definitions</p>	<p>정의</p>
<p>For the purposes of this Directive, the following definitions apply:</p>	<p>본 지침의 목적상 이하에 명시된 정의가 적용된다.</p>
<p>(1) 'trade secret' means information which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p> <p>(a) it is secret in the sense that it is not, as a body or in the precise configuration and assembly of its components, generally known among or readily accessible to persons within the circles that normally deal with the kind of information in question;</p> <p>(b) it has commercial value because it is secret;</p> <p>(c) it has been subject to reasonable steps under the circumstances, by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e information, to keep it secret;</p>	<p>(1) '영업비밀'이란 이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의미한다.</p> <p>(a) 문제가 되는 정보의 종류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범위 내 인사들 사이에 전체로서, 혹은 그 구성요소들의 정확한 구성 및 조합으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아니하다는 의미에서 비밀일 것.</p> <p>(b)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p> <p>(c) 해당 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하는 자가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을 것.</p>
<p>(2) 'trade secret holder' means any natural or legal</p>	<p>(2)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을 적법하게</p>

person lawfully controlling a trade secret;

(3) 'infringer' means any natural or legal person who has unlawfully acquired, used or disclosed a trade secret;

(4) 'infringing goods' means goods, the design, characteristics, functioning, production process or marketing of which significantly benefits from trade secrets unlawfully acquired, used or disclosed.

Annex 11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Article 3

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1. The acquisition of a trade secret shall be considered lawful when the trade secret is obtained by any of the following means:

- (a) independent discovery or creation;
- (b) observation, study, disassembly or testing of a product or object that has bee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or that is lawfully in the possession of the acquirer of the information who is free from any legally valid duty to limit the acquisition of the trade secret;
- (c) exercise of the right of workers or workers' representatives to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in accordance with Union law and national laws and practices;
- (d) any other practice which, under the circumstances, is in conformity with honest commercial practices.

2. The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shall be considered lawful to the extent that such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is required or allowed by Union or national law.

Article 4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rade secret holders are entitled to apply for the measures, procedures and

관리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3) '침해자'는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 사용 혹은 공개한 자연인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4) '침해 물품'은 그 설계, 특성, 기능, 생산 공정 혹은 마케팅이 불법적으로 취득, 사용 혹은 공개된 영업 비밀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는 물품을 의미한다.

제2장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및 공개

제3조

영업비밀의 적법한 취득, 사용 및 공개

1. 영업비밀의 취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법한 것으로 본다.

- (a) 독자적인 발견 혹은 생성.
- (b)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거나 정보의 취득을 제한해야 할 유효한 법적 의무가 없는 정보 취득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품 혹은 목적물의 관찰, 연구, 분해.
- (c) 유럽연합법과 국내법 및 관행에 따른 노동자 혹은 노동자 대표의 정보 및 협의에 관한 권리 행사.
- (d) 상황에 따라 선의의 상업적 관행에 부합하는 기타 관행.

2.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혹은 공개는 그러한 취득, 사용 혹은 공개가 유럽연합 혹은 국내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제4조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및 공개

1. 회원국은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를 방지하거나 이에 대한 구제를

<p>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in order to prevent, or obtain redress for,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ir trade secret.</p> <p>2. The acquisition of a trade secret without the consent of the trade secret holder shall be considered unlawful, whenever carried out by:</p> <p>(a) unauthorised access to, appropriation of, or copying of any documents, objects, materials, substances or electronic files, lawfully under the control of the trade secret holder, containing the trade secret or from which the trade secret can be deduced;</p> <p>(b) any other conduct which, under the circumstances, is considered contrary to honest commercial practices.</p> <p>3. The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shall be considered unlawful whenever carried out, without the consent of the trade secret holder, by a person who is found to meet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s:</p> <p>(a) having acquired the trade secret unlawfully;</p> <p>(b) being in breach of a confidentiality agreement or any other duty not to disclose the trade secret;</p> <p>(c) being in breach of a contractual or any other duty to limit the use of the trade secret.</p> <p>4. The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shall also be considered unlawful whenever a person, at the time of the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knew or ought, under the circumstances, to have known that the trade secret had been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nother person who was using or disclosing the trade secret unlawfully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3.</p> <p>5. The production, offering or placing on the market of infringing goods, or the importation, export or storage of infringing goods for those purposes, shall also be considered an unlawful use of a trade secret where the person carrying out such activities knew, or ought, under the circumstances, to have known that the trade secret was used unlawfully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3.</p> <p style="text-align: center;">Article 5</p> <p style="text-align: center;">Exceptions</p>	<p>획득하기 위해 본 지침에 규정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p> <p>2.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p> <p>(a) 합법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통제 하에 있으며, 영업비밀을 포함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모든 문서, 목적물, 자료, 물질 혹은 전자 파일에 대한 무단 접근, 전용 혹은 복사.</p> <p>(b) 주어진 상황에서 선의의 상업적 관행에 위배되는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모든 행위.</p> <p>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업비밀 보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사용 혹은 공개하는 행위는 항상 불법으로 간주된다.</p> <p>(a)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p> <p>(b) 기밀 유지 계약 혹은 그 외 영업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자.</p> <p>(c) 영업비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계약상 혹은 그 외 의무를 위반한 자.</p> <p>4. 또한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혹은 공개는 개인이 취득, 사용 혹은 공개 당시 영업비밀이 제3항의 의미 내에서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취득되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상황에 따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된다.</p> <p>5. 침해 물품의 생산, 제공 혹은 시판, 혹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침해 물품의 수입, 수출 혹은 보관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가 영업비밀이 3항의 의미 내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주어진 상황에서 알 수 있었던 경우 영업 비밀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간주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조</p> <p style="text-align: center;">예외</p>
--	--

<p>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n application for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is dismissed where the alleged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was carried ou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p> <p>(a) for exercising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as set out in the Charter, including respect for the freedom and pluralism of the media;</p> <p>(b) for revealing misconduct, wrongdoing or illegal activity, provided that the respondent ac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general public interest;</p> <p>(c) disclosure by workers to their representatives as part of the legitimate exercise by those representatives of their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Union or national law, provided that such disclosure was necessary for that exercise;</p> <p>(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a legitimate interest recognised by Union or national law.</p> <p style="text-align: center;"><i>Charter 1999</i></p> <p style="text-align: center;"><i>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i></p> <p style="text-align: center;">Section 1</p> <p style="text-align: center;">General provisions</p> <p style="text-align: center;"><i>Article 6</i></p> <p style="text-align: center;">General obligation</p> <p>1. Member States shall provide for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necessary to ensure the availability of civil redress against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p> <p>2.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p> <p>(a) be fair and equitable;</p> <p>(b) not be unnecessarily complicated or costly, or entail unreasonable time-limits or unwarranted delays; and</p> <p>(c) be effective and dissuasive.</p>	<p>회원국은 주장된 영업비밀의 획득, 사용 혹은 공개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지침에서 제공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에 대한 신청이 기각되도록 해야 한다.</p> <p>(a)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여 '헌장'에 명시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경우.</p> <p>(b) 피신청인이 일반적인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행동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행위, 불법 행위 혹은 불법적 활동을 폭로하기 위한 경우.</p> <p>(c) 유럽연합 혹은 국내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합법적인 직무 수행의 한 부분으로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게 필요한 한도에서 공개하는 경우.</p> <p>(d) 유럽연합 혹은 국내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p> <p style="text-align: center;">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p> <p style="text-align: center;">일반 조항</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조</p> <p style="text-align: center;">일반 의무</p> <p>1. 각 회원국은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및 공개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p> <p>2. 제1항에 언급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은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p> <p>(a) 공정하고 공평할 것.</p> <p>(b)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합리한 시간제한 혹은 근거 없는 지연을 수반하지 아니할 것.</p> <p>(c)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것.</p>
---	--

Article 7

Proportionality and abuse of process

1.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shall be applied in a manner that:

- (a) is proportionate;
- (b) avoids the creation of barriers to legitimate trade in the internal market; and
- (c) provides for safeguards against their abuse.

2.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upon the request of the respondent, apply appropriate measures as provided for in national law, where an application concerning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is manifestly unfounded and the applicant is found to have initiated the legal proceedings abusively or in bad faith. Such measures may, as appropriate, include awarding damages to the respondent, imposing sanctions on the applicant or ordering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concerning a decis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15.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measures as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are dealt with in separate legal proceedings.

Article 8

Limitation period

1. Member Stat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lay down rules on the limitation periods applicable to substantive claims and a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s, procedures and remedies provided for in this Directive.

The rules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shall determine when the limitation period begins to run, the du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and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limitation period is interrupted or suspended.

제7조

절차의 비례성 및 남용

1. 본 지침에 규정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

- (a) 비례적일 것.
- (b) 내부 시장에서 적법한 거래에 대한 장벽의 생성을 방지할 것.
- (c) 남용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공할 것.

2. 회원국은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에 관한 신청이 명백히 근거가 없고 신청인이 남용으로서 혹은 악의로써 법적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관할 사법당국이 국내법에 규정된 적절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적절한 경우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판결 부여, 신청인에 대한 제재 혹은 제15조에 언급된 바대로 결정에 관한 정보의 발표 명령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회원국은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조치가 별도의 법적 절차에서 다루어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8조

제척 기간

1. 본 조에 따라 회원국은 본 지침에 제공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의 적용을 위한 실체적 청구 및 조치에 적용되는 제척 기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규칙은 제척 기간이 개시되는 시점, 적용되는 기간 및 제척 기간이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상황을 정해야 한다.

2. The du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shall not exceed 6 years.

Article 9

Preservation of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in the course of legal proceeding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parties, their lawyers or other representatives, court officials, witnesses, experts and any other person participating in legal proceedings relating to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or who has access to documents which form part of those legal proceedings, are not permitted to use or disclose any trade secret or alleged trade secret which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have, in response to a duly reasoned application by an interested party, identified as confidential and of which they have become aware as a result of such participation or access. In that regard, Member States may also allow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act on their own initiative.

The obligation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shall remain in force after the legal proceedings have ended. However, such obligation shall cease to exist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where the alleged trade secret is found, by a final decision, not to me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point (1) of Article 2; or

(b) where over time, the information in question becomes generally known among or readily accessible to persons within the circles that normally deal with that kind of information.

2. Member States shall also ensure tha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n a duly reasoned application by a party, take specific measures necessary to preserve the confidentiality of any trade secret or alleged trade secret used or referred to in the course of legal proceedings relating to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Member States may also allow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take such measures on their own initiative.

The measures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shall at least include the possibility:

(a) of restricting access to any document containing trade secrets or alleged trade secrets

2. 제척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의 기밀 유지

1. 회원국은 당사자, 그들의 변호사 혹은 기타 대리인, 법원 관리, 증인, 전문가 및 영업비밀의 불법적 취득, 사용 혹은 공개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참여하거나 그러한 법적 절차의 일부를 구성하는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외의 자들이 관할 사법 당국이 이해관계 당사자의 정당한 이유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기밀로 확인하고 그들이 그러한 참여 혹은 접근의 결과로 알게 된 영업비밀 혹은 영업비밀로 주장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의무는 해당 법적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존속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는 소멸된다.

(a) 영업비밀로 주장된 정보가 종국적 결정에 의해 제2조 제(1)포인트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b)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의 정보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정보를 다루는 집단 내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거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경우.

2. 회원국은 또한 관할 사법 당국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비밀 혹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또는 불법취득과 관련한 소송 절차에서 언급된 영업비밀의 기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회원국은 또한 관할 사법 당국이 자기 주도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조치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을 포함해야 한다.

(a) 당사자 혹은 제3자가 제출한 영업비밀 혹

submitted by the parties or third parties, in whole or in part, to a limited number of persons;

(b) of restricting access to hearings, when trade secrets or alleged trade secrets may be disclosed, and the corresponding record or transcript of those hearings to a limited number of persons;

(c) of making available to any person other than those comprised in the limited number of persons referred to in points (a) and (b) a non-confidential version of any judicial decision, in which the passages containing trade secrets have been removed or redacted.

The number of persons referred to in points (a) and (b) of the second subparagraph shall be no greater than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right of the parties to the legal proceedings to an effective remedy and to a fair trial, and shall include, at least, one natural person from each party and the respective lawyers or other representatives of those parties to the legal proceedings.

3. When deciding on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nd assessing their proportionalit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need to ensure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and to a fair trial,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rties and, where appropriate, of third parties, and any potential harm for either of the parties, and, where appropriate, for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the granting or rejection of such measures.

4. Any processing of personal data pursuant to paragraphs 1, 2 or 3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Directive 95/46/EC.

Section 2

Provisional and precautionary measures

Article 10

Provisional and precautionary measure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at the request of the trade secret holder, or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al and precautionary measures against the alleged infringer:

은 영업비밀로 주장되는 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접근을 제한된 수의 사람에게 한정.

(b) 영업 비밀 혹은 영업비밀로 주장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심리절차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해당 심리의 기록 혹은 속기록을 제한된 수의 사람들에게만 공개.

(c) (a) 및 (b) 포인트에 언급된 제한된 수의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은 자에게 영업 비밀이 포함된 문구가 제거되거나 수정된 사법 결정의 공개 버전을 제공.

제2단락의 (a) 및 (b)포인트에 언급된 사람의 수는 법적 절차의 당사자들이 갖는 효과적인 구제 및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각 당사자로부터 최소한 1인의 자연인 및 법적 절차의 당사자들의 각 변호사와 기타 대리인들을 포함해야 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조치들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고 그 비례성을 평가할 때 관할 사법 당국은 효과적인 구제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당사자 및 해당되는 경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할 필요성 및 그러한 조치의 부여 혹은 기각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 및 해당되는 경우 제3자가 겪을 잠재적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4. 제1, 2 혹은 3항에 따른 개인 데이터의 처리는 지침 95/46/EC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제2절

잠정 조치 및 예방조치

제10조

잠정 조치 및 예방조치

1. 회원국은 관할 사법당국이 영업비밀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 혐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잠정적 및 예방적 조치를 명령할 수

<p>(a) the cessation of or, as the case may be, the prohibition of the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on a provisional basis;</p> <p>(b) the prohibition of the production, offering, placing on the market or use of infringing goods, or the importation, export or storage of infringing goods for those purposes;</p> <p>(c) the seizure or delivery up of the suspected infringing goods, including imported goods, so as to prevent their entry into, or circulation on, the market.</p> <p>2.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judicial authorities may, as an alternative to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ke the continuation of the alleged unlawful use of a trade secret subject to the lodging of guarantees intended to ensure the compensation of the trade secret holde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in return for the lodging of guarantees shall not be allowed.</p>	<p>있도록 허용해야 한다.</p> <p>(a) 영업비밀의 사용 혹은 공개의 잠정적 중단 혹은 금지.</p> <p>(b) 침해 물품의 생산, 제공, 시장 출시 혹은 사용 금지 혹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침해 물품의 수입, 수출 혹은 보관의 금지.</p> <p>(c) 수입품을 포함하여 침해 의혹 물품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압수 혹은 제출.</p> <p>2. 회원국은 사법 당국이 제1항에 언급된 조치의 대안으로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사용을 영업 비밀 보유자를 보상하기 위한 보증의 제공 하에 계속할 수 있는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 보증을 대가로 한 영업비밀의 공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Article 11</p> <p style="text-align: center;">Conditions of application and safeguards</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조</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 조건 및 안전장치</p>
<p>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have, in respect of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10, the authority to require the applicant to provide evidence that may reasonably be considered available in order to satisfy themselves with a sufficient degree of certainty that:</p> <p>(a) a trade secret exists;</p> <p>(b) the applicant is the trade secret holder; and</p> <p>(c) the trade secret has been acquired unlawfully, is being unlawfully used or disclosed, or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is imminent.</p> <p>2.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in deciding on the granting or rejection of the application and assessing its proportionalit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shall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where appropriate:</p> <p>(a) the value and other specific features of the</p>	<p>1. 회원국은 관할 사법 당국이 제10조에 언급된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제출 가능한 증거를 신청인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p> <p>(a) 영업비밀이 존재한다.</p> <p>(b) 신청인이 영업비밀 보유자이다.</p> <p>(c) 영업비밀이 불법적으로 취득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사용 혹은 공개되고 있는 중이거나, 영업비밀의 불법적 취득, 사용 혹은 공개가 임박하였다.</p> <p>2. 회원국은 관할 사법 당국이 신청의 승인 혹은 기각을 결정하고 그 비례성을 평가할 때 적절한 경우 이하의 항목들을 포함하여 사건의 특정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p> <p>(a) 영업비밀의 가치 및 기타 구체적인 특징.</p>

<p>trade secret;</p> <p>(b) the measures taken to protect the trade secret;</p> <p>(c) the conduct of the respondent in acquiring, using or disclosing the trade secret;</p> <p>(d) the impact of the unlawful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p> <p>(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rties and the impact which the granting or rejection of the measures could have on the parties;</p> <p>(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ird parties;</p> <p>(g) the public interest; and</p> <p>(h) the safeguard of fundamental rights.</p> <p>3.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10 are revoked or otherwise cease to have effect, upon the request of the respondent, if:</p> <p>(a) the applicant does not institute legal proceedings leading to a decision on the merits of the case before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y, within a reasonable period determined by the judicial authority ordering the measures where the law of a Member State so permits or, in the absence of such determination, within a period not exceeding 20 working days or 31 calendar days, whichever is the longer; or</p> <p>(b) the information in question no longer meets the requirements of point (1) of Article 2, for reasons that cannot be attributed to the respondent.</p> <p>4.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make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10 subject to the lodging by the applicant of adequate security or an equivalent assurance intended to ensure compensation for any prejudice suffered by the respondent and, where appropriate, by any other person affected by the measures.</p> <p>5. Where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10 are revoked on the basis of point (a)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where they lapse due to any act or omission by the applicant, or where it is subsequently found that there has been no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or threat of such conduc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p>	<p>(b)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p> <p>(c) 피신청인이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혹은 공개함에 있어 보인 행동.</p> <p>(d) 영업비밀의 불법적 사용 혹은 공개의 영향.</p> <p>(e) 당사자들의 정당한 이익 및 해당 조치의 승인 혹은 기각이 당사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p> <p>(f) 제3자의 정당한 이익.</p> <p>(g) 공공의 이익.</p> <p>(h) 기본권의 보호 장치.</p> <p>3.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국은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0조에 언급된 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중지되도록 해야 한다.</p> <p>(a) 신청인이 회원국의 법이 허용하는 경우 조치를 명령한 사법 당국이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혹은 그러한 결정이 없는 경우 20 근무일 혹은 31달력일 중 더 장기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관할 사법 당국에 사건의 본안에 대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법적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p> <p>(b) 문제의 정보가 피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2조 제(1)포인트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p> <p>4. 회원국은 신청인 혹은 적절한 경우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는 다른 자가 피신청인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담보 혹은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 하는 조건 하에 관할 사법당국이 제10조에 언급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p> <p>5. 제10조에 언급된 조치가 본 조 제3항(a)포인트에 근거하여 취소되거나, 신청인의 행위 혹은 행위 부재로 인해 소멸되거나 이후에 영업비밀의 불법 취득, 사용 혹은 공개 혹은 그러한 행위의 위협이 없었음이 판명된 경우, 관할 사법당국은 피신청인 혹은 피해를</p>
---	---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applicant, upon the request of the respondent or of an injured third party, to provide the respondent, or the injured third party,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any injury caused by those measures.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the request for compensation referred to in the first subparagraph is dealt with in separate legal proceedings.

Section 3

Measures resulting from a decision on the merits of the case

Article 12

Injunctions and corrective measure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where a judicial decision taken on the merits of the case finds that there has been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orde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against the infringer:

(a) the cessation of or, as the case may be, the prohibition of the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b) the prohibition of the production, offering, placing on the market or use of infringing goods, or the importation, export or storage of infringing goods for those purposes;

(c) the adoption of the appropriate corrective measures with regard to the infringing goods;

(d) the destruction of all or part of any document, object, material, substance or electronic file containing or embodying the trade secret or, where appropriate, the delivery up to the applicant of all or part of those documents, objects, materials, substances or electronic files.

2. The corrective measures referred to in point (c) of paragraph 1 shall include:

(a) recall of the infringing goods from the market;

(b) depriving the infringing goods of their infringing quality;

입은 제3자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 혹은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그러한 조치로 인한 피해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회원국은 제1단락에서 언급된 보상 요청이 별도의 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지도록 정할 수 있다.

제3절

사건 본안에 관한 결정에 의한 조치

제12조

금지 명령 및 시정 조치

1. 회원국은 사건의 본안에 따라 내려진 사법적 결정이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가 있다고 본 경우 관할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침해자를 상대로 다음 중 하나 혹은 다수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a) 영업비밀의 사용이나 공개의 중단 혹은 경우에 따라 금지.

(b) 침해 물품의 생산, 제공, 시장 출시의 금지 혹은 사용 혹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침해 물품의 수입, 수출 혹은 보관의 금지.

(c) 침해 물품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의 채택.

(d) 영업 비밀을 포함하거나 구현하는 문서, 목적물, 자료, 물질 혹은 전자 파일의 전체 혹은 일부를 파기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해당 문서, 목적물, 자료, 물질 혹은 전자 파일의 전체 혹은 일부를 신청인에게 제출.

2. 제1항(c)포인트에 언급된 시정 조치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시장에서 침해 물품의 회수.

(b) 침해 물품으로부터 침해적 특질을 제거.

(c) destruction of the infringing goods or, where appropriate, their withdrawal from the market, provided that the withdrawal does not undermine the protection of the trade secret in question.

3.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when ordering the withdrawal of the infringing goods from the market, their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at the request of the trade secret holder, that the goods be delivered up to the holder or to charitable organisations.

4.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shall order that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oints (c) and (d) of paragraph 1 be carried out at the expense of the infringer, unless there are particular reasons for not doing so. Those measure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damages that may be due to the trade secret holder by reason of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Article 13

Conditions of application, safeguards and alternative measure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in considering an application for the adoption of the injunctions and corrective measures provided for in Article 12 and assessing their proportionalit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shall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where appropriate:

- (a) the value or other specific features of the trade secret;
- (b) the measures taken to protect the trade secret;
- (c) the conduct of the infringer in acquiring, using or disclosing the trade secret;
- (d) the impact of the unlawful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 (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rties and the impact which the granting or rejection of the measures could have on the parties;
- (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ird parties;

(c) 침해 물품의 파괴 혹은 적절한 경우 해당 영업비밀의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조건에서 시장으로부터의 회수.

3. 회원국은 관할 사법 당국이 시장에서 침해 물품의 회수를 명령할 때 영업 비밀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보유자 혹은 자선 단체에 전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4. 관할 사법당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c) 및 (d)포인트에 언급된 조치가 침해자의 비용으로 수행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로 인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손해 배상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신청 조건, 안정 장치 및 대체 조치

1. 회원국은 제12조에 규정된 금지 명령 및 시정 조치의 채택의 신청을 고려하고 그 비례성을 평가할 때 적절한 경우 이하의 항목들을 포함하여 사건의 특정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 (a) 영업비밀의 가치 및 기타 구체적인 특징.
- (b)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 (c) 피신청인이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혹은 공개함에 있어 보인 행동.
- (d) 영업비밀의 불법적 사용 혹은 공개의 영향.
- (e) 당사자들의 정당한 이익 및 해당 조치의 승인 혹은 기각이 당사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 (f) 제3자의 정당한 이익.

<p>(g) the public interest; and</p> <p>(h) the safeguard of fundamental rights.</p> <p>Where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limit the duration of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oints (a) and (b) of Article 12(1), such duration shall be sufficient to eliminate any commercial or economic advantage that the infringer could have derived from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p> <p>2.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oints (a) and (b) of Article 12(1) are revoked or otherwise cease to have effect, upon the request of the respondent, if the information in question no longer meets the requirements of point (1) of Article 2 for reasons that cannot be attributed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respondent.</p> <p>3.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at the request of the person liable to be subject to the measures provided for in Article 12,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y may order pecuniary compensation to be paid to the injured party instead of applying those measures if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p> <p>(a) the person concerned at the time of use or disclosure neither knew nor ought, under the circumstances, to have known that the trade secret was obtained from another person who was using or disclosing the trade secret unlawfully;</p> <p>(b) execution of the measures in question would cause that person disproportionate harm; and</p> <p>(c) pecuniary compensation to the injured party appears reasonably satisfactory.</p> <p>Where pecuniary compensation is ordered instead of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oints (a) and (b) of Article 12(1), it shall not exceed the amount of ro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had that person requested authorisation to use the trade secret in question, for the period of time for which use of the trade secret could have been prohibited.</p> <p style="text-align: center;">Article 14</p> <p style="text-align: center;">Damages</p>	<p>(g) 공공의 이익.</p> <p>(h) 기본권의 보호 장치.</p> <p>관할 사법 당국이 제12(1)조의 (a) 및 (b)포인트에 언급된 조치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기간은 영업 비밀의 불법 취득, 사용 혹은 공개로부터 침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상업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제거하기에 충분해야 한다.</p> <p>2. 회원국은 문제의 정보가 피신청인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제2조 제(1)포인트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2(1)조의 (a) 및 (b)포인트에 언급된 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중지되도록 해야 한다.</p> <p>3. 회원국은 이하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경우, 제12조에 규정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 사법 당국이 해당 조치를 적용하는 대신 피해 당사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해야 한다.</p> <p>(a) 관련 당사자가 사용 혹은 공개 당시 해당 영업비밀이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을 것.</p> <p>(b) 해당 조치의 실행이 그 자에게 비례 초과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것.</p> <p>(c)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일 것.</p> <p>제12(1)조의 제(a) 및 (b)포인트에 언급된 조치 대신 금전적 보상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금액은 영업비밀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영업비밀의 사용 허가를 요청한 사람이 지불했어야 하는 로열티 혹은 수수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조</p> <p style="text-align: center;">손해 배상</p>
--	---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upon the request of the injured party, order an infringer who knew or ought to have known that he, she or it was engaging in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o pay the trade secret holder damages appropriate to the actual prejudice suffered as a result of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Member States may limit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employees towards their employers for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of the employer where they act without intent.

2. When setting the damag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opriate factor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trade secret holder by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Alternativel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in appropriate cases, set the damages as a lump sum on the basis of elements such as, at a minimum, the amount of ro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had the infringer requested authorisation to use the trade secret in question.

Article 15

Publication of judicial decision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in legal proceedings instituted for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and at the expense of the infringer,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dissemination of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decision, including publishing it in full or in part.

2. Any measur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preserve the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as provided for in Article 9.

1. 회원국은 관할 사법 당국이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 사용 혹은 공개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침해자에게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의 결과로 비밀 보유자가 입은 실제 피해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도록 해야 한다.

회원국은 고용주의 영업 비밀을 불법적으로 획득, 사용 혹은 공개한 근로자가 고의 없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경우, 고용주에 대한 근로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관할 사법당국은 피해당사자가 겪은 수익의 상실을 포함하는 불이익한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얻은 부당 이익, 적절한 경우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로 인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야기된 명성의 훼손과 같은 경제적 요인 이외의 제반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서, 관할 사법 당국은 적절한 경우 최소한 침해자가 문체의 영업비밀의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면 지불했어야 하는 로열티 혹은 수수료 금액과 같은 요소에 기초하여 손해 배상금을 일시불로 설정할 수 있다.

제15조

사법적 결정의 공표

1. 회원국은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혹은 공개와 관련하여 제기된 법적 절차에서 관할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침해자의 비용으로 결정에 관한 정보의 전체 혹은 부분적 공개 등 배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제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기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3. In deciding whether to order a measure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when assessing its proportionalit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shall take into account, where appropriate, the value of the trade secret, the conduct of the infringer in acquiring, using or disclosing the trade secret, the impact of the unlawful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and the likelihood of further unlawful use or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by the infringer.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shall also take into account whether the information on the infringer would be such as to allow a natural person to be identified and, if so, whether publication of that information would be justified, in particular in the light of the possible harm that such measure may cause to the privacy and reputation of the infringer.

Члeн 16
Sanctions, reporting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16

Sanctions for non-compliance with this Directive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impose sanctions on any person who fails or refuses to comply with any measure adopted pursuant to Articles 9, 10 and 12.

The sanctions provided for shall include the possibility of imposing recurring penalty payments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with a measure adopted pursuant to Articles 10 and 12.

The sanctions provided for shall be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Члeн 17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rrespondent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cooperation, includ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mong Member States and between Member States and the Commission, each Member State shall designate one or more national correspondents for any question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3. 관할 사법 당국은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명령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비례성을 평가할 때, 적절한 경우 영업비밀의 가치, 침해자가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 혹은 공개함에 있어 보인 행동,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사용 혹은 공개의 영향, 침해자가 영업비밀을 추가적으로 불법 사용하거나 공개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관할 사법 당국은 침해자에 관한 정보가 자연인의 식별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해당 정보의 공표가 특히 침해자의 사생활과 평판에 끼칠 수 있는 피해에 비추어 정당화될 것인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제4장
제재, 보고 및 최종 조항

제16조

본 지침의 준수 불이행에 대한 제재

회원국은 관할 사법 당국이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채택된 조치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정된 제재에는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채택된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규정된 제재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이어야 한다.

제17조

정보교류 및 소통 담당자

회원국 간 및 회원국과 위원회 간 정보 교환을 포함하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본 지침에서 규정한 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어떤 질문이든 담당할 1인 혹은 다수의 국내 소통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회원국

measures provided for by this Directive. It shall communicate the details of the national correspondent or correspondents to the other Member States and the Commission.

Article 18

Reports

1. By 9 June 2021,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 the context of the activities of the 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prepare an initial report on the litigation trends regarding the unlaw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rade secrets pursuant to the application of this Directive.

2. By 9 June 2022, the Commission shall draw up an intermediate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is Directive, and shall submit it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o the Council. That report shall take due account of the report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intermediate report shall examine, in particular, the possible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this Directive on research and innovation, the mobility of employees and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3. By 9 June 2026, the Commission shall carry out an evaluation of the impact of this Directive and submit a report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o the Council.

Article 19

Transposition

1. Member States shall bring into force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necessary to comply with this Directive by 9 June 2018. They shall immediately communicate the text of those measures to the Commission.

When Member States adopt those measures, they shall contain a reference to this Directive or be accompanied by such a reference on the occasion of their official publication. Member States shall determine how such reference is to be made.

은 국내 소통 담당자의 세부 정보를 다른 회원국과 유럽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제18조

보고서

1. 유럽 연합 지재청은 2021년 6월 9일까지 '지적 재산권 침해에 관한 유럽 감시청'의 활동의 일환으로 본 지침의 적용 하에 영업비밀의 불법적 취득, 사용 혹은 공개에 관한 소송 동향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유럽위원회는 2022년 6월 9일까지 본 지침의 적용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제1항에 언급된 보고서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중간 보고서는 특히 연구 및 혁신, 근로자의 이동성, 표현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관한 본 지침의 적용의 가능한 효과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3. 유럽위원회는 2026년 6월 9일까지 본 지침의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시행 입법

1. 각 회원국은 2018년 6월 9일까지 본 지침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법률, 규정 및 행정 조항들을 시행해야 한다. 회원국은 즉시 해당 조치의 내용을 유럽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회원국이 이러한 조치들을 채택할 때 본 지침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거나 공식 발표 시 그러한 언급이 수반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그러한 참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2. Member States shall communicate to the Commission the text of the main provisions of national law which they adopt in the field covered by this Directive.

Article 20

Entry into force

This Directiv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wentieth day following that of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21

Addressees

This Directive is addressed to the Member States.

Done at Strasbourg, 8 June 2016.

For the European Parliament
The President
M. SCHULZ

For the Council
The President
A.G. KOENDERS

2. 회원국은 본 지침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채택한 자국 국내법의 주요 조항을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제20조

효력의 발생

본 지침은 유럽연합 공식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20일째 되는 날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대상

본 지침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 6월 8일 Strasbourg에서 작성됨.

유럽의회
회장

M. SCHULZ

이사회

회장

A.G. KOENDERS

주요국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모음집

발행기관 : 특허청

발행일 : 2021년 11월

발행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ISBN : 979-11-91116-81-6 13500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 4 유형] 제 1 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주요국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모음집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Tel.042-481-5842 <http://www.kipo.go.kr>

ISBN : 979-11-91116-81-6 13500
DOI : 10.8080/P9791191116816